2020학년도

대학원 학사 안내



영남대학교 대학원

Graduate School of Yeungnam University

창학정신

영남대학교는 지성의 전당으로서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교육과 생산교육을 추진함으로써 민족중흥의 새 역사창조에 기여함을 창학 정신으로 삼는다.

교육목적

영남대학교는 민주교육의 근본이념에 기하여,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 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아울러 협동정신이 풍부한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영남대학교가 지향하는 교육목표는 창학정신에 제시된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민족의 대학", "세계 속의 대학"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데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영남대학교는 민주교육의 근본이념에 기하여,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 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아울러 협동정신이 풍부한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을 목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목표를 세운다.

첫째,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에 적극 봉사하며 민족중흥의 동량이 될 지도적 인격자를 길러낸다.
둘째, 민족문화의 발전적 계승으로 민족의 역량을 축적하고 세계문화의 주체적 탐구로 민족의 역사를 창조하는데 이바지한다.
셋째, 민주교육의 이념을 바탕으로 합리적 사고와 시민정신에 투철한 도덕적 사회실현을 위한 주체적, 창조적 인간교육에 힘쓴다.
넷째, 학문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통한 생산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량을 갖춘 인간을 길러낸다.
다섯째, 학문과 문화의 국제적인 교류를 적극화하고 연구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국제수준에서의 창조적 학문 활동에 이바지한다.
여섯째, 인문, 사회, 자연과학 등 광범한 분야에 걸쳐 전공교육과 교양 및 인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양성과 조화를 통한 인류문화의 창조에 이바지한다.

차 례

Ⅰ. 대학원 편제 및 조직

1. 대학원 편제 ····· 9
2. 행정조직 및 구성 ····· 9
3. 학과 주임교수 ····· 10

Ⅱ. 대학원 학사 안내

1. 2020학년도 학사일정표 ····· 15
2. 수강신청 ····· 17
3. 학점교류 ····· 20
4. 학점인정 ····· 20
5. 보충과목이수 ····· 20
6. 성적이수 ····· 21
7. 전공변경 ····· 22
8. 장학 ····· 22
   가. 내국인 장학 ····· 22
   나. 외국인 장학 ····· 23
9. 등록 ····· 26
10. 휴학 ····· 26
11. 복학 ····· 27

12. 제적 ····· 27
13. 재입학 ····· 28
14. 수료 ····· 28

Ⅲ. 학 위 청 구

1. 지도교수 배정 ····· 31
2. 외국어시험 ····· 31
3. 종합시험 ····· 33
4. 연구생 등록 ····· 33
5. 학위청구논문 ····· 34
6. 학위논문 완성본 지침 ····· 35
7. 석사학위과정 논문대체 ····· 36
8. 학위과정별, 학과별 수여학위명 ····· 37
9. 학위종별 후드색깔 ····· 37

Ⅳ. 기타 학사 지원

1. 학생정보조회 ····· 47
2. 학생증 발급 ····· 47
3. 각종 증명서 발급 ····· 48
4. 대학원 열람실 ····· 48
5. 대학원 전산실습실 ····· 48
6. 도서관 ····· 49
7. 예비군 전입신고 ····· 53
8.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환경 · 소방 안전교육 ····· 54

Ⅴ. 대학원 학칙 및 세칙

1. 대학원 학칙 ····· 57
2.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 103

Ⅵ. 대학원 학사업무 규정

1. 5년제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 153
2. 석·박사통합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내규 ····· 155
3. 명예박사학위 추천에 관한 내규 ····· 158
4. 대학원 연구생 등록에 관한 지침 ····· 164
5. 일반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지침 ····· 169
6. 일반대학원 장학금 지급 지침 ····· 173
7. 대학원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지침 ····· 179
8. 대학원 박사과정 미술치료사 자격증 수여에 관한 지침 ····· 182
9. 대학원 협동과정 설치 및 운영 지침 ····· 187

Ⅰ. 대학원 편제 및 조직

1. 대학원 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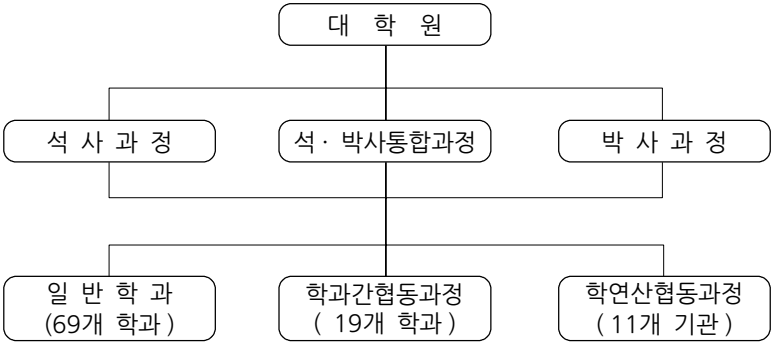

2. 행정조직 및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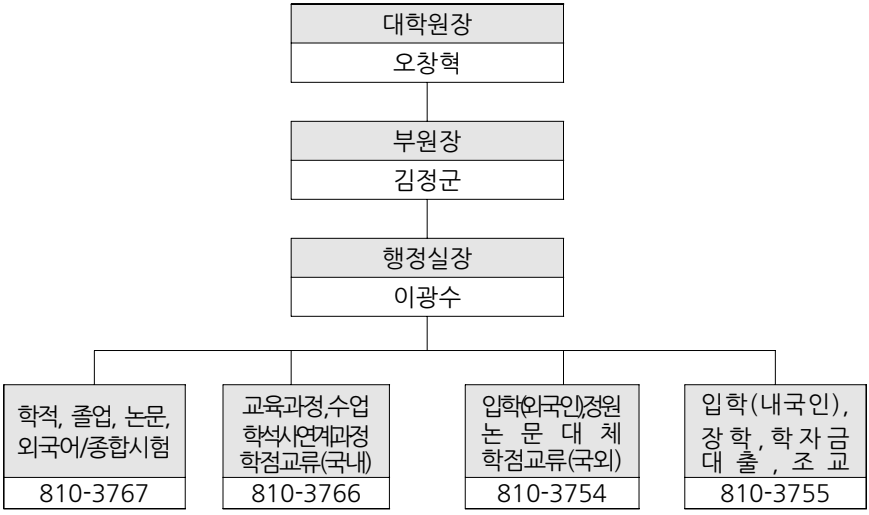

3. 학과 주임교수

2020. 3월 현재

번호	학과	성 명	연구실	사무실	번호	학과	성 명	연구실	사무실
1	국어국문학과	정시열	2118	2508	24	사 회 학 과	정용교	2257	2240
2	영어영문학과	남정섭	2146	2130	25	유아교육학과	윤재희	2891	3170
3	중국언어문화학과	진현	1575	1570	26	언론정보학과	주형일	2273	2230
4	일어일문학과	나공수	3165	3160	27	국어교육학과	주지연	3197	3190
5	불어불문학과	이선화	2175	2170	28	수 학 과	권영수	2315	2310
6	독어독문학과	김요한	2182	2180	29	통 계 학 과	김병수	2329	2320
7	한 문 학 과	김봉남	3171	3170	30	물 리 학 과	곽종훈	2342	2310
8	철 학 과	한곽희	2194	3160	31	화 학 과	강미숙	2363	2350
9	역 사 학 과	류준형	2222	2220	32	생명과학과	유시욱	2378	2370
10	문화인류학과	이은정	2244	2240	33	생 화 학 과	김창섭	3046	2350
11	미학미술사학과	임남수	3313	-	34	미생물생명공학과	배한홍	3031	3020
12	교 육 학 과	허준	3118	3110	35	산림자원학과	이주형	2927	2920
13	공 법 학 과	염미경	1099	-	36	원 예 학 과	오 욱	2941	2907
14	사 법 학 과	염미경	1099	-	37	식 품 과 학 과	위영중	2951	2950
15	행 정 학 과	황성수	2636	2630	38	가족주거학과	서지은	2865	2870
16	정치외교학과	이유신	2648	2640	39	의류패션학과	김정숙	2794	2790
17	지역및복지행정학과	김보영	2683	2680	40	식품영양학과	윤경영	2878	2870
18	경 제 학 과	이용주	2847	3212	41	약 학 과	최혁재	2824	-
19	경 영 학 과	윤상흠	2728	7814	42	생 명 공 학 과	배한홍	3031	3020
20	회계세무학과	문상혁	2733	7816	43	수 학 교 육 과	조정수	3187	3150
21	무 역 학 과	조재훈	2850	3214	44	의생명공학과	김지회	3032	3020
22	식품자원경제학과	이상호	2961	2950	45	건설시스템공학과	손광익	2591	2410
23	심 리 학 과	이윤형	2231	2230	46	건 축 학 과	양정훈	2598	2420

번호	학과	성 명	연구실	사무실	번호	학과	성명	연구실	사무실
47	도시공학과	서정인	2436	2430	70	한국학과	이수환	2212	3706
48	기계공학과	박장민	2456	4873	71	의공학과	김기채	2583	2580
49	자동차기계공학과	사종엽	2574	3085	72	보건학과	정용교	2257	2240
50	신소재공학과	김수현	2472	2470	73	미술치료학과	최선남	2887	2885
51	전기공학과	이상봉	3097	2580	7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서희정	2122	3541
52	전자공학과	김성호	3530	3779	75	미술디자인학과	권기제	3334	3340
53	정보통신공학과	최권휴	3516	3295	76	음악학과	임주섭	3416	3420
54	컴퓨터공학과	곽종욱	3533	4565	77	글로벌비즈니스학과	손상범	2765	3214
55	화학공학과	안광순	2524	2520	78	한국여성리더십학과	홍상욱	2863	2870
56	파이버시스템 공학과	이재웅	2786	2770	79	독서작문학과	임성우	2186	2508
57	환경공학과	전관수	2549	2540	80	에너지융합공학과	안성익	2840	
58	조경학과	김근호	2976	2970	81	디지털융합 비즈니스학과	박한우	2275	2230
59	작곡과	임주섭	3416	3410	82	무용공연예술학과	우혜영	3141	3763
60	성악과	김정아	3428	3410	83	새마을국제개발학과	이정주	2161	2680
61	기악과	여은영	3456	3420	84	동아시아문화학과	손승회	2227	4505
62	국악과	박소현	3431	3410	85	자동차조명 융합공학과	이찬수	3527	1451
63	회화과	추종완	3318	3320	86	번역학과	진현	1575	1566
64	시각디자인학과	정재완	3332	3340	87	첨단뿌리산업공학과	백응률	2473	2560
65	산업인터랙션 디자인학과	이희명	3323	3340	88	기술혁신·기업가정신학과	전인	2750	1597
66	생활제품 디자인학과	오원석	3344	3340					
67	트랜스아트과	신기운	3327	3320					
68	체육학과	신성훈	3136	3763					
69	의학과	이근미	640-3541	620-6804					

Ⅱ. 대학원 학사 안내

1. 2020학년도 학사일정표

구분 / 월	달 력	학 사 일 정 및 내 용	
3		3.16. 3. 2.~3. 4. 3. 2.~3. 4. 3. 21. 3.11.~3.31. 3.30.~4. 6. 4. 9. 3.30.	개강 학위청구논문제출 및 공개발표 신청 : 1차 연구생 등록 신청 : 1차 외국어시험일 학위 청구논문 공개발표 : 1차 종합시험 신청 접수 수업일수 1/4선 학기개시일 30일
4		4.22.~4.24. 3.31. 4.13.~4.16. 4.29.	종합시험일 학위 청구논문 심사 결과보고서 제출마감 : 1차 학위 청구논문 완성본 제출 : 1차 학기개시일 60일
5		5. 1.~5. 8. 5.14.~5.18. 5.29.~6.30. 5.29. 6. 2.	연구생 등록 신청 : 2차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공개발표 신청 : 2차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 : 2차 학기개시일 90일 수업일수 3/4선
6		6. 1.~6. 5. 6.29. 7. 2. 7. 3.	영어특강 신청 방학 성적입력마감 학위 청구논문 심사 결과보고서제출마감 : 2차
7		7. 8.~7.10. 7.14.~7.17.	복학·재입학·휴학(연장) 신청 접수 학위청구논문 완성본 제출 : 2차
8		8.17.~8.19. 8.19.~8.21. 8.21. 8.24.~8.31.	수강신청 등록금 납부 학위수여식 외국어시험(면제) 신청 접수

구분 / 월	달 력	학사일정 및 내용	
9		9. 1. 9. 1.~9. 3. 9. 1.~9. 3. 9. 5. 9.10.~9.29. 9.14.~9.21. 9.25. 9.30. 9.29.	개강 학위청구논문제출 및 공개발표 신청 : 1차 연구생등록신청 : 1차 외국어시험일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 : 1차 종합시험 신청 접수 수업일수 1/4선 학기개시일 30일 학위청구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마감 : 1차
10		10. 7.~10.12. 10.13.~10.15. 10.30.	종합시험일 학위청구논문 완성본 제출 : 1차 학기개시일 60일
11		11. 2.~11. 4. 11. 2.~11. 4. 11.16.~12.21. 11.24. 11.29.	연구생등록신청 : 2차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공개발표신청 : 2차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 : 2차 수업일수 3/4선 학기개시일 90일
12		12. 7.~12.11. 12.21. 12.22. 12.28. 12.30.	영어특강 신청 방학 개교기념일 성적입력마감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 제출마감 : 2차
2021 1		1.11.~1.13. 1.13.~1.18.	복학·재입학·휴학(연장) 신청 접수 학위청구논문 완성본 제출 : 2차
2		2.16.~2.18. 2.17.~2.19. 2.22.	수강신청 등록금 납부 학위수여식

2. 수강신청

가. 매 학기 최대 수강신청 학점

■ 석사과정

① 교과목학점 9학점
② 학과세미나학점 1학점, 연구윤리 1학점
③ 연구학점 2학점(2기부터, 학석사연계과정 및 학·석사학점상호인정과정은 1기부터)
- 연구학점은 지도교수가 제시하는 연구과제의 수행에 대한 학점으로 2기부터 매학기 2학점씩 신청
④ 보충과목 9학점(보충과목 이수 대상자 해당) 단, 교과목학점을 포함해서 15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음.

■ 박사과정

① 교과목학점 9학점. 단, 4기에는 12학점까지 가능
② 학과세미나학점 1학점, 연구윤리 1학점
③ 연구학점 2학점
- 연구학점은 지도교수가 제시하는 연구과제의 수행에 대한 학점으로 1기부터 매학기 2학점씩 신청
④ 보충과목 9학점(보충과목이수 대상자 해당) 단, 교과목학점을 포함해서 15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음.

■ 석·박사통합과정

① 교과목학점 9학점. 단, 7기(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6기)에는 12학점까지 가능
② 학과세미나학점 1학점, 연구윤리 1학점
③ 연구학점 2학점(2기부터)
- 연구학점은 지도교수가 제시하는 연구과제의 수행에 대한 학점으로 2기부터 매학기 2학점씩 신청
④ 보충과목 9학점(보충과목이수 대상자 해당) 단, 교과목학점을 포함해서 15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음.

나. 수강신청 이수 구분

① 기초공통
② 전공
③ 선택
④ 보충
⑤ 연구학점
⑥ 연구윤리: 2014 입학생부터 반드시 이수해야 수료 가능. 단, 2013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선택과목”임
⑦ 논문대체

다.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① 매 학기 수강신청과목은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지정된 일자에 인터넷으로 직접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 이수한 교과목과 중복하여 이중 수강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본교 석사학위과정 출신자 중 박사학위과정 입학자는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교과목을 중복하여 이중 수강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보충과목이수 대상자는 수강신청 전 반드시 “보충과목 학점인정 및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신입생)

※ 미제출자는 수강신청을 할 수 없음.

⑤ 개설과목의 수강인원이 2명 이하일 경우는 폐강한다.

라. 수강신청방법 및 절차

* 수강신청 창에서 로그인 : ①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 ② 왼쪽 대학원 수강신청 클릭 - ③ 학번, 비밀번호 입력 및 언어(한글, 영어) 선택 - ④ 로그인 클릭



■ 수강신청 : ① 학과선택 - ② 조회 - ③ 수강번호 입력 - ④ 신청 - ⑤ 수강신청 확인 클릭



※ 수강신청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학생URP - 학적관리 - 학적조회/수정 - 수강신청” 또는 “학생 URP - 수업관리 - 수강신청내역조회”

■ 수강신청 과목 삭제: ① 해당 교과목의 삭제 클릭 - ② 확인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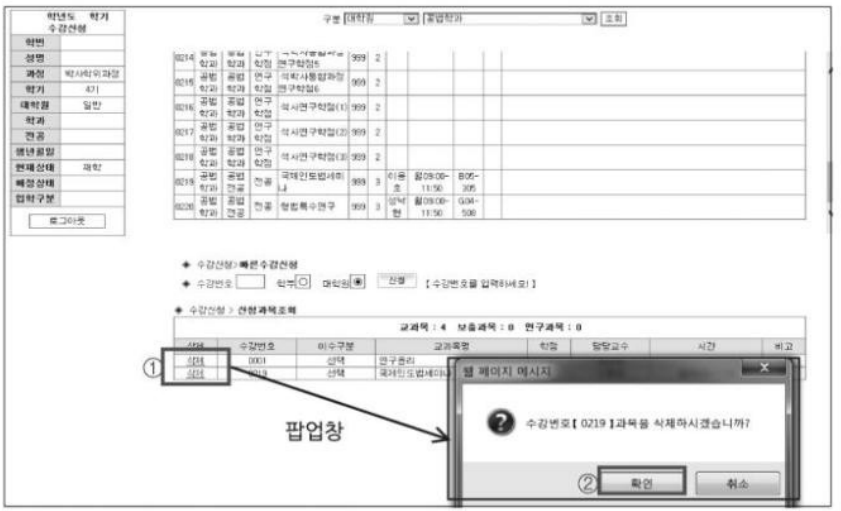

3. 학점교류

가. 우리대학교와 학생교류 협약이 체결된 국내·외 대학교 대학원간의 학점교류는 협약으로 정한 기간 내에서 우리대학교 대학원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교과목과 동일과목 또는 유사과목에 한하며 지도교수가 인정한 과목이어야 한다.

나. 교류학점은 석사과정 12학점, 박사과정 18학점, 석·박사통합과정 24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하되, 한 학기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대구·경북지역 대학원간 학점교류는 다음과 같다.

① 대구·경북지역 대학원간의 학점교류는 소정 기간 내에 동종·동류의 전공과목 및 유사과목으로 한하며 한 학기에 6학점 이내로 수강 신청할 수 있으며, 석사학위과정은 최대 12학점, 박사학위과정은 최대 18학점,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은 최대 24학점까지 인정되며 성적은 P(Pass)로 표기하여, 평균평점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② 수강신청을 위해서는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각 대학교 대학원 수강신청 기간 전에 대학원행정실로 “학점교류교과목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학점인정

가. 국내외 대학원 중퇴자 또는 수료자가 동일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

나. 재학 중 국내외 대학원에서 학점교류에 의하여 학점을 취득할 경우

다. 본교 석사학위과정에서 수료학점을 초과 취득한 자가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경우

라. 동일 학위과정에 재입학할 경우

마. “가”항과 “나”항의 학점인정은 석사과정 12학점, 박사과정 18학점, 석·박사통합과정 24학점까지 인정 가능함.

※ 석사학위과정 논문대체학위 취득요건에 해당하는 학점은 박사학위과정 취득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바. “다”항과 “라”항의 학점인정은 학점제한 없이 인정 가능함.

사. “가”, “나”, “다”항의 경우 매 학기 초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은 후 반드시 ‘학점인정신청서’(성적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여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음.

5. 보충과목 이수

가. 보충과목이수대상자

① 석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 학사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와 석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비동일학과에 입학한 자

② 박사과정 : 석사학위과정 전공과 박사학위과정 전공이 동일하지 않은 자와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출신자

③ 보충과목이수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에 의해 보충과목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학과간 협동과정에 입학한 경우 해당관련학과 출신자는 동일학과로 인정한다.

나. 보충과목이수학점

① 석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 해당 학사과정 전공과목 중에서 12학점 이상의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학과에 학사학위과정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때에는 해당학과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타 학과의 학사학위과정 교과목 중에서 보충과목을 이수 할 수 있다. 단, 해당학과 학사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과목을 이미 이수한 자는 인정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만 취득하면 된다.

② 박사과정 : 해당 학사 또는 석사 전공과목 중에서 12학점 이상의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출신자중 동일계 졸업자는 해당 석사학위과정 전공과목 중에서 6학점 이상의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학과에 석사학위과정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때에는 해당학과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타 학과의 학사 또는 석사학위과정 교과목 중에서 보충과목을 이수 할 수 있다. 단, 인정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인정학점(학과세미나, 개별연구, 특수문제연구과목 제외)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만 보충취득하면 된다.

다. 시기 및 절차

전기 입학자는 1월~2월, 후기 입학자는 7월~8월에 보충과목이수대상자를 해당학과로 통보하며 대상자는 해당 전공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보충과목학점인정및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

라. 시간중복 또는 미개설로 인하여 이미 신청한 보충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강신청 전 '보충과목이수신청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성적이수

가.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 및 연구학점을 100점(A+) 만점으로 평가하며 70점(C)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나. 각 교과목 및 연구학점의 당해학기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성적정정기간 중 공시된 성적을 확인하여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라. 연구학점 및 보충과목, 연구윤리과목, 학점교류로 이수한 성적은 평균평점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7. 전공변경

가.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동일학과 내에서 2기부터 전공변경이 가능하며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 내에 '전공변경 신청서'(성적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이미 취득한 교과목학점 및 연구학점은 변경한 전공의 교육과정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다.

8. 장학

가. 내국인 장학

장 학 명	지급대상 및 역할	장 학 금
면학장학	입학자 전원에게 일괄지급 (수업연한 내)	학과별로 수업료의 35%
강의조교장학	주당 10시간/7.5시간/5시간 종사하는 강의조교	① 주당 10시간 : 수업료 100% ② 주당 7.5시간 : 수업료 75% ③ 주당 5시간 : 수업료 50%
시설, 실험 조교 장학	학과 실험, 실습 등 강의업무보조	수업료 전액
학·석사연계 과정 장학	학·석사 연계 과정 입학자	입학금 면제
천마장학	영남대학교 학부성적이 우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지원학과의 주임교수로부터 천마장학지원 추천을 받은 자 ※ 지원자격 * 영남대학교 졸업(또는 예정)자로서, 각 학과(학부) 또는 전공 석차 상위 5% 이내인 전일제 학생 (단, 석차산정시의 모수가 20명 미만일 경우,1등 졸업(예정)자로서 입시지원당시 누적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주당 10시간 강의조교 또는 실험조교로 근무해야 함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천마장학생 자격 유지 조건 * 전일제 학생(미취업자) * 매학기 평점평균 3.75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3.75 미만 시 다음 학기 천마장학금을 지급 중단하며, 2개 학기 이상 3.75 미만 시 천마장학생 자격 상실, 재학기간 이수 과목 중 한 과목 이상 C 학점이하(연구윤리 NP포함) 취득 시 천마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하거나 자퇴 할 경우 천마장학 자격 상실

※ 면학장학률은 대학 사정에 따라 학기별 변동 가능함.

※ 각 장학금액에는 면학장학금이 포함된 금액임.

※ 조교근무자는 전일제 학생으로서 가계곤란자(소득 8분위 이하)를 50% 이상 우선 선발함.

나. 외국인 장학

대학원시행세칙 제39조 및 제41조의 5에 의해 외국인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사항을 규정 한다.

1) 장학종별 및 종별 신청 자격

(1) 2020-1학기 신입생 부터 적용

<table>
<tr><th>장학
종류</th><th>자격 대상 및 기준</th></tr>
<tr><td>장학
100
%</td><td>학과 추천을 받은 자로서 아래 〈어학성적 기준〉 중 1개 이상 해당자
〈어학성적 기준〉
<table>
<tr><th colspan="6">영어</th></tr>
<tr><th colspan="3">TOEFL</th><th rowspan="2">TOEIC</th><th rowspan="2">TEPS</th><th rowspan="2">IELTS</th></tr>
<tr><th>IBT</th><th>CBT</th><th>PBT</th></tr>
<tr><td>95</td><td>240</td><td>590</td><td>800</td><td>700</td><td>7</td></tr>
</table></td></tr>
<tr><td>장학
70%</td><td>학과 추천을 받은 자로서 아래 〈어학성적 기준〉 중 1개 이상 해당자
〈어학성적 기준〉
<table>
<tr><th colspan="6">영어</th></tr>
<tr><th colspan="3">TOEFL</th><th rowspan="2">TOEIC</th><th rowspan="2">TEPS</th><th rowspan="2">IELTS</th></tr>
<tr><th>IBT</th><th>CBT</th><th>PBT</th></tr>
<tr><td>80</td><td>210</td><td>550</td><td>700</td><td>600</td><td>6</td></tr>
</table></td></tr>
<tr><td>장학
50%</td><td>학과 추천을 받은 자로서, 아래 〈어학성적 기준〉 중 1개 이상 해당자이거나 아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해당자
〈어학성적 기준〉
<table>
<tr><th colspan="6">영어</th><th colspan="2">한국어</th></tr>
<tr><th colspan="3">TOEFL</th><th rowspan="2">TOEIC</th><th rowspan="2">TEPS</th><th rowspan="2">IELTS</th><th rowspan="2">KLAT</th><th rowspan="2">TOPIK</th></tr>
<tr><th>IBT</th><th>CBT</th><th>PBT</th></tr>
<tr><td>61</td><td>173</td><td>500</td><td>650</td><td>550</td><td>5.5</td><td>5급,
6급</td><td>5급,
6급</td></tr>
</table>
〈자격요건〉
1. 영어가 국어인 국가의 학생
2. 영어공용국가 출신으로 대학 4년간 영어로 교육받은 자</td></tr>
<tr><td>장학
30%</td><td>학과 추천을 받은 자로서 아래 〈어학성적 기준〉 해당자이거나 아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해당자
<table>
<tr><th colspan="2">한국어</th></tr>
<tr><th>KLAT</th><th>TOPIK</th></tr>
<tr><td>4급</td><td>4급</td></tr>
</table>
〈신입생〉
장학 100%, 70%, 50% 대상자가 아닌 자 중 학과 추천자
〈재학생〉
장학 100%, 70%, 50% 대상자 중 직전학기 이수한 성적에 C학점 이하 취득이 한 과목이라도 있는 자 또는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0 미만인 자
※ 장학 30% 대상자 중 직전학기 이수한 성적에 C학점 이하 취득이 한 과목이라도 있는 자 또는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0 미만인 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td></tr>
</table>

(2) 2017-2학기 신입생 부터 적용

<table>
<tr><th>장학
종류</th><th>자격 대상 및 기준</th></tr>
<tr><td>장학
100
%</td><td>학과 추천을 받은 자로서 아래 〈어학성적 기준〉 중 1개 이상 해당자
〈어학성적 기준〉
<table>
<tr><th colspan="6">영어</th><th colspan="2">한국어</th></tr>
<tr><th colspan="3">TOEFL</th><th rowspan="2">TOEIC</th><th rowspan="2">TEPS</th><th rowspan="2">IELTS</th><th rowspan="2">KLAT</th><th rowspan="2">TOPIK</th></tr>
<tr><th>IBT</th><th>CBT</th><th>PBT</th></tr>
<tr><td>95</td><td>240</td><td>590</td><td>800</td><td>700</td><td>7</td><td>6급</td><td>6급</td></tr>
</table></td></tr>
<tr><td>장학
70%</td><td>학과 추천을 받은 자로서 아래 〈어학성적 기준〉 중 1개 이상 해당자
〈어학성적 기준〉
<table>
<tr><th colspan="6">영어</th><th colspan="2">한국어</th></tr>
<tr><th colspan="3">TOEFL</th><th rowspan="2">TOEIC</th><th rowspan="2">TEPS</th><th rowspan="2">IELTS</th><th rowspan="2">KLAT</th><th rowspan="2">TOPIK</th></tr>
<tr><th>IBT</th><th>CBT</th><th>PBT</th></tr>
<tr><td>80</td><td>210</td><td>550</td><td>700</td><td>600</td><td>6</td><td>5급</td><td>5급</td></tr>
</table></td></tr>
<tr><td>장학
50%</td><td>학과 추천을 받은 자로서, 아래 〈어학성적 기준〉 중 1개 이상 해당자이거나 아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해당자
〈어학성적 기준〉
<table>
<tr><th colspan="6">영어</th><th colspan="2">한국어</th></tr>
<tr><th colspan="3">TOEFL</th><th rowspan="2">TOEIC</th><th rowspan="2">TEPS</th><th rowspan="2">IELTS</th><th rowspan="2">KLAT</th><th rowspan="2">TOPIK</th></tr>
<tr><th>IBT</th><th>CBT</th><th>PBT</th></tr>
<tr><td>61</td><td>173</td><td>500</td><td>650</td><td>550</td><td>5.5</td><td>4급</td><td>4급</td></tr>
</table>
〈자격요건〉
1. 영어가 국어인 국가의 학생
2. 영어공용국가 출신으로 대학 4년간 영어로 교육받은 자</td></tr>
<tr><td>장학
30%</td><td>〈신입생〉
장학 100%, 70%, 50% 대상자가 아닌 자 중 학과 추천자
〈재학생〉
장학 100%, 70%, 50% 대상자 중 직전학기 이수한 성적에 C학점 이하 취득이 한 과목이라도 있는 자 또는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0 미만인 자</td></tr>
</table>

(3) 2016-2학기 신입생부터 2017-1학기 신입생 까지 적용

<table>
<tr><th>장학
종류</th><th>자격 대상 및 기준</th></tr>
<tr><td>장학
100
%</td><td>학과 추천을 받은 자로서, 아래 〈어학성적 기준〉 중 1개 이상 해당자이거나 아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해당자
〈어학성적 기준〉
<table>
<tr><th colspan="6">영어</th><th colspan="2">한국어</th></tr>
<tr><th colspan="3">TOEFL</th><th rowspan="2">TOEIC</th><th rowspan="2">TEPS</th><th rowspan="2">IELTS</th><th rowspan="2">KLAT</th><th rowspan="2">TOPIK</th></tr>
<tr><th>IBT</th><th>CBT</th><th>PBT</th></tr>
<tr><td>80</td><td>210</td><td>550</td><td>700</td><td>600</td><td>6</td><td>5급</td><td>5급</td></tr>
</table>
〈자격요건〉
1. 영어가 국어인 국가의 학생</td></tr>
</table>

<table>
<tr><th>장학
종류</th><th colspan="8">자격 대상 및 기준</th></tr>
<tr><td></td><td colspan="8">2. 영어공용국가 출신으로 대학 4년간 영어로 교육받은 자
3. 외국대학 전임교원 및 해당 국가기관 연구소 연구원</td></tr>
<tr><td>장학
50%</td><td colspan="8">학과 추천을 받은 자로서 아래 〈어학성적 기준〉 중 1개 이상 해당자
〈어학성적 기준〉
<table>
<tr><th colspan="6">영어</th><th colspan="2">한국어</th></tr>
<tr><th colspan="3">TOEFL</th><th rowspan="2">TOEIC</th><th rowspan="2">TEPS</th><th rowspan="2">IELTS</th><th rowspan="2">KLAT</th><th rowspan="2">TOPIK</th></tr>
<tr><th>IBT</th><th>CBT</th><th>PBT</th></tr>
<tr><td>61</td><td>173</td><td>500</td><td>650</td><td>550</td><td>5.5</td><td>4급</td><td>4급</td></tr>
</table></td></tr>
<tr><td>장학
30%</td><td colspan="8">〈신입생〉
장학 100% 또는 50% 대상자가 아닌 자 중 학과 추천자

〈재학생〉
장학 100% 또는 50% 대상자 중 직전학기 이수한 성적에 C학점 이하 취득이 한 과목이라도 있는 자 또는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0 미만인 자</td></tr>
</table>

(4) 2016-1학기 신입생 까지 적용

<table>
<tr><th>장학
종류</th><th colspan="8">자격 대상 및 기준</th></tr>
<tr><td>장학
100%</td><td colspan="8">외국인 의료보험 가입자로서 아래 각 항에 해당 되는 자
1. 어학성적 기준
<table>
<tr><th colspan="6">영어</th><th colspan="2">한국어</th></tr>
<tr><th colspan="3">TOEFL</th><th rowspan="2">TOEIC</th><th rowspan="2">TEPS</th><th rowspan="2">IELTS</th><th rowspan="2">KLAT</th><th rowspan="2">TOPIK</th></tr>
<tr><th>IBT</th><th>CBT</th><th>PBT</th></tr>
<tr><td>61</td><td>173</td><td>500</td><td>650</td><td>550</td><td>5.5</td><td>4급</td><td>4급</td></tr>
</table>
2. 영어가 국어인 국가의 학생
3. 영어공용국가 출신으로 대학 4년간 영어로 교육받은 자
4. 외국대학 전임교원 및 해당 국가기관 연구소 연구원</td></tr>
<tr><td>장학
30%</td><td colspan="8">1. 장학 100% 대상자가 아닌 자 및 학과 미추천자
2. 직전학기 이수한 성적에 C학점 이하 취득이 한 과목이라도 있는 자 또는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0 미만인 자</td></tr>
</table>

※ 매 학기 학과심사에 따라 장학지급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장학금 제도는 대학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모든 외국인의 의료보험 가입은 의무화 한다.

2) 장학종별 의무 사항

장학구분	근무 의무 사항
외국인장학 50~100% 수혜자	학과에서 주당 10시간 내외 수업지원·실험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보조

3) 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수혜 받고자 하는 자(장학30% 제외)는 매 학기 URP종합정보에서 '외국인 장학금 신청서'를 출력하여 6월과 12월 중에 소속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URP 종합정보시스템 → 장학관리 → 외국인장학신청)

※ 어학성적 신규 취득자일 경우, 장학 신청 전에 소속 학과사무실로 어학성적 증명서를 제출 후 반영된 경우에만 장학금 신청 가능

4) 장학 자격 유지 요건

매학기 이수한 전 과목의 각 취득 학점이 C+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C학점 이하 (연구윤리 NP포함) 취득한 과목이 있는 경우 또는 평점평균이 3.0 미만인 경우 학과추천에 따라 최대 30% 장학금만 지원된다.

9. 등록

가.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4회(학·석사연계과정 3회, 학·석사학점상호인정과정 3회), 석·박사통합과정은 8회(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회 단축가능,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2회 단축가능)이상의 정규 등록을 매학기 소정의 등록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나. 각 정규등록을 마친 자가 수료하지 못하고 다시 등록할 경우에 해당학기의 취득 예정학점이 2학점 이하이면 등록금의 1/3액, 3학점 내지 5학점이면 등록금의 1/2액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6학점 이상이면 전액등록을 하여야 한다.

10. 휴학

가.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장애, 국가고시합격에 의한 연수원 교육, 질병, 병역복무, 임신·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특별한 사유에 의한 휴학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기간 종료 이전에 휴학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 연장된 휴학기간을 일반휴학기간에 산입한다.

다. 군휴학자는 입영일 7일전에 입영통지서 사본과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반휴학 기간 중 군휴학자는 입영통지서 사본을 입영전 7일이내에 제출하여 군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라. 군 휴학자는 전역후 1년 이내(학기개시일 기준)에 복학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적된다.

마. 장애, 국가고시합격에 의한 연수원 교육, 질병, 임신·출산, 육아 등을 위해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바. 등록 후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휴학자는 복학시 등록 인정되며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일반휴학자는 수업료의 2/3가 보전 되고 1/3은 복학시 차액 등록 하여야 한다.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일반휴학자의 등록금은 복학시 전액 등록하여야 한다(수업일수 3/4선 후 휴학은 불가)
사. 등록 후 수업일수 4분의 3 이전 입영휴학하는 경우에는 전역 후 복학 시 당해학기 등록금을 인정할 수 있다
아. 일반휴학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휴학신청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학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수업일수 4분의 1 이후는 휴학을 취소할 수 없다.
자. 도서미납자는 반드시 도서완납 후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복학

가. 휴학기간이 종료되기 전 복학을 원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 기간 내에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군복학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과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반드시 전역 후 1년 이내에(학기개시일 기준)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로 1년 이상 복무중인 자는 근무기관의 장의 취학승인서와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12. 제적

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된다.
① 등록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②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③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나. 자원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퇴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자원퇴학의 경우 납입금 환불(퇴학일 기준)
① 해당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 등록금 및 수혜비 전액
②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 수업료 5/6 해당액
③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 2/3 해당액
④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 1/2 해당액
⑤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⑥ 수업일수 3/4이후 제적으로 등록금 반환을 받은 자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⑦ 휴학기간 중 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시작일이 납입금 반환 기준이 됨.
⑧ 제출서류 : 퇴학신청서, 통장사본(본인)

13. 재입학

가. 자 격 : 미등록 제적자, 휴학종료 제적자, 퇴학한 자. 징계에 의해 제적된 자 중 소속학과에서 허가한 자.
나. 제출서류 :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신청서 제출하여야 함.(주민등록초본 첨부 **:** 남자 해당)
다. 총장은 제적 또는 자퇴한 자가 재입학 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제외한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에 의해 제적된 자는 소속학과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라. 재입학 할 경우 기 이수한 학점은 인정될 수 있음.

14. 수료

가. 석사과정 : 4회(학·석사연계과정 3회, 학·석사학점상호인정과정 3회)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친 자로서 기초공통과목 3학점 이상, 전공과목 6학점 이상을 포함한 교과목학점 24학점, 연구학점 6학점, 연구윤리 1학점(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을 이수한 자
나. 박사과정 : 4회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친 자로서 기초공통과목 3학점 이상, 전공과목 12학점 이상을 포함한 교과목학점 36학점, 연구학점 8학점, 연구윤리 1학점(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을 이수한 자
다. 석·박사통합과정 : 6회 이상(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7회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친 자로서 기초공통과목 6학점, 전공과목 18학점 이상을 포함한 교과목학점 54학점(2009년 이전 입학자 60학점), 연구학점 10학점(2012학년도 입학자까지는 12학점). 연구윤리 1학점(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을 이수한 자

라. 각 학위과정의 보충과목대상자는 반드시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상기 교과목학점에 불포함)
마. 각 학위과정은 교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3.0(B)이상인 자를 수료로 인정한다.

Ⅲ. 학 위 청 구

1. 지도교수 배정

가. 시 기 : 매 학기 수업일수 1/4선 이전

나. 자 격 : 석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2기초까지, 학·석사연계과정과 학·석사학점 상호인정과정 및 박사과정은 1기초

다. 지도교수 배정

① 지도교수는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1인을 제청 한다.

② 논문지도상 부득이한 경우 다음과 같이 지도교수 2인을 제청(변경)할 수 있다.

- 지도교수 1인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이여야 한다.
- 나머지 1인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이거나 명예교수, 객원교수, 겸임교원, 타 대학교원, 교외연구소 연구원 중에서 제청(변경)할 수 있다.
- 명예교수의 지도교수 제청(변경)기간은 명예교수 임용 후 5년까지 가능하다.
- 지도교수 제청의 경우, 가급적 정년퇴임 2년 이상 남은 교원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라. 지도교수 변경

제청된 지도교수가 퇴직 등의 사유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매 학기 초(수업일수 1/4선 이내) 지도교수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료생이나 휴학생은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외국어시험

가. 시험 및 면제 신청기간

① 전 기 : 2020. 3. 9(월) ~ 3. 16(월)

② 후 기 : 2020. 8. 24(월) ~ 8. 31(월)

나. 시험일자

① 전 기 : 2020. 3. 21(토)

② 후 기 : 2020. 9. 5(토)

다. 신청방법 : URP(종합정보시스템) → 졸업관리 → 외국어시험신청

라. 응시자격 : 각 학위과정의 재학생 및 수료자는 등록횟수와 취득학점에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다.

마. 시험과목 : 내국인 학생은 “영어”, 외국인학생의 경우 “한국어”

바. 면제 신청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신청기간에 인터넷 신청 후 외국어시험면제 신청서와 근거서류를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는 경우 외국어시험 합격으로 한다.

내국인 학생	외국인 학생
1. TOEFL, TOEIC, TEPS, IELTS등에 소정의 성적을 취득한 자 2. 영어를 공용어로 하는 국가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	1. KLAT, TOPIK에 소정의 성적을 취득한 자 2. 한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

※ 단, 입학 시 위 표의 면제서류 제출자(2013학년도 입학자부터)와 영어특강 및 한국어 특강 합격자는 별도 면제 신청을 받지 않고 URP(종합정보시스템)에 합격 처리함.

사. 합격기준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3">시험 종류</th><th colspan="2">합격기준</th></tr>
<tr><td rowspan="11">내국인</td><td rowspan="6">공인 영어자격시험</td><td rowspan="3">TOEFL</td><td>IBT</td><td>61점 이상</td><td rowspan="6">외국어시험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성적</td></tr>
<tr><td>CBT</td><td>173점 이상</td></tr>
<tr><td>PBT</td><td>500점 이상</td></tr>
<tr><td colspan="2">TOEIC</td><td>650점 이상</td></tr>
<tr><td colspan="2">NEW TEPS
(TEPS)</td><td>327점 이상
(600점)이상</td></tr>
<tr><td colspan="2">IELTS</td><td>5.0 이상</td></tr>
<tr><td rowspan="4">대학원 개설 영어특강</td><td rowspan="2">일반
학과</td><td>석사</td><td>70점 이상</td><td rowspan="4">출석률 75%
이상 수강</td></tr>
<tr><td>박사, 석박통합</td><td>75점 이상</td></tr>
<tr><td rowspan="2">영어영
문학과</td><td>석사</td><td>80점 이상</td></tr>
<tr><td>박사, 석박통합</td><td>85점 이상</td></tr>
<tr><td colspan="3">영어를 공용어로 하는 국가에서 학위취득자</td><td>학사 이상</td><td></td></tr>
<tr><td rowspan="2">대학원 출제 영어시험</td><td colspan="2">일반학과</td><td>70점 이상</td><td></td></tr>
<tr><td colspan="2">영어영문학과</td><td>80점 이상</td><td></td></tr>
<tr><td rowspan="4">외국인</td><td rowspan="2">공인 한국어자격시험</td><td colspan="2">KLAT</td><td>4급 이상</td><td rowspan="2">외국어시험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성적</td></tr>
<tr><td colspan="2">TOPIK</td><td>4급 이상</td></tr>
<tr><td colspan="3">한국어특강
(2A 이상 1회.
단, 2014학년도 전기 입학자까지는
1A 이상 2회도 가능)</td><td>70점 이상</td><td>출석률 75%
이상 수강</td></tr>
<tr><td colspan="3">한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td><td>학사 이상</td><td></td></tr>
<tr><td colspan="3">대학원 출제 한국어 시험</td><td>70점 이상</td><td></td></tr>
</table>

※ 공인 영어 및 한국어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은 외국어시험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한다.

아. 국내학생 외국어시험 면제를 위한 영어특강 안내

① 수강대상자 : 대학원 외국어(영어) 시험을 면제 받고자 하는 재학생 및 수료생
② 신청 시기 : 6월초, 12월초
③ 수업 시기 : 하계(6월말~7월), 동계(12월말~1월)
④ 제출 서류 : URP(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소정의 수강료 납부)
⑤ 수업 기간 : 1일 2시간씩 15일 개설

자. 외국인학생 외국어시험 면제를 위한 한국어특강 안내

① 수강대상자: 대학원 외국어(한국어) 시험을 면제 받고자 하는 자
② 신청시기: 2월말, 6월초, 8월말, 12월초
③ 수업시기: 봄학기(3월~6월), 하계(6~7월), 가을학기(9월~12월), 동계(12월~1월)
④ 수업시수: 60시간(주 3일, 10주(학기 중)/ 매일반, 4~5주(방학 중)
⑤ 수강료 : 250,000원
⑥ 신청방법: 국제교류센터 212호, 한국어교육원에서 신청(수강료 계좌송금)

3. 종합시험

가. 신청기간

① 전 기 : 2020. 3. 30(월) ~ 4. 6(월)
② 후 기 : 2020. 9. 14(월) ~ 9. 21(월)

나. 시험일자

① 전 기 : 2020. 4. 22(수) ~ 4. 24(금)
② 후 기 : 2020. 10. 7(수) ~ 10. 12(월)

다. 신청방법 : URP(종합정보시스템) → 졸업관리 → 종합시험 신청 → 신청완료

라. 응시자격 : 석사 및 박사과정은 4회, 학·석사연계과정 및 학·석사학점상호인정과정 3회, 석·박사통합과정은 6회(2012학년도 입학생까지는 7회) 이상 정규등록을 한 당해 학기 수료예정자와 수료자로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당해 학기 합격자 포함)

마. 시험과목 : 각 학과별 학과내규로 정한 기준에 의한다.

사. 합격기준 : 각 학과별 학과내규로 정한 기준에 의한다.

아. 합격취소 : 응시자격의 당해 학기 수료예정자라 함은 당해 학기말에 각 학위과정의 수료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를 말하며 수료예정 응시자가 종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학기말에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4. 연구생 등록

가. 신청기간

① 전기 : 2020. 3. 2(월) ~ 3. 4(수)
② 후기 : 2020. 9. 1(화) ~ 9. 3(목)
※ 상기 신청기간 이외에 각 학기 2차 학위청구논문 신청기간에 연구생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음.

나. 신청방법 : URP(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후 신청서를 해당학과로 제출

다. 자 격 : 대학원 수료자로서 당해학기 학술활동 및 학위논문 연구자, 연구과제 및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학위논문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
※ 당해학기 학위논문을 청구하고자 하는 수료자는 필히 등록하여야 함.

라. 등 록 비 : (인문사회·예체능) 150,000원, (자연·공학·의학계열) 200,000원

5. 학위청구논문

가. 신청기간

① 전 기 - 1차(수료자 대상) : 2020. 3. 2(월) ~ 3. 4(수)
- 2차(수료예정자 및 수료자 대상) : 2020. 5. 14(목) ~ 5. 18(월)

② 후 기 - 1차(수료자 대상) : 2020. 9. 1(화) ~ 9. 3(목)
- 2차(수료예정자 및 수료자 대상) : 2020. 11. 2.(월) ~ 11. 4.(수)

나. 자 격

①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4회(학·석사 연계과정 및 학·석사학점상호인정과정 3회), 석·박사통합과정은 6회 이상(2012학년도 입학자까지는 7회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한 자로서 당해 학기 수료예정자 및 수료자

② 각 학위과정별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다. 제출서류 (①~③ : 대학원 행정실 제출)

① 학위청구논문제출신청서 (인터넷 출력)

② 학위청구논문추천 및 심사위원제청서(석사과정은 3인 이상, 박사과정은 5인 이상으로 하되 석사과정의 논문심사위원 중 1인, 박사과정의 논문심사위원중 2인까지 외부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외부 심사위원을 추가적으로 위촉할 경우(석사학위는 2인 이내, 박사학위는 3인 이내)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인터넷 출력)

※ 학위청구논문의 지도교수(명예교수 포함) 및 외부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③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인터넷 출력)

④ 심사용 학위청구논문 석사과정은 3부, 박사과정은 5부**(해당학과로 제출)**

⑤ 논문 심사료(석사 100,000원, 박사 360,000원)

라. 논문공개발표 및 심사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대학원장이 정한 소정의 기간에 공개발표와 심사를 하여야 하며, 학위청구논문심사를 석사과정은 2회 이상, 박사과정은 3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공개발표는 심사횟수에 포함됨.)

마. 학위청구논문 합격 기준

논문 성적은 심사위원 각각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석사학위과정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5분의 4 이상이 각각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바. 논문심사위원회는 논문의 합격여부를 판정하여 학위청구논문 심사요지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연기는 다음 차수로 1회만 연기할 수 있으며, “학위청구논문 심사 연기원”을 작성한 다음, 지도교수, 심사위원장, 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아. 학위청구논문심사 미발표자는 “학위청구논문심사 미발표자 심사료 반환 요청서”를 작성한 다음, 지도교수 확인을 거쳐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6. 학위논문 완성본 지침

가. 학위논문의 완성본 제출

① 백색 종이커버 별쇄본 4부(1부는 심사위원날인을 받은 원본 포함), 공법·사법학과는 6부 제출

② 논문원본파일 제출 방법
도서관홈페이지 (http://libs.yu.ac.kr/) → 온라인학위논문제출 → 논문정보입력 → 학위논문이용 동의서 및 논문제출 확인서 출력 (☎ 도서관 담당 : 810-1673)

③ 학위논문저작권 동의서

④ 박사 학위취득자 조사표(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나. 학위논문의 규격

① 판 종 : 4·6배판 (19×26)

② 지 질 : 백색 모조지(70g 이상)

③ 표지색깔 : 학위논문은 백색 종이커버 별쇄본

④ 본문인쇄방식
- 마스터, 옵셋 또는 워드프로세서로 인쇄한다.
-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하고 논문분량이 적은 경우 단면인쇄도 가능하다.

⑤ 논문이 갖추어야 할 항목과 순서
- 표지(별지 제1호 서식)
- 백지
- 속표지(별지 제2호 서식)
- 인준서(별지 제3호 서식)
- 감사의 글(별지 제4호 서식) (필요한 경우)
- 목차
- 논문본문
- 참고문헌
- 부록(Appendix) (필요한 경우)
- 국문논문인 경우에는 영문요약, 외국어 논문인 경우에는 국문요약 2페이지 이내 (별지 제5호 서식)

다. 유의사항

① 학과 명칭 또는 전공

* 예능계열 학과 명칭 표기 주의

ex) 작곡과 (O) - 작곡학과 (X), 성악과 (O) - 성악학과 (X)
국악과 (O) - 국악학과 (X), 기악과 (O) - 기악학과 (X)

한국회화과 (O) - 한국회화학과 (X), 회화과 (O) - 회화학과 (X)

* 전공명칭 표기 주의

ex) 미학미술사학과 미학미술사학전공 (O) - 미학미술사학과 미학미술전공 (X)

ex) 미학미술사학과 미술사학전공 (O) - 미학미술사학과 미술사전공 (X)

※ 졸업예정자의 경우 학과 명칭과 전공명을 확인하여 최종 완성본 인쇄 시 착오 없기 바람.

② 국문으로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국문으로만, 영문으로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영문으로만 제목을 표시 할 것.

* 국문 발표자의 경우

ex) 키이츠의 정치적 상상력 (O) - 키이츠의 정치적 상상력 (X)
Keats's Political Imagination

* 영문 발표자의 경우

ex) Keats's Political Imagination (O) - 키이츠의 정치적 상상력 (X)
Keats's Political Imagination

③ 최종 완성본 심사위원 날인부는 반드시 실 날인용을 제출, 실 날인용 인쇄본은 불가함.

7. 석사학위과정 논문대체

가. 논문대체에 대한 정의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대체 학위청구"는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에 갈음하여, 수료요건에 3학점 이상의 전공과목과 논문대체 교과목을 더하여 이수하면서 논문에 상응하는 과제를 수행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기수료생은 수료요건을 이미 충족한 것으로 본다.)

나. 신청자격(아래 항목 모두 충족한 자)

1) 논문대체 학위 취득을 허용한 학과의 소속인 자
2) 3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혹은 수료자(학·석사연계과정/학·석사 학점상호 인정 입학생은 제외)
3) 학과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한 자

다. 학과별 논문대체 요건 : 별도 안내

라. 논문대체 신청서 제출

1) 제출기간 : 매학기 말 별도 안내
2) 제출방법
URP(종합정보시스템)→졸업관리→논문대체신청→신청서를 출력하여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확인→대학원행정실 제출

마. 논문대체 수강신청 기간 및 방법 : 별도 안내

바. 등록금 납부

1) 납부기간 : 별도 안내

2) 수료자 등록

가) 수강신청한 학점 수에 따른 학점단위등록

나) 수강신청 학점단위별 등록금액

수강 신청 학점	등록금액
2학점 이하	해당학기 등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5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반액
6학점 이상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3)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방법

- URP(종합정보시스템) 접속 → 등록관리 → 등록금고지서 출력

8. 학위과정별·학과별 수여학위명

P.91 (대학원학칙 별표 2)

9. 학위종별 후드색깔

P.142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별표 3)

[별지 제1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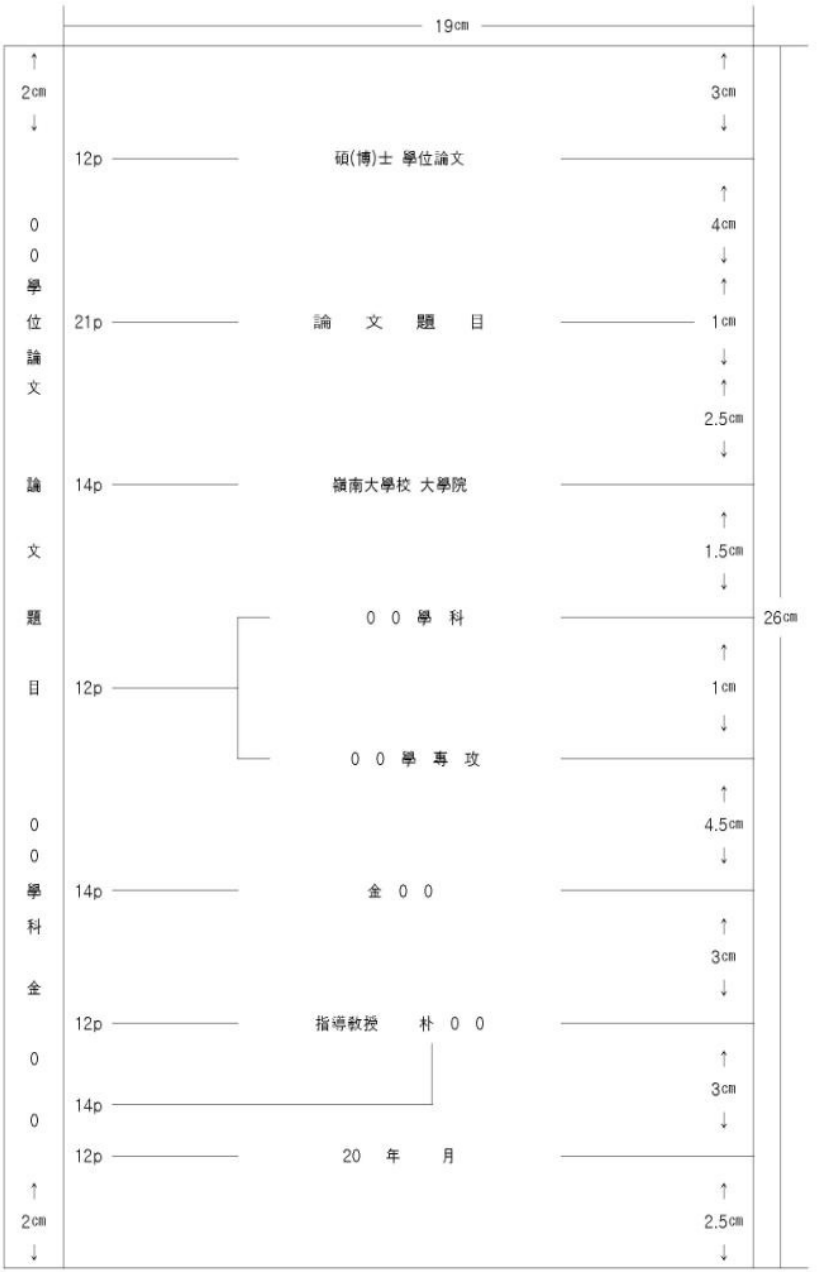
19cm
2cm
12p
碩(博)士 學位論文
3cm
0
0
學
位
論
文
4cm
21p
論 文 題 目
1cm
2.5cm
論
文
14p
嶺南大學校 大學院
1.5cm
題
目
0 0 學 科
26cm
12p
1cm
0 0 學 專 攻
0
0
學
科
金
4.5cm
14p
金 0 0
3cm
12p
指導敎授 朴 0 0
0
0
14p
3cm
12p
20 年 月
2cm
2.5cm

[별지 제2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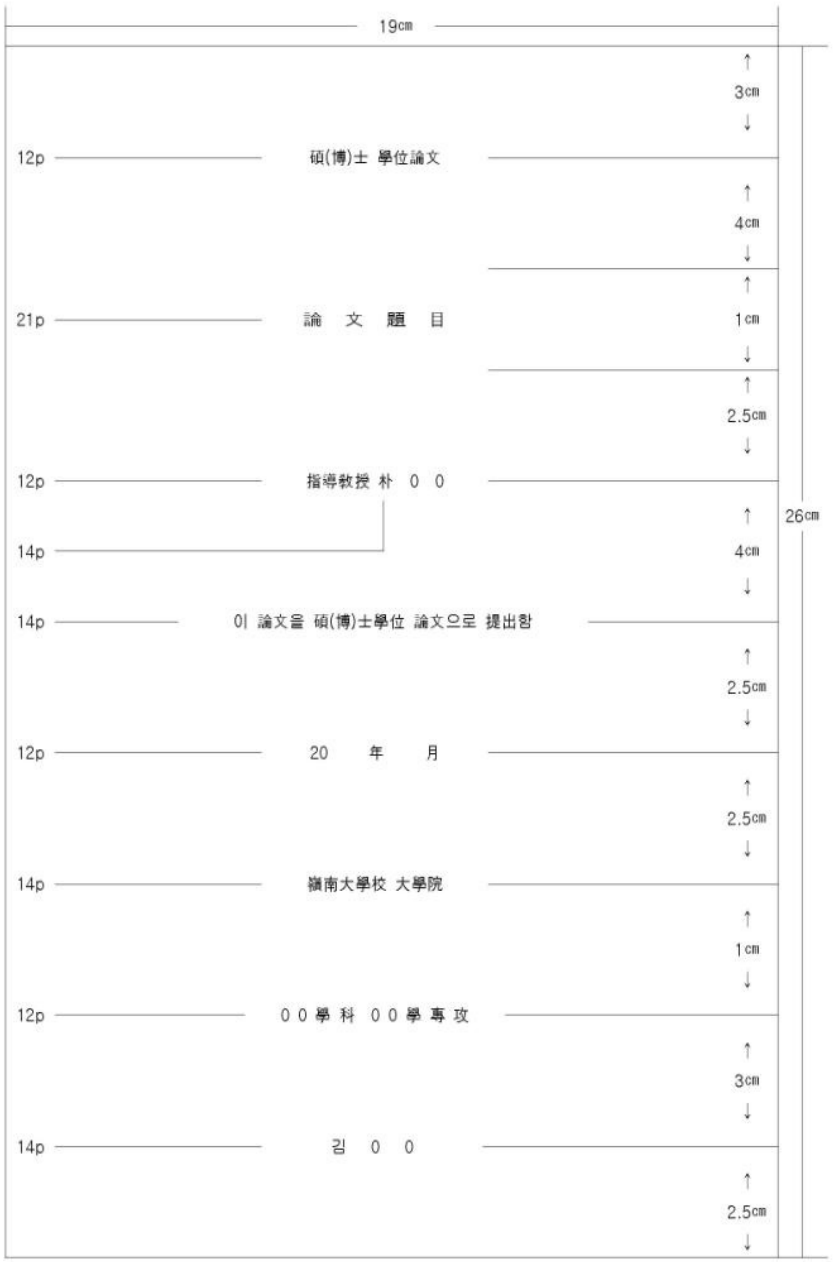
19cm
3cm
12p
碩(博)士 學位論文
4cm
21p
論 文 題 目
1cm
2.5cm
12p
指導敎授 朴 0 0
14p
26cm
4cm
14p
이 論文을 碩(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5cm
12p
20 年 月
2.5cm
14p
嶺南大學校 大學院
1cm
12p
0 0 學 科 0 0 學 專 攻
3cm
14p
김 0 0
2.5cm

[별지 제3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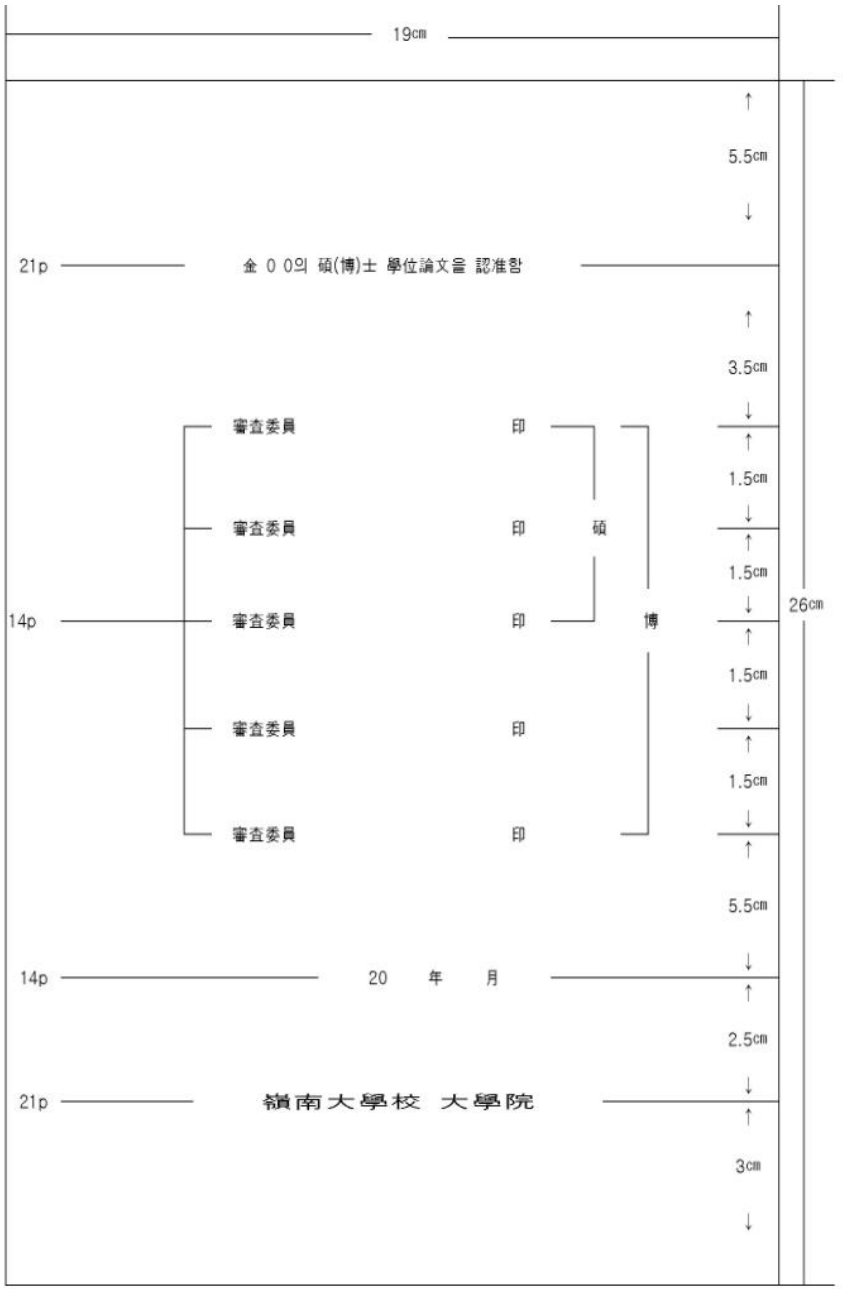
19cm
5.5cm
21p
金 0 0의 碩(博)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3.5cm
審査委員 印
1.5cm
審査委員 印 碩
1.5cm
14p
審査委員 印 博
26cm
1.5cm
審査委員 印
1.5cm
審査委員 印
5.5cm
14p
20 年 月
2.5cm
21p
嶺南大學校 大學院
3cm

[별지 제4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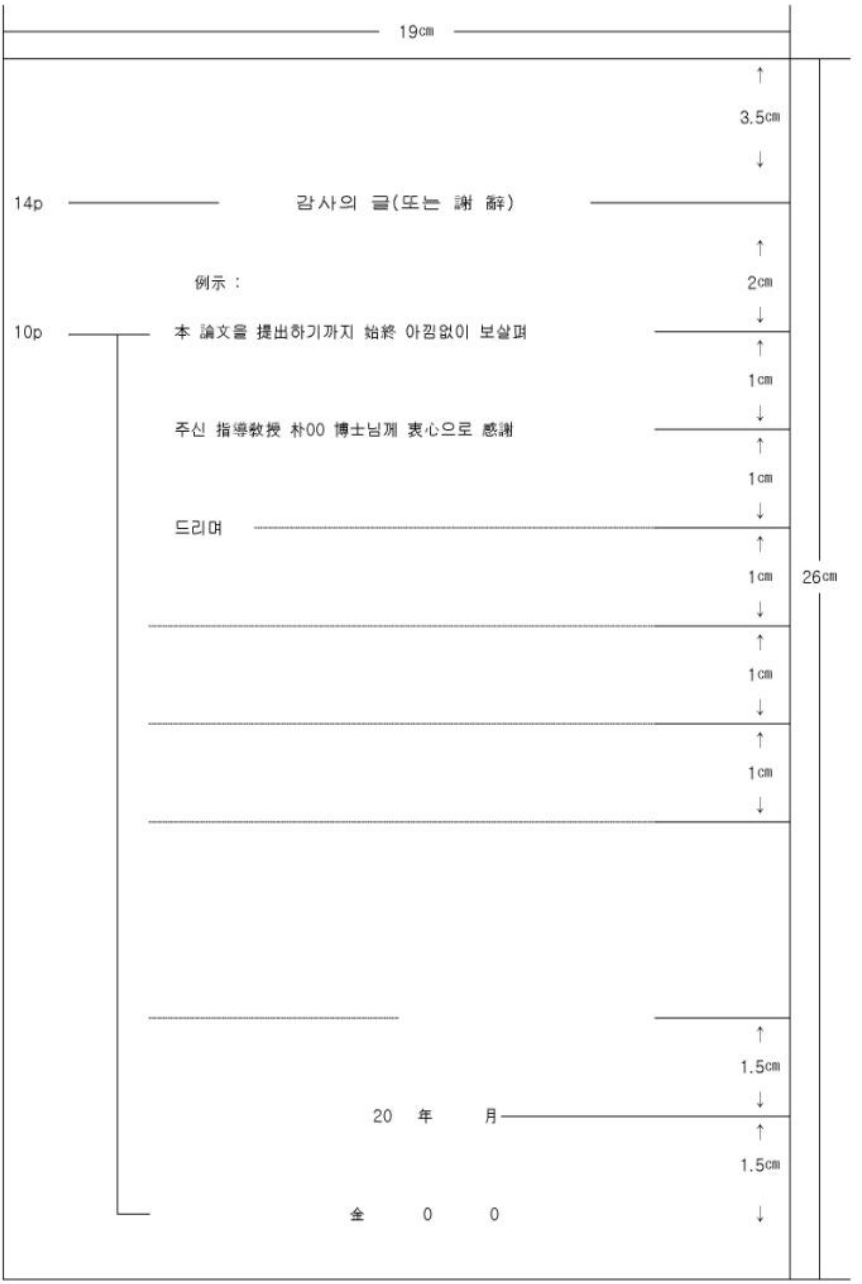
19cm
3.5cm
14p
감사의 글(또는 謝 辭)
例示 :
2cm
10p
本 論文을 提出하기까지 始終 아낌없이 보살펴
1cm
주신 指導敎授 朴00 博士님께 衷心으로 感謝
1cm
드리며
1cm
26cm
1cm
1cm
1.5cm
20 年 月
1.5cm
金 0 0

[별지 제5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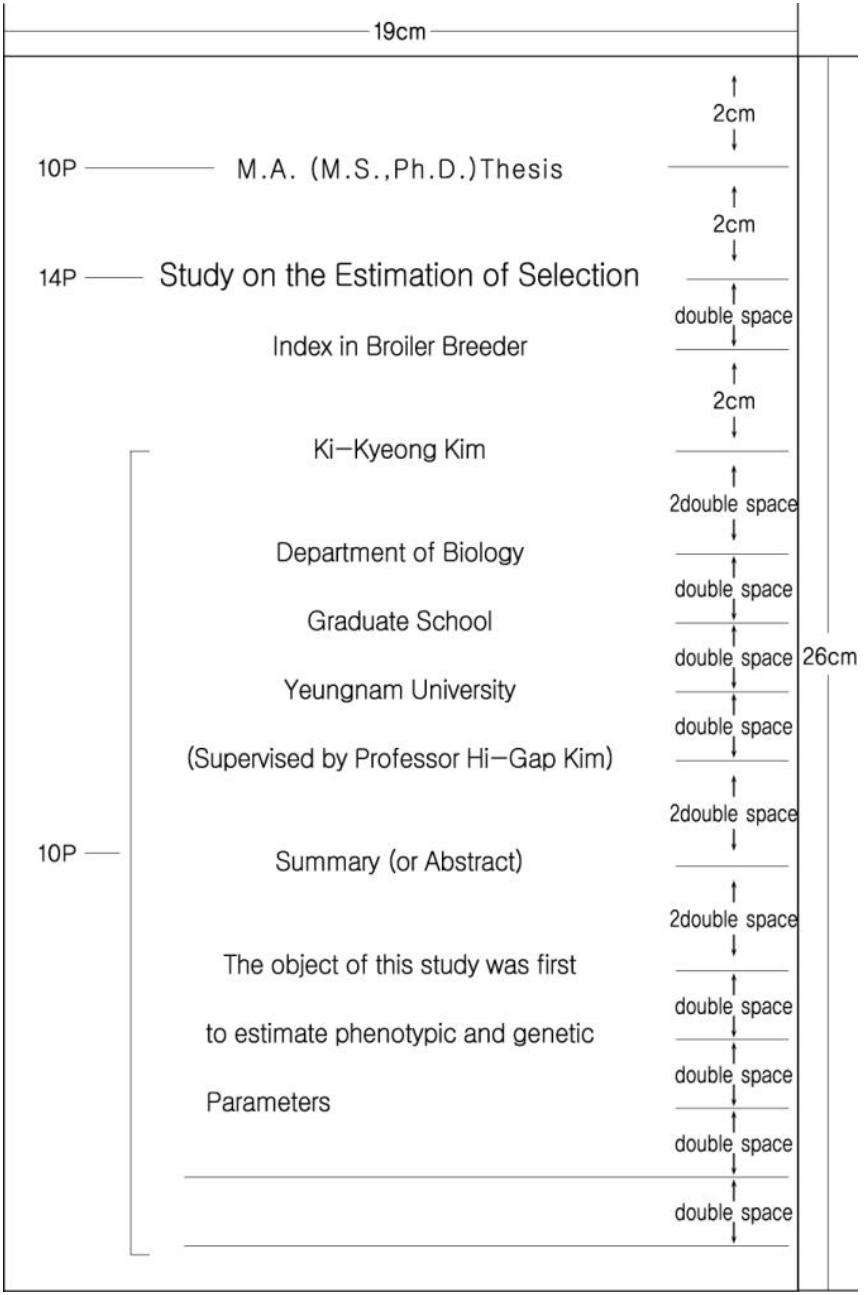
19cm
2cm
10P
M.A. (M.S.,Ph.D.)Thesis
2cm
14P
Study on the Estimation of Selection
double space
Index in Broiler Breeder
2cm
Ki-Kyeong Kim
2double space
Department of Biology
double space
Graduate School
double space
26cm
Yeungnam University
double space
(Supervised by Professor Hi-Gap Kim)
2double space
10P
Summary (or Abstract)
2double space
The object of this study was first
double space
to estimate phenotypic and genetic
double space
Parameters
double space
double space

[별지 제6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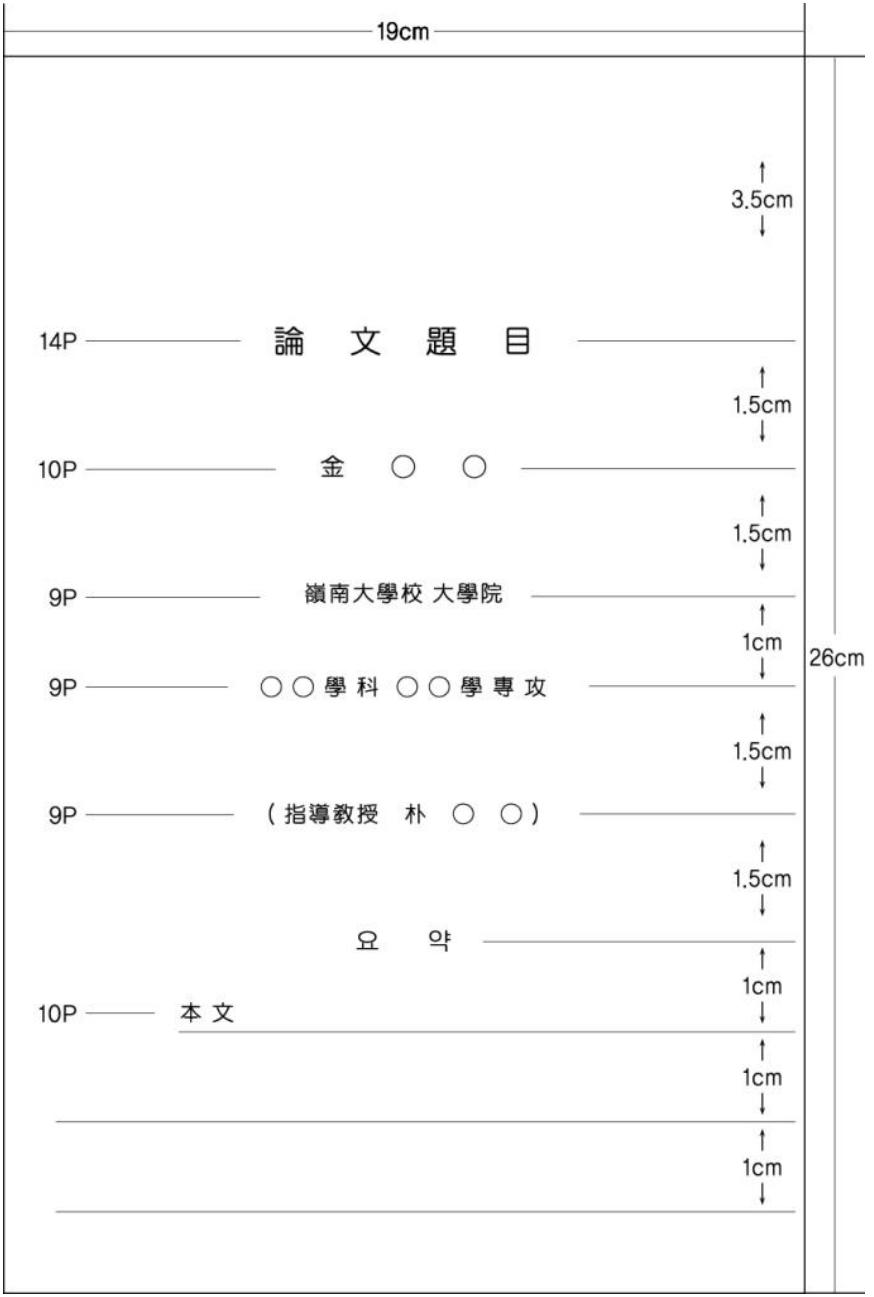
19cm
3.5cm
14P
論 文 題 目
1.5cm
10P
金 ○ ○
1.5cm
9P
嶺南大學校 大學院
1cm
26cm
9P
○○學科 ○○學專攻
1.5cm
9P
(指導教授 朴 ○ ○)
1.5cm
요 약
1cm
10P
本 文
1cm
1cm

Ⅳ. 기타 학사 지원

1. 학생정보조회

다음과 같은 학생개인정보를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 조회방법 : http://www.yu.ac.kr → URP(종합정보시스템) → 학적관리 → 학적조회 / 수정

나. 학생정보조회 내용

① 학적사항 : 학생 본인의 기본사항 확인
② 주소사항 : 본인 및 보호자 주소, 영문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정정이 가능함
③ 수강신청 : 해당 학기의 수강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④ 변동내역 : 학적변동내역 확인 가능
⑤ 성적사항 : 학기별 이수한 성적과 학점을 확인할 수 있음
⑥ 보충과목 : 보충과목이수대상자는 보충과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⑦ 장학 / 등록 : 학기별 장학수혜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⑧ 졸업사항 : 학점정보, 수료정보, 자격정보(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논문정보(논문제목), 졸업기본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다. 수료 및 졸업 모의사정 : URP(종합정보시스템) → 졸업관리 → 이수내역조회

2. 학생증 발급

가. 신입생 학생증발급 절차

①

학생증발급 신청서 교부 (대구은행) → 작성 · 사진(3×4cm)부착

→ 학생증발급 신청서 제출 (대구은행) → 학생증 수령(신청 2~3주 후) (대학원 행정실에서 수령)

② 학생증은 도서대출 및 대구은행 직불카드 겸용으로 발급된다.
③ 학생증을 발급 받기 전에 도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스마트폰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810-1672)

나. 학생증 재발급 절차

URP(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증 분실 신고 →

대구은행에서 재발급 신청 후(신분증 지참)
① 즉석 발급(대구은행 영남대 지점)
② 사진변경의 경우 2주 후 (대학원 행정실에서 수령)

3. 각종 증명서 발급

가. 각종 증명서 종류(국문, 영문)

① 재학증명서
② 성적증명서
③ 휴학증명서
④ 수료예정증명서
⑤ 학위수여예정증명서(학위청구논문 신청 마감 후 발급)
⑥ 수료증명서
⑦ 학위수여증명서 (= 졸업증명서)
⑧ 학적부 사본
⑨ 제적증명서
⑩ 연구생증명서
⑪ 교육비납입증명서
⑫ 학사일정 확인서

나. 증명서 발급 장소 : 수업학적팀(☎ 810-1096)

방문발급 또는 인터넷발급(학교홈페이지-대학생활-증명발급-인터넷증명발급)

다. 업무시간 : 09:00 ~ 17:00(토, 일요일은 제외)

※ 증명서발급기는 연중 상시 발급

4. 대학원 열람실

우리 대학교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공간인 대학원 열람실(법학전문대학원 1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율석으로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재학생 및 수료자 연구생(연구생이 아닌 수료자는 제외)들이 연구 및 논문을 준비하기 위한 공간으로 본교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 및 과학도서관 각 열람실도 자유로이 이용가능 합니다.

5. 대학원 전산실습실

대학원생들의 논문작성 및 정보검색을 위하여 대학원 전산실습실(법학전문대학원 건물 1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전산실습실은 LAN망이 설치된 컴퓨터를 구비하여 대학원생(재학생, 수료자 연구생)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6. 도서관

1. 개 관

① 도서관의 기능

대학도서관의 기능은 학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연구와 교육, 학술 활동 및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 정리하여 제공해 주는 동시에 이를 보존하는 데 있다.

② 장서현황

2020년 1월 현재 본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일반도서 1,877,395권, 고서 83,568권, 비 도서자료 126,686점이다. 이 외에 780종의 국내외 연속간행물과, 40,781종의 전자저널, E-Book 39,085권을 구비하고 있다.

③ 도서 분류표

본 도서관 도서 분류표는 KDC 6판(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4th ed.)(한국 십진분류법)에 의거하고 있다.

④ 개관시간

구 분		평 일	토 요 일
중앙도서관	안내데스크	09:00~17:00	
	디지털자료실	09:00~22:00	09:00~13:00
	인문/예술자료실		
	어문학자료실		
	총류/학위논문실		
	사회과학자료실		
	고문헌실	09:00~17:00	
과학도서관	자연과학자료실	09:00~22:00	09:00~13:00
	연속간행물실	09:00~17:00	
	전자정보실		
법학도서관	법학자료실	09:00~21:00	
의학도서관	의학자료실	08:30~19:00	
일 반 열 람 실		24시간	24시간

※ 관장은 필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⑤ 휴관일 * 일요일 / 국정공휴일 / 개교기념일 (12월 22일)

※ 2020년 과학도서관 리노베이션 공사로 인해 자료실 및 열람실 개관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

2. 도서관의 이용

도서관의 각 주제자료실에는 개인소지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으며, 각 층간의 자료 이동은 불가하다. 각각의 자료실은 단행본, 참고도서, 연속간행물 등의 모든 자료가 주제별로 비치되어 있어서 한 자료실 내에서 한 주제 분야의 모든 자료를 열람할 수가 있다. 또한 각 주제자료실의 담당 사서들이 주제별로 특화되어 담당주제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통합해서 실시함으로써 이용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연구조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등 보다 수준 높은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1) 중앙도서관

(1) 지하 1층

* 일반열람실
  제1열람실(356석)과 제2열람실(402석)이 설치되어 있으며, 매일 교대로 1실을 24시간 개방하고 있다.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앱'의 좌석배정프로그램 및 좌석배정기를 통하여 좌석을 배정받아서 이용할 수 있으며, 1회 배정시간은 4시간이고 계속 갱신가능하다.

(2) 1층

* 안내데스크(1층 로비)
  중앙도서관의 이용안내를 담당하며, 각 주제자료실의 자료를 반납할 수 있다.

* 디지털자료실(1층 동편)
  학술데이터베이스(PC 56대), 정보이용교육(PC 30대), 멀티미디어(PC 42대), 영상자료(DVD, Video, 위성방송), 편집/출력 등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인터넷 활용, 학술데이터베이스 이용, AV자료 등을 위한 여러 가지 전자매체 및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들이 도서관 활용 및 정보이용 교육을 위한 교육장도 완비하고 있다.

(3) 2층

* 인문/예술자료실(2층 서편)
  철학, 역사, 예체능 및 종교분야의 단행본, 참고도서, 연속간행물, 악보, 화집, 지도 등을 비치하고 있다. 8대의 검색용 PC가 있어서 도서관 자료검색, 인터넷 이용, 전자저널, 인터넷 DB 검색 등에 이용한다. 4개의 연구열람실이 있어서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개인연구 및 학습을 수행할 수가 있으며 프린터, 스캐너, 복사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필요 자료를 복사하거나 스캔하여 편집할 수 있다. 166석의 열람좌석이 있다.

* 어문학자료실(2층 동편)

어학과 문학 분야의 단행본, 참고도서, 연속간행물을 비치하고 있다. 8개의 연구열람실이 있으며, 8대의 검색용 PC, 프린터, 스캐너, 복사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필요 자료를 복사하거나 스캔하여 편집할 수 있다. 162석의 열람좌석이 있다.

* 연구열람실
장기간 도서관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조사활동을 하는 대학원생들을 위한 연구공간으로 2층의 인문예술자료실에 4개실, 어문학자료실에 8개실, 3층의 총류 학위논문실에 4개실, 사회과학자료실에 8개실 등 모두 24개실이 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14일에서 최장 2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4) 3층

* 총류/학위논문실(3층 서편)
총류(KDC 000단위) 자료와 석·박사 학위논문, 신문, 사고전서를 비치하고 있다. 석사학위논문은 실내열람만 할 수 있으며 대출할 수 없다.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는 상호대차를 통하며 입수·제공하고 있다. 4개의 연구열람실이 있으며, 7대의 검색용 PC, 프린터, 스캐너, 복사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필요 자료를 복사하거나 스캔하여 편집할 수 있다. 68석의 열람좌석이 있다.

* 사회과학자료실(3층 동편)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등 사회과학분야의 단행본, 참고도서, 연속간행물을 비치하고 있다. 8개의 연구열람실이 있으며, 8대의 검색용 PC, 프린터, 스캐너, 복사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필요 자료를 복사하거나 스캔하여 편집할 수 있다. 273석의 열람좌석이 있다.

(5) 4층

* 그룹학습실
그룹별 학습, 토론 및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3~10인이 이용 가능하다. 4층 4개실, 지하 1층 1개실을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앱'에서 신청한 후 이용 가능하다.

(6) 5층 ~ 11층

* 고문헌실(5층)
고서는 선조의 정신적 산물을 물리적 형태에 담은 것으로 저작의 역사성, 간행, 필사의 역사성, 수량의 제한성, 장정의 특이성, 자산으로서의 경제성, 학술연구의 원자료성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고서를 중앙도서관에서는 하나의 실로 운영하고 있으며, 본교 교원은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 복사가 가능하고, 그 밖의 이용자들은 도서관장의 허락을 얻어 열람할 수 있다. 그 외 귀중도서 및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Microfilm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6층에 고문헌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다.

* 개인문고
학술연구와 영남대학교의 발전을 바라는 뜻에서 국내의 저명학자나 장서가가 오랫동안 수집 보관하여 온 장서를 본교에 기증한 것으로 도서관에서는 그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문고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문고의 도서 중에는 국내외에 자랑할 만한 귀중한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보존상의 문제로 대출은 제한하고 있다.

2) 과학도서관(자연과학분야)

* 자연과학자료실(1층 101호)
  과학기술분야의 일반도서, 참고도서 등이 비치되어 있어 이용자가 직접 자료검색 및 열람이 가능하고 참고자료와 시사교양지, 일간신문을 제외한 일반 국내·외 도서는 관외대출이 가능하다.

* 연속간행물실(2층 207호)
  국내외에서 발간되는 과학기술분야의 각종 학술잡지, 교양잡지, 일반 논문집, 기타 기관지 등의 연속간행물을 비치하고 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난 것은 제본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실내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고 대출은 할 수 없다.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는 원문 복사신청이 가능하다.

* 전자정보실(2층 207호 연속간행물실 내)
  전자정보실은 학술DB, e-저널, e-book 등을 통한 학술정보 검색 및 인터넷강의(e-learning), 인터넷 정보검색이 가능한 PC(44대)와 스캐너,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DVD, 비디오자료 등을 시청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장치가 구비되어 있다. 전자정보실의 자료는 대출 후 자료실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관외대출은 불가하다.

* 일반열람실(2,3,4층)
  LINC+ I실, II실(355석, 2층), 제2열람실(306석, 3층), 제3열람실(505석, 4층), 제4열람실(419석, 3층), 노트북열람실(28석, 4층)이 설치되어 있으며, 시험기간 중에는 제4열람실을 24시간 개방하고 있다. 좌석배정은 중앙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서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앱'을 설치한 후 좌석을 배정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1회 배정시간은 4시간이고 계속 갱신가능하다.

* 그룹학습실(4층)
  그룹별 학습, 토론 및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3~8인이 이용 가능한 3개의 실이 있다.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앱'에서 신청한 후 이용 가능하다.

3) 법학도서관

법학 및 인권관련분야의 자료의 자료를 비치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학자료실, 정보검색실, 300여석의 일반열람실을 확보하고 있다.

4) 의학도서관(의료원 서관 1층)

주로 의학 분야의 단행본 및 연속간행물을 소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의학 Database인 MedlinePlus, Guideline, Emedicine, Merck 등을 구축하여 의학도서관 내에서 뿐만

아니라 Network을 통한 원격 검색도 가능하다. 컴퓨터자율학습실과 시청각학습실을 운용하고 있으며, 타 의학도서관과 상호대차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각 과별로 필요한 학술자료 등을 모아서 제공하는 과별 사이버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3. 도서의 대출 및 반납

1) 도서대출 방법

인문·사회과학 및 예·체능 분야 도서는 중앙도서관 2층과 3층에 있는 주제자료실에서 대출하고, 과학기술도서는 과학도서관의 자연과학자료실에서 대출할 수 있으며, 법학관련도서는 법학전문도서관 법학자료실에서 대출할 수 있다. 검색용 PC로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여 서가에서 직접 도서를 선택한 후 자동대출기를 이용하거나, 해당도서와 학생증 또는 스마트열람증을 대출창구에 제시하여 대출을 받는다.

2) 대출한도

* 대학생 : 10책 2주
* 대학원생 및 수료생 : 20책 1개월
* 특별회원(지역주민): 3책 2주
* 특별회원(휴학생): 5책 2주

※ AV자료는 10점까지 대출가능

3) 대출 도서 반납

대출 도서는 기한 내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경과 시에는 대출정지가 된다. 대출도서를 오손 분실할 때에는 원본과 동일한 도서로 반납하되, 동일한 도서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장이 인정하는 유사도서로 반납할 수 있다.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 20일 전까지 대출도서를 전부 반납하여야 한다(미 반납 시 졸업증서나 졸업증명서 등 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기타 관련사항은 도서관 규정에 따른다.

7. 예비군 전입신고

① 신청대상 : 전역 당해부터 8년차 해 전역자까지(제2국민역 및 민방위대상자는 제외)
② 신청기간
- 신입생 : 매학기 개강 초
- 복학생 : 매학기 복학신청기간

③ 신청방법 : 인터넷으로 신청
-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URP-병사관리-전입신고[세대주, 군번, 입대일, 전역일, 역종(예비역, 보충역)군별(육해공군), 계급, 주특기(1111)]

④ 신입생 중 영남대학교 예비군으로 이미 편성되어 있는 경우는 재신청 할 필요 없음.
⑤ 문의사항 : 예비군연대본부 ☎ 810-1841, 1842(종합강의동 동편)

8.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환경·소방 안전교육

① 교육대상 : 일반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신입생
② 교육일정 : 상반기(4월), 하반기(10월) 예정
상세일정은 추후 공고 후 해당 대학에 안내 공문 발송
③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
- 우리 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 규정” 제14조(안전교육·훈련)
④ 문의사항 :시설관리처 안전관리팀 ☎ 810-1391, 1393(본관뒤 학사민원실 2층)

Ⅴ. 대학원 학칙 및 세칙

1. 대학원 학칙

개정 2020. 1. 21 대학평의원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 영남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창학정신과 교육목적에 의하여 설치한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원의 종류) ① 우리 대학교에 설치하는 대학원은 그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0.10.17.>

1. 일반대학원 :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2. 전문대학원 : 전문직업분야 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3. 특수대학원 : 직업인 또는 일반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② 전문대학원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는 경영대학원, 환경보건대학원, 교육대학원, 행정대학원, 공학대학원, 문화예술디자인대학원, 스포츠과학대학원 및 박정희새마을대학원을 둔다.<개정 2000.10.17., 2002.11.12., 2003.9.23., 2003.10.14., 2007.10.29., 2008.4.14., 2011.10.7., 2012.8.31., 2014.7.9., 2019.1.24.>

제2조의2(전문대학원학칙)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학위과정, 정원,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학칙으로 정한다.<신설 2008.4.14., 개정 2019.1.24.>

제3조(학위과정) ① 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석사학위과정”이라 한다),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박사학위과정”이라 한다), 석사 및 박사과정을 통합한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이하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2.8.31.>

② 제1항에 있어서 2개 이상의 학과를 연계한 학과간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학·연·산 협동과정, 학사학위 과정과 석사학위 과정이 상호 연계된 학·석사연계과정을 둘 수 있다.<개정 2016.7.18.>

③ 삭제<2008.4.14.>

④ 특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둔다.<개정 2000.10.17.>

제4조(학과, 전공 및 정원) ①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1.8.30., 2003.9.23., 2003.10.14., 2004.1.13., 2004.3.9., 2004.6.22., 2004.9.14., 2005.1.11., 2005.6.14., 2005.10.25., 2006.2.7., 2006.9.26., 2007.10.29., 2008.10.8., 2009.2.9., 2009.10.7., 2010.1.6., 2010.10.28., 2010.12.29., 2011.10.7., 2012.8.31., 2013.1.25., 2013.7.4., 2013.10.7., 2013.10.31., 2013.12.11., 2014.2.6., 2014.7.9., 2014.9.26., 2014.11.19., 2014.12.29., 2015.2.12., 2015.5.15., 2015.8.20., 2015.10.28., 2015.11.25., 2016.7.18., 2017.1.13., 2017.7.26., 2019.1.24., 2019.6.4.,

2019.8.8., 2019.10.1.〉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원에 입학, 편입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1.10.7.〉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개정 2001.9.11., 2011.4.13.〉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4조의2(계약학과 설치·운영 등)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학과 또는 전공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8.1.30〉

② 계약학과의 명칭, 학생정원 및 학위명 등은 [별표 1-1]과 같다.〈신설 2008.1.30.,개정 2019.9.26.〉

③ 계약학과의 교육과정편성 및 이수, 이수학점, 운영경비, 수업료, 설치·운영기간, 입학자격, 수업연한, 설치·운영기간 만료전 폐지, 운영위원회 등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칙 특수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08.1.30.〉

제2장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제5조(입학시기) 대학원의 입학(이하 "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부터 4주 이내로 한다.〈개정 2000.10.17., 2004.2.10.〉

제6조(입학지원 자격 및 제한) ① 대학원에 입학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8.12.17.〉

1. 국내외 대학(원)에서 학사학위(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의 경우) 또는 석사학위(박사학위과정의 경우)를 취득한 자 및 동 취득 예정자. 〈개정 2000.10.17., 2002.11.12.〉
2. 법령에 의하여 제 1호의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우리 대학교에 재직하는 전임교원은 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입학할 때에는 재학기간동안 휴직하여야 한다. 단, 기초교육대학에 소속된 교육중점 외국인교원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휴직하지 않고 입학 및 재학할 수 있다. 〈개정 2001.9.11., 2014.2.6.〉

③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유아교육전공에 입학하려는 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격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1.2.20., 2006.2.7., 2007.5.17., 2008.12.17., 2015.5.15.〉

1. 삭제〈2015.5.15.〉
2. 특수교육전공 및 유아교육전공: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개정 2008.12.17.〉
3. 삭제〈2008.12.17.〉

④ 삭제〈2010.10.28.〉

제7조(입학전형) ①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전형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2.10.〉

②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서류전형과 면접고사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필답고사 또는 실기고사를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04.6.22.〉

제8조(입학지원 절차)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입학 전형료와 함께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각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2.10.〉

제9조(편입학) ① 총장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제외한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0.10.17.〉

②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2.10.〉

제10조(재입학) ① 총장은 제적 또는 자퇴한 자가 재입학 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제외한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에 의해 제적된 자는 소속학과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0.10.17., 2012.8.31.〉

② 〈삭제 2000.10.17〉

제10조의 2(외국인 학생) ① 제6조에 정한 입학지원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입학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04.2.10.〉

② 외국인 학생의 입학과 학점인정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04.2.10.〉

제3장 수업연한, 재학연한, 교육과정, 학점, 수료 및 전공변경

제11조(수업연한) ① 일반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각 2년,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은 2학기 범위 내에서, 석사과정 및 학·석사연계과정은 1학기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00.10.17., 2002.7.16., 2004.2.10., 2007.10.29., 2007.12.12., 2008.1.30., 2010.10.28., 2011.10.7., 2012.8.31., 2013.10.7.〉

② 특수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박정희새마을대학원은 1년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02.7.16., 개정 2011.10.7.,2014.7.9.,2019. 8.8.〉

1. 경영대학원, 환경보건대학원, 행정대학원, 공학대학원, 문화예술디자인대학원, 스포츠과학대학원 : 2년 6개월〈개정 2012.8.31., 2019.1.24.〉
2. 교육대학원 : 3년
3. 박정희새마을대학원 : 2년〈개정 2014.7.9.〉

③ 수업연한이라 함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단 등록기간을 말한다.〈개정 2011.10.7.〉

제12조(재학연한) ①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개정 2000.10.17., 2004.2.10., 2007.10.29., 2007.12.12., 2010.10.28., 2011.10.7., 2019.1.24.〉

② 삭제〈2019.1.24.〉

제13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의 이수는 학점 취득을 통해 이루어지며, 각 학위과정의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교과목학점, 연구학점 및 연구윤리학점으로 한다. 다만,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논문대체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논문대체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7., 2019.1.24.〉

② 각 학위과정의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의 내용, 이수구조 및 기타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2.10.〉

제14조(학점취득) ① 일반대학원 각 학위과정 학생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10.17., 2007.12.12., 2010.1.6.〉

1. 석사학위과정 : 교과목학점 24학점 이상, 연구학점 6학점, 연구윤리 1학점〈개정 2010.10.28., 2013.10.7.〉
2. 박사학위과정 : 교과목학점 36학점 이상, 연구학점 8학점, 연구윤리 1학점〈개정 2011.10.7., 2013.10.7.〉
3. 석·박사통합학위과정 : 교과목학점 54학점 이상, 연구학점 10학점, 연구윤리 1학점〈개정 2012.8.31., 2013.10.7.〉

② 삭제〈2007.10.29.〉

③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생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10.17., 2011.10.7., 2012.8.31., 2013.7.4.〉

1. 경영대학원, 환경보건대학원, 행정대학원, 문화예술디자인대학원, 스포츠과학대학원 : 교과목학점 24학점 이상, 연구학점 2학점〈개정 2016.7.18., 2019.1.24.〉
2. 교육대학원 : 교과목학점 30학점 이상, 연구학점 2학점. 다만, 학위청구논문대체학점 이수자는 교과목학점 34학점 이상〈개정 2018.1.18.〉
3. 박정희새마을대학원 : 교과목학점 27학점 이상, 연구학점 3학점〈개정 2014.7.9., 2016.8.24.〉
4. 공학대학원 : 교과목학점 24학점 이상, 연구학점 6학점. 다만, 학위청구논문 대체학점이수자는 교과목학점 30학점 이상〈개정 2016.7.18.〉

④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학생이 매 학기 취득하여야 할 교과목학점 및 연구학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0.10.17., 2004.2.10., 2011.10.7.〉

제15조(학점인정) ① 일반대학원 학위과정의 학생이 재학기간 중 필요에 따라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국내외 일반대학원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교과목학점 및 연구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0.10.17.〉

② 국내·외 대학원의 중퇴자 또는 수료자가 우리 대학교 대학원의 동일 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 대학원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과의 동일과목 또는 유사과목에 한하여 이미 취득한 교과목학점은 인정할 수 있으며, 편입학한 경우에 이미 취득한 연구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점을 인정받더라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개정 2000.10.17., 2011.10.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학점의 총계는 다음 각 호의 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10.7.〉

1. 석사학위과정 : 교과목학점 12학점, 연구학점 2학점(특수대학원은 1학점)
2. 박사학위과정 : 교과목학점 18학점, 연구학점 4학점
3. 석·박사통합학위과정 : 교과목학점 24학점, 연구학점 6학점

④ 우리 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서 수료학점을 초과 취득한 교과목 학점은 학과 주

임교수의 제청에 따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박사학위과정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석사학위과정 논문대체학위 취득요건에 해당하는 학점은 박사학위과정 취득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0.17., 2004.2.10., 2011.10.7., 2019.8.8.>

⑤ 동일학위과정에 재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이미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0.10.17.>

⑥ 우리 대학교 학부 교육과정 중 학·석사상호인정과목 또는 대학원 교과목을 취득하고 석사과정에 입학한 경우, 이미 취득한 학·석사상호인정과목과 대학원 교과목 중에 6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3.10.7.>

제16조(성적평가) ① 대학원 학업 성적의 등급,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7.9.>

등 급	점 수	평 점
A+	95 - 100	4.5
A	90 - 94	4.0
B+	85 - 89	3.5
B	80 - 84	3.0
C+	75 - 79	2.5
C	70 - 74	2.0
F	0 - 69	0
P	인정	Pass
NP	불인정	Non-Pass

② 대학원은 성적 등급 C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각 교과목의 당해 학기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신설 2000.10.17., 개정 2019.1.24.>

④ P/NP과목, 연구학점, 일반대학원 논문대체 학점, 수료 이후에 논문대체학위 취득을 위해 수료자 등록을 한 후 취득한 교과목 학점은 평점평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8.8.>

⑤ 교과목 담당교수는 당해 학기 성적을 평가한 후 시험지 등 성적평가근거자료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비전임교원은 시험지 등 성적평가근거자료를 학기성적정정기간 종료후 1주일 이내에 학과주임교수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학과주임교수는 위 자료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20.1.21.>

제17조(수료)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이 제19조에 규정한 등록학기 이상의 등록을 한 자로서 제14조에 규정한 학점을 취득하고, 취득한 교과목 성적이 평점평균 3.0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해당 학기말에 학위과정의 수료로 인정한다.<개정 2000.10.17., 2004.2.10., 2004.3.9., 2007.10.29., 2007.12.12., 2008.1.30., 2010.10.28., 2010.12.29., 2011.10.7.>

②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의 학생이 중도에 포기하고 퇴학하는 자가 석사학위과정 수료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석사학위과정 수료로 인정한다.<신설 2010.12.29, 개정 2011.10.7.>

제18조(전공의 변경과 전과)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각 학위과정별로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7.12.12., 2010.10.28.>

② 제 1항의 전공변경은 동일 학과내의 변경에 한하며, 이미 취득한 교과목학점은 변경한 전공의 교육과정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0.10.17.>

③ 대학원의 학과간 전과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등록, 휴학, 복학, 자원퇴학 및 제적

제19조(등록)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료에 필요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0.10.17., 2004.2.10., 2004.6.22., 2007.10.29., 2007.12.12., 2008.1.30., 2010.10.28., 2011.10.7.>

1. 일반대학원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 4학기 이상
2. 일반대학원 학·석사연계과정 : 3학기 이상
3. 일반대학원 석·박사통합학위과정 : 6학기 이상<개정 2012.8.31.>
4. 경영대학원, 환경보건대학원, 행정대학원, 공학대학원, 문화예술디자인대학원, 스포츠과학대학원 석사과정 : 5학기 이상<개정 2012.8.31., 2019.1.24.>
5.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 6학기 이상
6.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석사과정 : 4학기 이상<개정 2014.7.9.>

② 제1항의 등록을 마친 자가 수료하지 못하고 다시 등록 할 때에는 해당 학기의 취득예정학점이 2학점이하이면 해당학기 등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학점 내지 5학점이면 해당학기 등록금의 반액으로 등록할 수 있다.<개정 2007.12.12., 2010.10.28., 2011.10.7.>

③ 각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논문준비를 위한 연구생 등록 및 논문대체학위 취득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2.2.26., 2003.9.23., 2004.2.10., 2008.1.30., 2011.10.7., 2019.1.24.>

④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수료자 중 논문대체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수료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학기의 취득예정 학점이 2학점 이하이면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3학점 내지 5학점이면 해당 학기 등록금의 반액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단, 일반대학원의 수료자 등록을 한 자는 당해 학기에 수료자 등록을 연기 및 포기할 수 없다.<신설 2019.1.24.>

제20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을 수강할 수 없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0.10.17., 2004.6.22., 2019.1.24.>

②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장애, 국가고시합격에 의한 연수원 교육, 질병, 병역복무, 임신·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특별한 사유에 의한 휴학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0.28., 2018.2.28., 2019.1.24.>

③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기간 종료 이전에 휴학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 연장된 휴학기간은 일반휴학기간에 산입한다.<개정 2004.2.10., 2019.1.24.>

④ 등록을 마친 자가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개강 후 수업일수 4분의 1이내에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으며 복학학기 등록금이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납입하지 않는다.<개정 2002.2.26., 2004.2.10.>

⑤ 삭제<2001.2.20.>

⑥ 일반휴학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휴학신청서 제출일로부터 7

일 이내에 휴학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수업일수 4분의 1 이후는 휴학을 취소할 수 없다.<신설 2000.10.17., 개정 2004.2.10.>

제20조의2(군휴학) ① 군휴학자는 입영일 7일전에 입영통지서 사본과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반휴학 기간 중 군휴학자는 입영통지서 사본을 입영전 7일 이내에 제출하여 군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00.10.17, 개정 2004.2.10.>

② 등록 후 수업일수 4분의 3 이전 입영휴학하는 경우에는 전역 후 복학 시 당해학기 등록금을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00.10.17.>

제20조의3(장애 등에 의한 휴학) ① 장애, 국가고시합격에 의한 연수원 교육, 질병, 임신·출산, 육아 등을 위해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5.10.28., 개정 2018.2.28.>

② 제1항의 휴학기간은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계속하여 휴학을 원할 경우 휴학연장신청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5.10.28.>

제21조(복학) ①복학을 원하는 자는 매학기 등록 기간 내에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0.10.17., 2004.2.10.>

② 군복학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과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반드시 전역 후 1년 이내에(학기개시일 기준)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로 1년 이상 복무중인 자는 근무기관의 장의 취학승인서와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신설 2000.10.17, 개정 2004.2.10., 2010.10.28.>

제22조(자원퇴학) 자원퇴학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이유를 밝혀 학과(전공)주임교수 또는 학과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0.10.17., 2004.2.10.>

제23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제적한다.<개정 2004.6.22.>

1. 등록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2. 삭제<2019.1.24.>
3. 제20조 제2항에 정한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 한 자
4.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제5장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개정 2001.9.11., 2004.2.10.>

제24조(공개강좌) ① 대학원에는 교양 또는 연구상 필요한 학식 및 기술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 수료생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0.10.17.>

③ 공개강좌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0.10.17., 2004.2.10.>

제25조(연구과정) ①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대한 수강 및 연구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각 학위과정의 연구과정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다만, 연구과정생으로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2001.9.11., 2004.6.22.,

2010.10.28.〉

② 각 학위과정의 연구과정생으로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10.10.28.〉

1. 국내·외 대학(원)에서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취득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의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③ 연구실적이 양호한 연구과정생에게는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1.9.11., 2010.10.28.〉

④ 연구과정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2.2.26., 2004.2.10., 2010.10.28.〉

제26조 삭제〈2004.2.10.〉

제6장 학위수여

제27조(학위의 구분)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개정 2000.10.17.〉

1. 일반대학원 : 학술석사학위, 학술박사학위
2. 삭제〈2008.4.14.〉
3. 특수대학원 : 전문석사학위
4. 명예박사학위 : 학술학위에 준함

제28조(학위의 종별 및 학위기)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별표 2와 같고, 일반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기는 별지 제2-1호,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특수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기는 별지 제2-2호 서식과 같다.〈개정 2001.9.11., 2003.9.23., 2003.10.14., 2004.1.13., 2004.6.22., 2004.9.14., 2005.1.11., 2005.6.14., 2005.10.25., 2006.2.7., 2006.9.26., 2007.10.29., 2007.12.12., 2008.4.14., 2008.10.8., 2009.2.9., 2009.10.7., 2010.10.28., 2011.10.7., 2012.8.31., 2013.1.25., 2013.7.4., 2013.10.7., 2013.10.31., 2013.12.11., 2014.2.6., 2014.7.9., 2014.9.26., 2014.11.19., 2014.12.29., 2015.5.15., 2015.8.20., 2015.10.28., 2015.11.25., 2017.7.26., 2019.1.24., 2019.8.8., 2019.10.1., 2020.1.21.〉

제29조(자격시험의 종류) 학위 취득을 위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으로 한다. 다만, 특수대학원의 경우에는 「대학원학칙 특수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0.10.17., 2004.2.10., 2008.4.14., 2019.1.24.〉

제30조(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기) 제29조에서 정한 자격시험은 매 학기초에 실시하며, 응시 자격 등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2.10., 2019.1.24.〉

제31조(연구계획서) ① 학위과정의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논문 또는 논문대체학위 청구를 위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2.10., 2007.12.12., 2010.10.28., 2010.12.29., 2013.10.7., 2019.1.24.〉

② 삭제〈2010.12.29.〉

③ 대학원의 연구계획서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2.10.〉

제32조(예비논문발표 및 심사) ① 대학원의 예비논문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1.9.11., 2004.2.10.>

② 삭제<2001.9.11.>

제33조(논문제출 자격 및 시기)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29조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당해학기 수료예정자 및 수료자에 한한다. 다만, 특수대학원의 경우에는「대학원학칙 특수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1.9.11., 2004.2.10., 2008.4.14., 2011.10.7., 2013.10.7.>

②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자격 및 제출시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2.10.>

제34조(논문제출절차)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때에는 심사료와 함께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논문작성 용어 및 규격) ① 학위청구논문을 국문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1종의 외국어로 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하고, 학위청구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국문으로 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논문의 규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2.10.>

제36조(학위논문의 심사) ① 학위논문의 심사는 해당 전공의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이 하되,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3인 이상,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2.7.16., 2003.9.23.,2020.1.21.〉

② 제1항의 석사학위 논문 심사위원 중 1인, 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 중 2인까지는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외부 심사위원을 추가적으로 위촉할 경우(석사학위는 2인 이내, 박사학위는 3인이내)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1.21.>

③ 대학원장은 외국대학에 파견된 대학원학생의 제29조의 종합시험과 제32조 및 제36조의 학위논문심사를 파견받은 대학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0.1.21.>

④ 학위논문의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2.10., 2020.1.21.>

제37조(학위수여) ① 각 학위과정별로 제17조에 규정한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제29조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자에게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을 중도에 포기하고 퇴학한 자가 석사학위의 수여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0.12.29.>

①의2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학·석사연계과정 제외)의 경우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19.1.24.>

1. 제14조 제1항 제1호의 학점
2. 전공교과목 3학점
3. 논문대체교과목 3학점

② 삭제<2007.10.29.>

②의2 삭제<2010.10.28.>

③ 특수대학원의 경우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특수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1.6.5., 2004.6.22., 2011.8.25., 2019.1.24.>

1. 학위청구 작품 발표
2. 학위청구논문대체학점 3학점(또는 2학점) 취득 및 학위청구보고서 제출
3. 학위청구논문대체학점 6학점(또는 4학점) 취득

④ 학위청구논문 심사료, 학위종별 후드의 색깔, 기타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0.10.17., 2004.2.10.>

제37조의2(학위논문의 공표) 논문을 제출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수여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단, 이미 공표되었을 때 또는 총장이 공표함이 적당치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00.10.17.>

제37조의3(공동 또는 복수학위 수여) 국외 타 대학과의 학술교류 협정에 의하여 공동 또는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신설 2013.1.25.>

제38조(학위수여의 취소) 학위를 받은 자로서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2.2.26., 2011.10.7.>

제39조(학위명칭 표시) 학위를 받은 자가 그 학위의 명칭을 공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우리 대학 교명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10.7.>

제7장 명예박사학위

제40조(명예박사학위의 수여) 명예박사 학위는 학문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에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1.10.7.>

제41조(명예박사학위의 종별 및 학위기) ①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제27조 및 제28조의 박사학위 종별과 같으며, 수여 받는 자의 공헌 및 공적에 따라 박사학위 수여명을 정한다.<개정 2011.10.7.>

② 명예박사학위의 학위기는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과 같다.<신설 2011.10.7.>

제42조 삭제<2011.10.7.>

제43조(학위수여의 취소)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2.2.26.>

제8장 장학금 및 학생의 징계

제44조(장학금) 대학원의 학위과정생 및 연구과정생에게 성적우수장학금, 면학장학금, 조교장학금, 외국인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1.9.11., 2011.10.7.>

제45조(학생의 징계)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구분에 의하여 징계처분하며, 학생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6.7.18.>

1. 근신
2. 유기정학
3. 무기정학
4. 퇴학

제9장 직제, 교원, 대학원위원회<개정 2004.2.10.>

제46조(직제 및 교원) ① 대학원에는 원장을 두고, 부원장을 둘 수 있다.

② 대학원의 학과 또는 전공에는 교원을 둔다. 이 때 교원이라 함은 각 대학원 전임교원과 대학의 관련 학부, 학과 및 전문대학원의 전임교원을 말한다.<개정 2000.10.17., 2004.2.10., 2008.4.14., 2010.12.29.>

③ 삭제<2009.10.7.>

제47조(학과·전공주임교수 또는 학과장 및 지도교수) ① 각 대학원의 학과 또는 전공에는 제46조의 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1인의 학과·전공주임교수 또는 학과장을 두어,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학사를 담당하게 한다.<개정 2004.6.22.>

②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위과정에 있어서는 과정이수 제 2학기초까지, 석사과정 수업연한 단축자와 박사학위과정에 있어서는 제1학기 초에 각 대학원장은 학과(전공)주임교수 또는 학과장의 제청에 따라 지도교수를 임명한다.<개정 2000.10.17., 2003.6.10., 2004.6.22., 2007.12.12., 2010.10.28., 2013.10.7.>

제48조 삭제<2004.2.10.>

제49조(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개정 2000.10.17., 2004.2.10.>

②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산학연구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대학원장이 추천한 우리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의 위원을 포함하여 1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된다.<개정 2000.10.17., 2004.2.10., 2004.6.22., 2011.4.13., 2011.10.7., 2014.11.19.>

③ 대학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으로 인하여 신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0.10.17., 2011.10.7.>

④ 삭제<2000.10.17.>

⑤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개정 2000.10.17.>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0.10.17., 2004.2.10.>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2004.2.10.>

5. 삭제<2004.2.10.>
6.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00.10.17., 2004.2.10.>

⑥ 대학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1.10.7.>

⑦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5항에 규정된 사항의 일부를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단, 위임한 사항에 대한 해당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대학원학칙에 위배되는 경우 대학원위원회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5.8.20.>

제49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04.2.10., 개정 2004.6.22., 2011.10.7.>

② 특수대학원에는 각 특수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04.2.10., 개정 2004.6.22.>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04.2.10., 개정 2004.6.22., 2011.10.7.>

제50조 삭제<2011.10.7.>

제10장 보 칙

제51조(준용규정) 이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우리 대학교의 학칙을 준용한다.

제52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각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2.10.>

제53조(학칙의 개정) 이 대학원의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내 사전 공고 후, 대학원위원회, 기획위원회,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 공포한다.<신설 2004.2.10., 개정 2007.10.29.>

부 칙 (1999.11.1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입학에 관한 학칙의 규정은 2000학년도 전기 입학전형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영남대학교 대학원 학칙, 영남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칙,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영남대학교 환경대학원 학칙, 영남대학교 환경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영남대학교 환경대학원 교과과정 및 학과목 등록에 관한 규정,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칙,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칙,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영남대학교 산업기술대학원 학칙, 영남대학교 산업기술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영남대학교 산업기술대학원 교육과정 및 학과목 등록에 관한 규정, 영남대학교 조형대학원 학칙, 영남대학교 조형대학원 학위수여규정에 관한 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의 각 대학원 학칙 및 학위수여 규정중 다음 에 게기한 학칙 부칙 및 학위수여규정 부칙은 이 학칙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다른 규정의 제정) ① 이 학칙 시행과 당시 종전 학칙 및 학위수여규정에 의해 제정된 "영남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학위수여규정시행세칙은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칙 및 학위수여규정시행세칙은 경영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영남대학교 환경대학원 학칙 및 학위수여규정시행세칙은 환경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칙 및 학위수여규정시행세칙은 행정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영남대학교 조형대학원 학칙 및 학위수여규정시행세칙은 조형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명칭 변경하여 이 학칙에 의해 각각 제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대학원 제 규정의 내용중 "대학원"은 "일반대학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 5. 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0.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0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분리·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당시 박사학위과정 가정학과 복식학, 피복과학전공 재적생은 2001학년도 3월 1일부터 의류학과 복식학, 피복과학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재입학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전공 통합, 분리 및 명칭 변경이 있는 학과 또는 전공에 재입학할 경우 현 해당 학과 전공에 소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전문대학원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건축디자인대학원의 신입생 모집은 2001학년도부터 시행하며, 영남대학교 대학원 학칙 건축디자인대학원 시행세칙을 둔다.

제5조(산업기술대학원 명칭 변경 및 학과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 2조 제 2항 산업기술대학원 명칭 변경 및 제 4조 제 1항 산업대학원 산업안전학과 신설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산업기술대학원의 재적생은 산업대학원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 2.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1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대학원 전공 통합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에 입학한 재적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1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 학기에 복학 또는 수학하게 되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역사교육전공, 일반사회교육전공 재적생은 통합된 공통사회교육전공으로, 물리교육전공, 화학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재적생은 통합된 공통과학교육전공으로 각각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2. 가정교육전공으로 입학한 재적생은 이 개정 학칙에도 불구하고 가정교육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3. 기계교육전공 재적생은 기계·금속교육전공에, 전자교육전공 재적생은 전기·전자·통신교육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학위 종류 및 표기방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 일 이전에 학과(전공) 통합, 분리 또는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폐지된 학과(전공)에 재적중이거나 수료한 자가

졸업하는 경우, 그 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은 다음과 같다.
경영대학원 무역학과는 경영학석사(국제무역및통상, 국제금융및투자, 무역상무및국제경영, 보험및증권, 무역이론, 국제금융, 무역관리, 국제경영,무역법, 무역실무), 경제학석사(국제무역및통상, 국제금융및투자, 무역상무및국제경영, 보험및증권, 무역이론, 국제금융, 무역관리, 국제경영,무역법, 무역실무), 산업경제학과는 경제학석사(산업경제, 금융경제,공공경제),
환경대학원 환경과학과는 이학석사(생태학, 위생학, 환경화학, 환경생물학), 환경보전과학과는 이학석사(환경보전학, 환경자원학, 환경원예학), 환경계획학과는 도시계획학석사(도시계획학, 지역계획학, 도시및지역계획학, 환경관리학, 부동산관리학),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은 교육학석사(역사교육), 일반사회교육전공은 교육학석사(일반사회교육), 물리교육전공은 교육학석사(물리교육), 화학교육전공은 교육학석사(화학교육), 생물교육전공은 교육학석사(생물교육), 공업교육전공은 교육학석사(공업교육), 가정교육전공은 교육학석사(가정교육),
산업대학원 재료·금속공학과는 공학석사(금속공학).

부 칙 (2001. 5. 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1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6. 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1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대학원 학과 명칭변경 및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학칙 개정 당시 정책분석학과를 정책학과로 명칭변경하고 2001년 9월1일부터 시행하며, 정책분석학과의 재적생은 정책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학칙 개정과 동시에 계획학과는 폐지하고 재적생은 졸업할 때까지 계획학과에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 9.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1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폐지 및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개정과 동시에 학과간 협동과정 해양자원학과는 폐지하고 재적생은 졸업할 때까지 해양자원학과에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 경영대학원 서비스경영학과 신설은 2002학년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전문학위종류 및 표기방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특수대학원 전문분야에 대하여 폐지된 전문학위표시는 폐지당시의 전문분야 표시에 따른다.

부 칙 (2002. 2.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료자 등록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수료자 등록은 2001년 9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 7.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2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1.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당시 매체정보학과 재학생은 변경된 언론정보학과에 소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환경대학원 명칭 변경 및 학과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개정 당시 환경대학원의 재적생은 환경보건대학원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개정 당시 환경보건학과의 재적생은 보건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③ 이 학칙 개정 당시 환경보건학과의 보건미술심리치료 전공의 재적생은 보건미술치료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2003. 1. 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당시 축산학과 및 의류학과 재적생은 동물생명과학과 및 의류패션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3. 6.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9.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스포츠과학대학원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스포츠과학대학원 신입생 모집은 200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3조(학과 및 학위과정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개정에 의하여 신설된 학과 및 학위과정의 신입생 모집은 200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0.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3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대학원 전공 분리, 신설 및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에 입학한 행정학과, 자치행정학과 재적생은 제18조제1항의 전공변경 회수제한에 관계없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분리 및 신설된 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에 입학한 정책학과, 법무행정학과 재적생은 이 학칙 개정 전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4. 1.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과 및 전공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개정과 동시에 폐지된 학과 및 전공의 재적생은 졸업 할 때 까지 개정 전의 해당학과 및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학칙 개정 전의 경영대학원 국제통상학과 통상실무및국제물류전공은 무역창업및실무전공으로, 국제무역및통상전공은 중국통상전공으로, 국제경영및투자전공은 글로벌경영전공으로 명칭 변경되며, 변경되기 전 전공의 재적생은 명칭 변경된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전문학위 종류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에 환경보건대학원 환경관리학과 화훼장식학전공과 환경설계학과 풍수지리학전공에 재적 중이거나 수료한 자가 졸업하는 경우 개정된 별표 2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부 칙 (2004. 2.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3. 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은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4. 6.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은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과 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05년 3월 1일부터 아동학과(아동학전공)는 유아교육학과(유아교육 전공)로 명칭 변경되며, 종전의 재적생은 이 학칙 개정 전 학과 전공에 소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환경보건대학원 전공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의 환경관리학과 환경과학전공, 환경공학과 환경생태시스템전공, 환경설계학과 건축설계·건축및도시설계·조경설계·실내환경설계·건축및실내설계·환경조형설계전공, 보건학과 보건관리·환경학전공 재적생의 졸업 시 학위종별은 이 학칙 개정전 학과 전공으로 수료(졸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2004. 9.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보건대학원 영양관리학과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 보건학과 보건영양전공 재적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영양관리학과 영양관리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 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대학원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의 기술·가정교육전공으로 입학한 재적생은 이 개정 학칙에도 불구하고 기술·가정교육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 6.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일반대학원 정원 감축으로 인한 개정 사항은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환경보건대학원 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이 학칙 개정 전의 환경계획 및 정책전공 재적생은 이 개정 학칙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환경보건대학원 전문학위 종류의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보건미술치료학과 미술치료전공과 영양관리학과 영양관리전공에 재적중이거나 수료한 자가 졸업하는 경우 개정된 별표 2를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2005. 8.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아교육학과 수여 학위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개정 전에 재학중이거나 수료한 자가 졸업하는 경우 개정된 별표 2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부 칙 (2005.10.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과 및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에 입학한 재적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경영대학원 국제통상학과 무역창업및실무전공, 중국통상전공, 글로벌경영전공 재적생은 통합된 국제통상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2. 환경보건대학원 환경설계학과 실내건축전공 재적생은 환경설계학과 실내건축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3. 환경보건대학원 보건미술치료학과 재적생은 미술치료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단, 부칙 제1조(시행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 2월 졸업생은 “미술치료학과”로 졸업하는 것으로 한다.
4.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재적생은 입학 당시의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5. 조형대학원 한국화전공, 인테리어디자인전공 재적생은 입학 당시의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6. 2. 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항과 제28조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9.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일 이전 협동과정 생명공학과 재적생은 협동과정 생명공학과로 수료(졸업)한다. 다만, 2010학년도 이후 협동과정 생명공학과 재적생은 자연과학계열 생명공학과로 수료(졸업) 한다.

부 칙 (2007. 5.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0.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별표1의 일반대학원 가정학과, 산업대학원 섬유산업학과(섬유산업, 의류패션) 및 건축공학과(구조, 설비, 시공) 명칭변경은 2008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건축디자인대학원 폐원에 따른 경과조치) ① 건축디자인대학원은 2007학년도 후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으며, 2008년 2월 29일자로 폐원한다.

② 이 학칙 개정 전에 입학한 재적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개정 전 대학원 학칙 및 폐지 전 건축디자인대학원시행세칙에 의거 수료(졸업)한다.
2. 일반대학원으로 재입학 할 경우 일반대학원의 학점체계를 따르도록 한다.
3. 재적생 및 수료생에 대한 학위수여는 변경 전 학칙에 의해 학위를 수여한다.

③ 대학원학칙 제52조(시행세칙)에 의거 건축디자인대학원 폐원으로 인하여 “영남대학교 대학원 학칙건축디자인대학원시행세칙”은 2008년 2월 29일자로 폐지한다.

제3조(일반대학원 건축공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당시 건축공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에 소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경영대학원 학과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전 국제통상학과 재적생은 졸업시까지 국제통상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행정대학원 학과 및 전공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 정치학과 재적생은 졸업시까지 정치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자치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재적생은 개정학칙 시행과 동시에 사회복지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산업대학원 학과 명칭변경, 전공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전 산업대학원 섬유산업학과(섬유산업, 의류패션) 재적생은 패션산업학과(패션산업), 건축공학과(구조, 설비, 시공) 재적생은 건축공학과(건축공학)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일반대학원 의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대한 경과조치) 의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은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12.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디자인대학원 폐원에 따른 경과조치) ① 건축디자인대학원 제적자 중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건축학과 “건축학전공(2년과정, 3년과정)”과 “건축이론 및역사전공”에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일반대학원으로 재입학 할 경우 일반대학원의 학점체계를 따르도록 한다. 다만, 건축디자인대학원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는 일반대학원 학칙 제15조(학점인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학과 “건축학전공”과 “건축이론및역사전공” 학점체계에 따라 취득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재적생 및 수료생에 대한 학위수여는 변경 전 학칙에 의해 학위를 수여한다.

제3조(건축학과 건축학전공 유지에 관한 조치) 건축학과 건축학전공 석사학위과정 3년과정은 신입생 모집 없이 2011년 2월 28일까지 두며, 2년과정은 신입생수가 3년 연속 9명 미만일 경우 익년도에 자동 폐지한다.

부 칙 (2008. 1.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는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4.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 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칭 변경, 통합 및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전 재적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지역개발학과는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로 명칭변경하고, 개정전 재적생은 개정전 학칙을 적용한다.
2. 축산경영학과는 식품자원경제학과로 명칭변경하고 경영학석사학위는 폐지하여 경제학석사학위로 단일화하되, 2008학년도 이전 입학한 재적생에 대해서는 경영학석사로 하고, 2008학년도부터 입학한 재적생에 대해서는 개정된 학칙을 적용한다.
3. 교과교육학과는 국어교육학과로 명칭변경하고, 2008학년도 졸업생은 개정전 학칙을 적용하며, 이후 졸업생은 개정된 학칙을 적용한다.
4. 농학과는 폐과하고, 수료자는 개정전 학칙을 적용한다.
5. 금속공학과와 무기재료공학과를 신소재공학과로 통합하고, 2008학년도 졸업생은 개정 전 학칙을 적용하며, 이후 졸업하는 재적생은 개정된 학칙을 적용한다.
6. 동양화과는 한국회화과로, 서양화과는 회화과로 명칭변경하고, 개정 전 재적생은 개정된 학칙을 적용한다.
7. 환경보건대학원 환경관리학과 지리정보시스템전공과 환경설계학과 도시 및 조경설계전공은 폐지하고, 환경공학과 수질공학전공과 대기 및 폐기물공학전공은 환경공학전공으로 통합하며, 개정전 재적생은 개정전 학칙을 적용한다.
8. 조형대학원 미술학과 서양화전공은 회화전공으로 사진예술전공은 사진전공으로 명칭 변경하고, 2008학년도 졸업생은 개정 전 학칙을 적용하고, 이후 졸업하는 재적생은 개정된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2008.12.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2. 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대학원 학과 폐과 및 전공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에 따라 폐지된 법무행정학과 재적생은 개정 전 해당학과 및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심사를 거쳐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

부 칙 (2009.10. 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칭 변경 및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 재적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응용미생물학과는 미생물생명공학과로 명칭변경하고, 개정 전 재적생은 개정된 학칙을 적용한다.
2. 동물생명과학과는 폐지하고 수료자는 개정 전 학칙을 적용한다.
3. 토목공학과는 건설시스템공학과로 명칭변경하고 개정 전 재적생은 개정된 학칙을 적용한다.
4. 환경보건대학원 환경관리학과에 환경계획전공을 폐지하고, 개정 전 재적생은 개정 전 학칙을 적용한다.
5. 산업대학원 패션산업학과는 폐지하고, 개정 전 재적생은 개정 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2010. 1. 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에 입학한 재적생은 개정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2010.10.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별지 제3호는 2010학년도 전기 졸업생부터 적용하고, 제4호는 2009학년도 후기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건축학과 석사과정 건축학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 건축학과 석사과정 건축학전공 재적생은 개정 전 학칙을 적용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개정전 학칙 제1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 전공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3조(학과변경, 분리,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이전 재적생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생물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생명과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2. 식품가공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식품과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3. 응용화학공학과는 재적생은 변경된 화학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4. 산업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산업인터렉션디자인학과에, 생활제품디자인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생활제품디자인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5. 학과간협동과정 나노시스템공학과 멀티미디어통신공학과, 디스플레이공학과, 인지과학과 등 폐지학과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각 해당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2010.12.29.)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의 입학정원 및 설치학과는 이 개정학칙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한다.

부 칙 (2011. 4.13.)

제1조(직제개정에 따른 직권수정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8.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0. 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이전에 편입학한 학생의 연구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은 이 개정학칙에 따른다.

제3조(학과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일 이전 섬유공학과 재적생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변경된 유기신소재공학과 또는 융합섬유공학과에 재적하거나, 졸업시까지 변경전 섬유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2011.11.23.)

제1조(시행일) 2011년 10월 7일자 개정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원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이 학칙 개정 당시 산업대학원 재적생은 변경된 공학대학원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2012. 8.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예술디자인대학원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 당시 조형대학원 재적생은 문화예술디자인대학원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석·박사통합학위과정 수업연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은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 1.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7. 4.)

제1조(시행시기)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박정희정책새마을대학원 학과명칭 변경 및 학위명 신설, 수료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의 재적생은 개정된 학칙을 적용한다. 다만 제14조 제3항 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문화예술대학원 미술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의 재적생은 졸업시까지 미술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2013.10. 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1조 및 제33조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계획서와 및 논문제출자격 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의 재적생 및 수료생은 개정된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2013.10.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대학원 조경학과 계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일반대학원 조경학과의 재적생 및 수료생은 개정된 학칙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대학원 협동과정 동아시아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일반대학원 협동과정 동아시아학과의 재적생은 개정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2014. 7. 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와 제28조 규정의 박정희정책새마을대학원 새마을및국제개발학과 명칭변경과 제2조, 제11조, 제14조, 제19조의 규정은 2014년 7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는 2014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원 및 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의 재적생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시각영상디자인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시각디자인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2. 박정희정책새마을대학원 새마을및국제개발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새마을국제개발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2014. 9.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간협동과정 로봇공학과, 수학교육응용학과, LED융합공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의 로봇공학과, 수학교육응용학과, LED융합공학과 재적생은 졸업시까지 해당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2015. 2.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5.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와 제6조의 교육대학원 전공 폐지는 201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8.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9조제7항의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과 신설, 명칭변경, 통합, 분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의 재적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중어중문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중국언어문화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2. 역사학과로 통합된 국사학과 및 사학과의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통합전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3. 생명공학과 분자유전생명공학 전공 재적생은 분리된 생명공학과, 생명공학과 동물및의학생명공학전공 재적생은 분리된 의생명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4. 한국회화과 및 회화과 회화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회화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5. 회화과 사진과뉴미디어전공 및 조소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트랜스아트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6. 에너지융합공학과의 수송기기LED-IT융합전공 재적생은 분리된 자동차조명융합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7. 폐지된 환경보건대학원 환경관리학과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환경관리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2015.10.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1.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7.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14조 제3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공학대학원 학점취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에 입학한 재적생에 대해서는 개정 전 학칙을 적용한다.

제3조(공학대학원 학과 및 전공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에 입학한 재적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컴퓨터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2. 산업안전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산업안전소방방재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2016. 8.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박정희새마을대학원 학점취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에 입학한 재적생에게는 개정 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2017. 1.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7.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동아시아문화학과 석박사통합과정은 2018년 2월 28일자로 폐지한다.

제2조(학과간 협동과정 응용전자학과, 스마트산업안전학과, 엔지니어링사이언스학과, 유럽지역문화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의 응용전자학과, 스마트산업안전학과, 엔지니어링사이언스학과, 유럽지역문화학과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해당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2018. 1.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대학원 학점취득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논문대체학점에 관한 개정 학칙은 2020학년도 2학기 교육대학원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개정 2020.1.21.>

부 칙 (2018. 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에 입학한 융합섬유공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파이버시스템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임상약학대학원 폐원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개정 전에 입학한 임상약학대학원 재적생과 수료자는 환경보건대학원 보건학과로 편입할 수 있으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

② 임상약학대학원 제적생이 재입학을 희망할 경우, 환경보건대학원 보건학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

제4조(일반대학원 논문대체학위 제도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중 논문대체학위 제도에 관한 규정은 이 학칙 개정 전에 수료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 (2019. 6. 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8. 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2항, 제15조 제4항 및 제16조 제4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간 협동과정 생명의과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의 생명의과학과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해당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2019. 9.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0. 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의 유기신소재공학과 재적생은 화학공학과 고분자바이오소재공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2020. 1.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위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중 기술혁신·기업가정신학과 학위명 변경에 관한 규정은 이 개정 학칙 시행 전에 재적 및 수료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 학 칙 부 칙

대학원

부 칙 (1989. 5.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당시 공학계 박용기계공학과 재학생은 정밀기계공학과에, 예.체능계 음악학과 작곡전공 재학생은 작곡과에, 음악학과 국악전공 재학생은 국악과에, 회화과 동양화전공 재학생은 동양화과에, 회화과 서양화전공 재학생은 서양화과에, 농축산계 지역개발학과 재학생은 법정계 지역개발학과에 재학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1993.10. 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한다. 단, 제2장의 입학에 관한 이 개정 학칙의 규정은 1994학년도 전기 입학전형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에 석사학위과정에서 2개 학기 이상을 이미 이수한 자의 수료에 필요한 연구학점은 이 개정 학칙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학점으로 하며 박사학위과정에서 1, 2 또는 3개 학기를 이미 이수한 자의 수료에 필요한 연구학점은 각각 6, 4 또는 2학점으로 한다.

부 칙 (1995. 7.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통합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99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기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재적생은 통합된 기계공학과에, 임학과 재적생은 산림자원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3.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개정 당시의 전산공학과 재적생은 컴퓨터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화학공학과, 공업화학과는 화학공학 및 공업화학과로 학과통합 되었으며 1998학년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 축산경영학과가 자연과학계열에서 인문사회계열로 계열 변경되므로 이 학칙 개정 당시의 축산경영학과 재적생은 인문사회계열로 소속된다.

부 칙 (1999. 2. 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분리·신설로 인한 경과조치) ① 이 학칙 개정 당시 석사학위과정 전자공학과 정보통신전공 재적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전공 또는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평면디자인학과가 시각영상디자인학과로, 입체디자인학과가 산업디자인학과로 명칭 변경되었으며 1999학년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 5.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으로 인한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당시 화학공학과 및 공업화학과 재적생은 응용화학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99.10.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분리·신설로 인한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당시 박사학위과정 행정학과 지역개발전공 및 전자공학과 정보통신전공 재적생은 2000년 3월 1일부터 지역개발학과, 정보통신공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전자공학과 전자공학전공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보통신공학과에 소속할 수 있다.

이하 경영대학원 부칙

부 칙 (1999. 2. 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위논문 대체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경영대학원 학칙 제17조 ③항은 1999년 3월 1일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제3조(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변경된 학과 명칭은 1999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기존 재학생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국제통상학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이하 환경대학원 부칙

부 칙 (1989. 5.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989년 3월 1일 이전 입학자는 학칙 제15조(학업성적) 이외는 개정전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1999. 2. 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전에 입학한 환경계획학과, 환경보전과학과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환경계획학과, 환경보전과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교육대학원 부칙

부 칙 (1999. 11. 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분리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 공업교육전공에 입학한 학생은 이 개정 학칙에도 불구하고 공업교육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전공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당시 상업교육전공 재적생은 경영정보전공에, 국민윤리교육전공 재적생은 윤리교육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행정대학원 부칙

부 칙 (1990.11. 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개정당시 경영대학원 계획학과 재학(재적)생은 행정대학원 계획학과에 재학(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 학칙 개정당시 경영대학원 계획학과를 수료하고 학위를 미취득한 자는 행정대학원 학위수여 규정에 준한다.

이하 조형대학원 부칙

부 칙 (1999. 2. 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개정 전에 미술학과의 판화전공, 사진예술전공과 디자인학과의 제품디자인전공, 가구디자인전공, 운송기기디자인전공, 환경디자인전공, 세라믹디자인전공, 재적생 및 이 학칙 시행학기(1999년 3월 1일)입학예정자(1999학년도 전기 입학 전형합격자)는 입학당시의 학과, 전공으로 수료(졸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1항의 학과 전공의 재적생 및 1999학년도 전기 입학예정자 중에서, 변경 학칙시행일 이후에 원학과내의 타 전공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변경코자하는 전공주임교수경유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1999. 9.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9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변경 전에 미술학과의 예술행정전공 재적생은 입학당시의 학과·전공으로 수료(졸업)함을 원칙으로 하며, 미술학 석사학위를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학 위 수 여 규 정 부 칙

대학원

부 칙 (1972. 7. 1.)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규정은 197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972년 3월 1일 이후 본 개정 규정 시행 전에 대학원위원회에서 시행한 시험은 본 규정에 의거한 시험으로 본다.

②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8조의 규정의 1975년 2월말까지 효력을 갖는다.

부 칙 (1976. 7. 1.)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규정은 197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 규정은 197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 197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 및 1976년 7월 1일 이전에 수료한 학생은 제21조 제1항에 불구하고 박사학위 논문 제출기간을 수료일로부터 7년까지로 한다.

부 칙 (1984. 2.20.)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칙 제5조에 의하여 1984년 2월 이전에 입학하여 이미 전 과정을 수료한 학생으로서 재학 중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자는 학위논문 제출에 필요한 제 시험을 통과한 경우 소정의 논문 제출시기 이내에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부 칙 (1993.10.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한다.

제2조(연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본 개정 규정의 시행일 전에 구 규정에 따라 논문중간 발표 시 제출한 연구계획서는 본 개정 규정에 따른 연구계획서로 이를 인정한다.

제3조(논문제출 시한에 관한 경과조치) 1989년 8월 이전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본 개정규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단, 의무 군복무 및 시한연장에 관한 단서규정은 이들에게도 적용된다.

부 칙 (1998. 2.17.)

제1조(시행) 이 변경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논문제출 시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전조의 시행일 전에 수료한 자에게도 적용된다.

행정대학원

부 칙 (1998. 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논문제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학위수여규정 제4조에 의거, 1998년도 2월 수료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대학원 학위과정별 학과, 전공 및 입학정원표<개정** 2013.10.7., 2013.10.31., 2013.12.11., 2014.2.6., 2014.7.9., 2014.9.26., 2014.11.19., 2014.12.29., 2015.2.12., 2015.5.15., 2015.8.20., 2015.10.28., 2015.11.25., 2016.7.18., 2017.1.13., 2017.7.26., 2019.1.24., 2019.6.4., 2019.8.8., 2019.10.1.>>

1. 일반대학원 학위과정별 입학정원 및 학과 편성표

가. 입학정원표

구 분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일반학과	568명	266명
학과간 협동과정		
학·연·산 협동과정		

※ 석·박사통합학위과정 입학정원은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으로 한다.

나. 학과편성표

계 열	석사학위과정학과	박사학위과정학과	석·박사통합학위과정학과
인문사회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과	-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중국언어문화학과	중국언어문화학과	중국언어문화학과
	일어일문학과	일어일문학과	-
	불어불문학과	-	-
	독어독문학과	-	-
	한문학과	한문학과	한문학과
	철학과	철학과	철학과
	역사학과	역사학과	역사학과
	문화인류학과	문화인류학과	-
	미학미술사학과	미학미술사학과	미학미술사학과
	교육학과	교육학과	교육학과
	공법학과	공법학과	공법학과
	사법학과	사법학과	사법학과
	행정학과	행정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학과
	지역및복지행정학과	지역및복지행정학과	지역및복지행정학과
	경제학과	경제학과	-
	경영학과	경영학과	-
	회계세무학과	회계세무학과	-
	무역학과	무역학과	-
	식품자원경제학과	식품자원경제학과	-
	심리학과	심리학과	심리학과
	사회학과	사회학과	-

계 열	석사학위과정학과	박사학위과정학과	석·박사통합학위과정학과
인문사회	유아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언론정보학과	언론정보학과	언론정보학과
	국어교육학과	국어교육학과	국어교육학과
자연과학	수학과	수학과	수학과
	통계학과	통계학과	통계학과
	물리학과	물리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화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생명과학과	생명과학과
	생화학과	생화학과	생화학과
	미생물생명공학과	미생물생명공학과	-
	산림자원학과	산림자원학과	-
	원예학과	원예학과	원예학과
	식품과학과	식품과학과	식품과학과
	가족주거학과	가족주거학과	가족주거학과
	의류패션학과	의류패션학과	의류패션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약학과	약학과	약학과
	생명공학과	생명공학과	생명공학과
	-	수학교육과	-
	의생명공학과	의생명공학과	의생명공학과
공학	건설시스템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건축학과	건축학과	건축학과
	도시공학과	도시공학과	도시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전기공학과	전기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자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화학공학과	화학공학과	화학공학과
	파이버시스템공학과	파이버시스템공학과	파이버시스템공학과
	환경공학과	환경공학과	환경공학과
	자동차기계공학과	-	-
	조경학과	조경학과	조경학과
예·체능	작곡과	-	-
	성악과	-	-
	기악과	-	-
	국악과	-	-

계열		석사학위과정학과	박사학위과정학과	석·박사통합학위과정학과
예·체능		회화과	-	-
		시각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산업인터랙션디자인학과	-	-
		생활제품디자인학과	-	-
		트랜스아트과	-	-
		체육학과	체육학과	-
의학		의학과	의학과	의학과
학과간 협동과정	인문사회	한국학과	한국학과	-
	공학	의공학과	의공학과	의공학과
	자연	-	보건학과	-
	인문사회	-	미술치료학과	-
	인문사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
	예·체능	-	미술디자인학과	-
	예·체능	-	음악학과	-
	인문사회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글로벌비즈니스학과	-
	인문사회	한국여성리더십학과	-	-
	인문사회	독서작문학과	독서작문학과	독서작문학과
	공학	에너지융합공학과	에너지융합공학과	에너지융합공학과
	인문사회	디지털융합비즈니스학과	디지털융합비즈니스학과	디지털융합비즈니스학과
	예·체능	무용공연예술학과	-	-
	인문사회	새마을국제개발학과	새마을국제개발학과	새마을국제개발학과
	인문사회	동아시아문화학과	동아시아문화학과	-
	공학	자동차조명융합공학과	자동차조명융합공학과	자동차조명융합공학과
	인문사회	번역학과	번역학과	번역학과
	공학	첨단뿌리산업공학과	첨단뿌리산업공학과	첨단뿌리산업공학과
	인문사회	기술혁신·기업가정신학과	기술혁신·기업가정신학과	기술혁신·기업가정신학과
학연산 협동과정		포항산업과학연구원(1명)	포항산업과학연구원(1명)	
		한국기계연구원(1명)	한국기계연구원(1명)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1명)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1명)	
		-	한국전기연구원(1명)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1명)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1명)	
		한국식품연구원(1명)	-	
		식품의약품안전처(1명)	-	
		DYETEC연구원(1명)	DYETEC연구원(1명)	
		농촌진흥청(1명)	농촌진흥청(1명)	
		-	국립산림과학원(1명)	
		한국로봇융합연구원(2명)	한국로봇융합연구원(2명)	

2.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학과, 전공 및 입학정원표

캠퍼스	대학원	학과	입학정원
경산	공학대학원	기계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도시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산업안전소방방재학과	45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상담심리전공, 특수교육전공, 유아교육전공, 국어교육전공, 영어교육전공, 수학교육전공, 체육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 음악교육전공	120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공공정책리더십학과, 지속가능발전학과	20
대구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88
	환경보건대학원	환경공학과, 환경설계학과, 보건학과, 미술치료학과, 영양관리학과, 환경생태학과	80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자치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지역개발학과, 군사학과	65
	문화예술디자인대학원	디자인학과, 예술행정학과	25
	스포츠과학대학원	스포츠학과	21
	합계		464

[**별표** 1-1] **특수대학원 계약학과의 명칭, 입학정원 및 학위명〈개정** 2019.9.26.〉

대학원명	명 칭	정원(명)	학 위 명
경영대학원	글로벌MBA 전공	30명	경영학 석사

[**별표** 2] **대학원 학위과정별 학과, 전공별 학위의 종류<개정** 2013.10.7., 2013.10.31., 2013.12.11., 2014.2.6., 2014.7.9., 2014.9.26., 2014.11.19., 2014.12.29., 2015.5.15., 2015.8.20., 2015.10.28., 2015.11.25., 2016.7.18., 2017.7.26., 2019.8.8., 2019.10.1., 2020.1.21.>

1. 일반대학원 학위과정별, 학과별 학위명

계 열	학 과	석사학위명	박사학위명
인문사회	국어국문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영어영문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중국언어문화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일어일문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불어불문학과	문학석사	-
	독어독문학과	문학석사	-
	한문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철학과	문학석사	철학박사
	역사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문화인류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미학미술사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교육학박사
	공법학과	법학석사	법학박사
	사법학과	법학석사	법학박사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행정학박사
	정치외교학과	정치학석사	정치학박사
	지역및복지행정학과	행정학석사	행정학박사
	경제학과	경제학석사	경제학박사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회계세무학과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무역학과	경제학석사 경영학석사	경제학박사 경영학박사
	식품자원경제학과	경제학석사	경제학박사
	심리학과	심리학석사 임상심리학석사	심리학박사 임상심리학박사
	사회학과	사회학석사	사회학박사
	유아교육학과	교육학석사	교육학박사
	언론정보학과	언론정보학석사	언론정보학박사
	국어교육학과	교육학석사	교육학박사
자연과학	수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통계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물리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계 열	학 과	석사학위명	박사학위명
자연과학	화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생명과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생화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미생물생명공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산림자원학과	농학석사 이학석사	농학박사 이학박사
	원예학과	농학석사	농학박사
	식품과학과	식품학석사	식품학박사
	가족주거학과	생활과학석사	생활과학박사
	의류패션학과	의류학석사	의류학박사
	식품영양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약학과	약학석사	약학박사
	생명공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수학교육과	-	교육학박사
	의생명공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공 학	건설시스템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건축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도시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기계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신소재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전기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전자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정보통신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화학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파이버시스템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환경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자동차기계공학과	공학석사	-
	조경학과	조경학석사	조경학박사
예·체능	작곡과	음악학석사	-
	성악과	음악학석사	-
	기악과	음악학석사	-
	국악과	음악학석사	-
	회화과	미술학석사	-
	시각디자인학과	디자인학석사	디자인학박사

계 열	학 과	석사학위명	박사학위명
예·체능	산업인터랙션디자인학과	디자인학석사	-
	생활제품디자인학과	디자인학석사	-
	트랜스아트과	미술학석사	-
	체육학과	체육학석사	이학박사
의학	의학과	의학석사 이학석사	의학박사 이학박사
학과간 협동과정	한국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의공학과	의공학석사	의공학박사
	보건학과	-	보건학박사
	미술치료학과	-	미술치료학박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교육학석사	교육학박사
	미술디자인학과	-	미술학박사 디자인학박사
	음악학과	-	음악학박사 음악박사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한국여성리더십학과	문학석사	-
	독서작문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에너지융합공학과	공학석사 산업경영공학석사	공학박사 산업경영공학박사
	디지털융합비즈니스학과	디지털융합비즈니스학석사	디지털융합비즈니스학박사
	무용공연예술학과	무용공연예술학석사	-
	새마을국제개발학과	행정학석사 국제개발학석사	행정학박사 국제개발학박사
	동아시아문화학과	동아시아학석사	동아시아학박사
	자동차조명융합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번역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첨단뿌리산업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기술혁신·기업가정신학과	기술혁신·기업가정신석사	기술혁신·기업가정신박사

2.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학과, 전공별 학위명

대학원	학위명	학과 또는 전공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	경영학과
환경보건대학원	이학석사	환경생태학과
	풍수지리학석사	환경설계학과
	공학석사	환경공학과
	보건학석사	보건학과
	미술치료학석사	미술치료학과
	영양관리학석사	영양관리학과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교육행정전공, 상담심리전공, 특수교육전공, 유아교육전공, 국어교육전공, 영어교육전공, 수학교육전공, 체육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 음악교육전공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행정학과, 자치행정학과, 지역개발학과
	사회복지학석사	사회복지학과
	군사학석사	군사학과
공학대학원	공학석사	기계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도시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산업안전소방방재학과
문화예술디자인대학원	디자인학석사	디자인학과
	예술행정학석사	예술행정학과
스포츠과학대학원	체육학석사	스포츠학과
박정희새마을대학원	행정학석사 또는 새마을학석사 또는 국제개발학석사 또는 정책학석사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경제학석사 또는 개발경제학석사 또는 정책학석사	공공정책리더십학과
	농학석사 또는 이학석사 또는 정책학석사 또는 행정학석사	지속가능발전학과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증 서

성 명 ○ ○ ○

0000년 00월 00일생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24조에 의한 공개강좌 ○○○○○ 과정의 전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영남대학교 ○ ○ 대학원장 (학위) ○ ○ ○ 직인

위의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영남대학교 총 장 (학위) ○ ○ ○ 직인

[별지 제1-1호 서식]

제 호

연 구 실 적 증 명 서

성 명 ○ ○ ○
0000년 00월 00일생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 ○ ○ 대학원 석(박)사 학위 과정에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영남대학교 ○ ○ 대학원장 (학위) ○ ○ ○ 직인

[별지 제1-2호 서식]

제 호

연 구 실 적 증 명 서

성 명 ○ ○ ○
0000년 00월 00일생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 ○○ 대학원에서 학칙 제25조에 의하여 ○○ 학을 년간(년 월 - 년 월)연구하였음으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영남대학교 ○ ○ 대학원장 (학위) ○ ○ ○ 직인

[별지 제2-1호 서식]<개정 2019.1.24.>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 ○ ○

0000년 00월 00일생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 대학원 과(전공)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에 합격하여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기에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영남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 ○ ○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 ○ 학 석사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영 남 대 학 교 총 장 (학위) ○ ○ ○ 직인

학위등록 번호 : 영남대 ○○○○ (석) ○○○

[별지 제2-2호 서식]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 ○ ○

0000년 00월 00일생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 ○ ○ 대학원 과(혹은 전공)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 ○ ○ ○ 에 합격하여
○ ○ 학 석사(전공)의 자격을 갖추었기에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영남대학교 ○ ○ 대학원장 (학위) ○ ○ ○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 ○ 학 석사(전공)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영 남 대 학 교 총 장 (학위) ○ ○ ○ 직인

학위등록 번호 : 영남대 ○ ○ (석)

[별지 제3호 서식]

박 제 호

학 위 기

성 명 ○ ○ ○

0000년 00월 00일생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 대학원 과(전공)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 ○ 학 박사의 자격을 갖추었기에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영남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 ○ ○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 ○ 학 박사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영 남 대 학 교 총 장 (학위) ○ ○ ○ 직인

학위등록 번호 : 영남대 ○ ○ ○ ○ (박) ○ ○ ○

[별지 제4호 서식]

Yeungnam Universit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Graduate Faculty
has conferred on

(영문성명)

the degree of

(영문학위명)

in (영문전공명)

with all the rights, privileges, honors and responsibilities thereto appertaining,
and as evidence thereof has granted this diploma
on (학위기 수여일)

Dean of the Graduate School

President of the University

[별지 제5호 서식]

명박 제 호

학 위 기

성 명 ○ ○ ○
0000년 00월 00일생

위 사람은 ○○○○○○○○○○○○○○○ 기에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 ○ ○ 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하고자 이에 추천함.

년 월 일

영남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 ○ ○ 직인

위의 추천에 의하여 명예 ○ ○ 학 박사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영 남 대 학 교 총 장 (학위) ○ ○ ○ 직인

학위등록 번호 : 영남대 ○ ○ ○ ○ (명박) ○ ○

[별지 제6호 서식]

Yeungnam University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Graduate Council
has conferred on

(영문 성명)

the degree of

Honorary Doctor of Philosophy

in (영문전공명)

with all the rights and privileges thereto appertaining

Given at the Graduate School, Yeungnam University,
this twenty-second day of ○○, two thousand and ○○.

Dean of the Graduate School

President of the University

2.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개정 2020. 1. 7. 기획위원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영남대학교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이하 “이 세칙”이라 한다)은 영남대학교 대학원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0.6., 2011.10.14.>

제2장 입 학

제2조(입학 및 편입학 지원자격) 학칙 제6조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한 자는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1.8.30., 2007.10.5., 2010.10.14.>

제2조의2(배정기준) 학칙 제4조제1항 대학원 입학정원의 계열별 및 협동과정 모집인원 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 계열별 미충원 인원은 타 계열로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01.8.30., 2003.9.5., 2003.9.30., 2004.9.7., 2004.12.21., 2005.6.8., 2006.9.25., 2007.10.5., 2008.10.1., 2009.9.4., 2010.10.14., 2010.11.30., 2011.9.16., 2012.8.17., 2012.10.10., 2013.1.8., 2013.8.29., 2013.9.23., 2013.10.23., 2013.12.2., 2014.1.22., 2014.7.2., 2014.10.22., 2014.12.18., 2015.2.9., 2015.4.9., 2015.7.7., 2015.10.14., 2015.11.4., 2016.7.6., 2017.6.13., 2019.1.16., 2019.8.20., 2019.9.23.>

제3조(입학 및 편입학 지원서류) 학칙 제7조의 입학 및 편입학 지원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1.8.30.>

1. 입학원서 또는 편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
2. 학사(석사)학위과정 성적증명서
3. 학사(석사)학위 취득(예정)증명서

3의2. 삭제<2010.10.14.>

4. 기타 필요한 서류

제4조(입학전형 방법) 학칙 제7조에 의한 입학전형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0.10.6.>

1.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전형한다.
   가. 일반전형 : 서류전형(학사성적), 면접고사, 실기고사(예능계에 한함)로 전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 (영어 및 전공)을 부가하여 면접고사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07.10.5., 2011.9.16.>
   나. 특별전형 : 일반전형과 동일하며,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일정점수의 가산점을 부가할 수 있다.<개정 2000.10.6.>
2. 박사학위과정 :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전형한다.
   가. 일반전형 : 서류전형(학사 및 석사성적), 면접고사, 실기고사(협동과정 예능계에

한함)로 전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계획서 및 별도의 시험(영어 및 전공)을 부가하여 면접고사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1.9.16.>

나. 특별전형 : 일반전형과 동일하며,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일정점수의 가산점을 부가할 수 있다.<개정 2000.10.6.>

1) 삭제<1999.1.18.>

2) 삭제<1999.1.18.>

3. 위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의 특별전형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하되,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일정자격자 : 대학(전문대학포함)의 전임교원, 연구소, 관공서,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특정직위, 특정자격증 소지자 등으로서 일정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1.9.16.>

나. 삭제<2000.10.6.>

4. 편입학전형 : 일반전형과 동일한 시기에 하며,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로 전형한다. <개정 2007.10.5., 2011.9.16.>

제5조(면접 및 실기고사위원) ① 삭제<2000.10.6.>

② 대학원장은 각 학과별로 학칙 제46조의 교원 중에서 해당학과 전공교수를 포함한 2인 이상의 각 고사 위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0.10.6., 2011.10.14., 2012.8.17.>

제6조(배점 및 과락기준) 각 학위과정 입학전형의 과목별 배점과 과락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삭제<1999.1.18.>

2. 서류전형

가. 석사과정, 석·박사통합학위과정 : 학사성적 100점 만점으로 한다.<개정 2012.8.17.>

나. 박사과정 : 학사성적 50점, 석사성적 50점 만점으로 한다.

3. 면접고사 : 200점 만점으로 하되 영어 및 전공과목에 대한 필답시험의 성적, 연구계획서(박사과정의 경우)에 대한 평가를 면접고사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00.10.6., 2008.1.18.>

4. 삭제<2000.10.6.>

5. 실기고사 : 예능계열(음악, 미술분야)은 200점 만점으로 한다.<개정 2001.8.30., 2008.1.18.>

6. 과락기준 : 면접고사는 만점의 50%미만, 실기고사(음악, 미술분야)는 만점의 60% 미만일 경우 실격 처리한다.

제7조(입학사정) ① 각 학위 과정의 입학 사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행한다.

② 삭제<1999.1.18.>

제3장 전공의 설치 및 교육과정 운영

제8조(전공의 설치) ① 각 학과에는 1개의 전공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공의 증감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0.10.6., 2003.1.6.>

② 삭제<1999.1.18.>

③ 다른 학과에 소속된 관련전공 3인 이상의 교수가 연계전공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때 주관 학과를 설정해 두며, 1교수는 1전공에만 소속된다.

④ 각 학위과정별 학과의 전공편성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1.8.30. ,2003.1.6., 2003.5.29., 2003.9.5., 2004.9.7., 2006.9.25., 2007.10.5., 2008.10.1., 2009.9.4., 2010.10.14., 2010.11.30., 2011.9.16., 2012.2.3., 2012.8.17., 2012.10.10., 2013.1.8., 2013.9.23., 2013.10.23., 2013.12.2., 2014.1.22., 2014.7.2., 2014.10.22., 2014.12.18., 2015.3.19., 2015.4.9., 2015.7.7., 2015.10.14., 2015.11.4., 2016.7.6., 2017.6.13., 2017.12.5., 2018.8.21., 2019.1.16., 2019.8.20., 2019.9.23.>

제9조(교과목 설정 및 개설) ① 각 학과의 각 학위과정별 교과목은 기초공통과목과 전공과목으로 나누어 설정한다. 다만, 논문대체학위 취득을 허용한 학과에서는 논문대체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00.10.6., 2007.10.5., 2010.10.14., 2019.1.16.>

② 각 학과 주임교수는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중 대학원운영위원회가 정한 범위 안에서 매학기 일정 수의 교과목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3.1.6., 2003.9.5., 2004.12.21., 2015.10.14.>

③ 삭제<2015.10.14.>

제10조(교과목 이수 및 학점구조) ① 학칙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각 학위과정의 학생이 수료를 위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아래와 같다.<개정 2012.8.17.>

1. 석사과정 : 24학점 중 기초공통과목 3학점, 전공과목 6학점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 연구학점 6학점 및 연구윤리 1학점은 별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0.10.6., 2012.8.17., 2013.8.29., 2019.1.16.>
2. 박사과정 : 36학점 중 기초공통과목 3학점, 전공과목 12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연구학점 8학점 및 연구윤리 1학점은 별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0.10.6., 2012.8.17., 2013.8.29., 2019.1.16.>
3. 석·박사통합과정은 54학점 중 기초공통과목 6학점, 전공과목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연구학점 10학점 및 연구윤리 1학점은 별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1.8.30., 2010.2.19., 2013.8.29., 2019.1.16.>

② 삭제<1999.1.18.>

③ 삭제<2001.8.30.>

④ 삭제<2010.10.14.>

⑤ 삭제<2010.10.14.>

⑥ 석사학위과정 논문대체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제1호의 학점에 더하여 전공과목 3학점 및 논문대체과목 3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19.1.16.>

제10조의2(학위과정의 연계) ① 학부 4학년 학생은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과목을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 학사과정 졸업학점으로 포함되지 않는 과목에 한하여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한다.<신설 2001.8.30.>

②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6학점 이내의 학부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신설 2002.7.12.>

제11조(수강신청 및 전공학점 인정)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②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매학기에 교과목 학점 9학점, 세미나학점 1학점, 연구학점 2학점 및 연구윤리 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박사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은 각 학위과정 최종학기에 교과목학점 3학점을 추가 신청 할 수 있으며, 편입학생에 한하여 편입 학기에 따라 편입 이전 부족 취득 연구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각 학위과정 최종학기에 연구학점 2학점을 추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1.8.30., 2003.1.6., 2007.10.5., 2010.10.14., 2011.9.16., 2013.12.2.>

②의2 석사학위과정 논문대체학위 취득을 허용한 학과의 수료자 및 3학기 이상 이수한 자 중 논문대체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학·석사연계과정생 제외)는 대학원이 정한 소정의 기간에 논문대체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논문대체 학점은 수강신청 시 제2항의 교과목학점에 포함한다.<신설 2019.1.16.>

③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원격강의 교과목을 한 학기에 6학점 이내로 수강할 수 있으며, 수료에 필요한 교과목 학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02.2.8.>

④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과 내 타전공 또는 타 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과목이 소속 전공의 전공과목과 동일과목 또는 유사과목인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 학점을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03.1.6., 개정 2011.9.16.>

⑤ 삭제<2011.9.16.>

⑥ 석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4학기 이내의 학생은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12학점 이내에서 우리 대학교 타 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과목이 소속 전공의 전공과목과 동일과목 또는 유사과목인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학점을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1.9.16.>

⑦ 보충과목이수대상자는 한 학기에 보충과목을 9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교과목학점을 포함하여 15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1.8.30., 2010.10.14., 2011.9.16., 2015.7.7.>

⑧ 수강신청의 정정은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0.10.6., 2011.9.16.>

제11조의2(학점교류) ① 우리 대학교와 학생교류 협약이 체결된 국내·외 대학원 및 군교육기관간의 학점교류는 협약으로 정한 기간 내에서 우리 대학교 대학원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교과목과의 동일과목 또는 유사과목에 한하며 지도교수가 인정한 과목이어야 한다.<신설 2000.10.6., 개정 2010.2.19., 2011.10.14.>

② 교류학점은 석사과정 12학점, 박사과정 18학점, 석·박사통합과정 24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하되, 한 학기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0.2.19.>

제11조의3(각 대학원의 학점인정) ① 삭제<2011.9.16.>

② 삭제<2011.9.16.>

제11조의4(출석관리) ① 교과목 담당교원은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출결을 확인하고 출결사항을 출석부에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0.1.7.>

② 출석부는 성적평가후 1년간 교과목 담당교원이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비전임교원은 출석부

등 성적평가근거자료를 학기성적정정기간 종료후 1주일 이내에 학과주임교수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학과주임교수는 위 자료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20.1.7.>

③ 결석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사유는 시험기간에는 인정하지 않는다.<신설 2020.1.7.>

호	인정 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1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사망 등으로 인한 경우	배우자, 직계 존·비속: 5일 이내 기타: 3일 이내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
2	병역의무로 인한 경우	해당일	징병검사통지서, 훈련통지서 등
3	생리 공결에 의한 경우	매월 1회(매 학기 5일이내)	병원진단서(생리통 명기)
4	질병, 사고로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매 학기 10일 이내)	입원확인서(종합병원)
5	세미나 및 학회 등 전공 학습활동으로 인한 경우	해당기간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및 지도교수 확인서
6	당해 학기 중에 채용되어 취업한 경우	당해 학기 재직기간	4대 보험 가입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7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학생이 출석으로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0.1.7.>

⑤ 출석인정을 위한 서류가 위조되었을 경우 해당 학생의 교과목 성적은 취소한다.<신설 2020.1.7.>

제12조(보충과목 이수) ① 학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와 비동일 계통의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의 학과 또는 전공에 입학한 자는 해당학과의 학사학위과정 전공과목 중에서 12학점 이상의 보충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학과에 학사학위과정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때에는 해당학과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타 학과의 학사학위과정 교과목 중에서 보충과목을 이수 할 수 있다. 단, 해당학과 학사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과목을 이미 이수한 자는 인정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만 취득하면 된다.<개정 2015.4.9., 2015.7.7.>

② 박사학위과정 입학자 중 석사학위과정 전공과 해당전공이 동일하지 않은 자는 해당 학사 또는 석사 전공과목 중에서 12학점 이상의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출신자 중 동일계 졸업자는 해당 석사학위과정 전공과목 중에서 6학점 이상의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학과에 석사학위과정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때에는 해당학과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타 학과의 학사 또는 석사학위과정 교과목 중에서 보충과목을 이수 할 수 있다. 단, 인정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인정학점(세미나, 개별연구, 특수문제연구과목 제외)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만 취득하면 된다.<개정 2001.8.30., 2003.1.6., 2008.1.18., 2015.4.9., 2015.7.7.>

③ 학과간 협동과정의 경우에는 해당 관련학과를 동일학과로 본다.<신설 2000.10.6.>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충과목 이수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에 의해 보충과목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학과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0.10.6.〉

⑤ 보충과목 이수대상자는 해당 전공교수 및 학과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보충과목 학점인정 및 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0.10.6., 2014.10.22.〉

⑥ 삭제〈2000.10.6.〉

⑦ 보충과목 이수대상자가 신청기간 내에 보충과목 학점인정 및 이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4.10.22.〉

⑧ 4항의 보충과목 이수신청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는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 전에 보충과목 이수신청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10.6., 2014.10.22., 2015.7.7.〉

제13조(학점인정) ① 학칙 제15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기취득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와 함께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가 작성한 학점인정서를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0.10.6.〉

② 삭제〈1996.8.30.〉

③ 제1항에 의한 학점인정은 학점으로만 인정하며 성적은 P(Pass)로 표기한다.〈신설 2000.10.6.〉

제14조(교과목 중복이수 금지)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중복이수 하였을 때에는 후 취득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12조 및 제13조에 의하여 학점인정서를 제출한 자는 인정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할 수 없다.〈개정 2000.10.6.〉

③ 삭제〈1999.1.18.〉

④ 국내외 타 대학원의 석사학위 출신자가 박사학위과정 동일학과 동일전공에 입학한 경우에는 학과주임교수가 작성한 중복과목 대비표를 제출함으로써 중복이수 금지 과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 삭제〈1996.8.30.〉

제15조(연구학점) ① 학칙 제14조에 규정한 연구학점은 지도교수가 제시하는 연구과제수행에 대한 학점이며, 매학기 2학점씩 취득함을 원칙으로 하고, 각 학위 과정별 연구학점 취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편입학생에 한하여 각 학위과정 최종학기에 2학점을 초과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00.10.6., 2002.7.12., 2007.10.5., 2010.10.14., 2011.9.16., 2011.10.14.〉

1. 석사학위과정은 2학기부터 매학기 연구학점 1, 2, 3을 신청하고 6학점 취득
2. 박사학위과정은 1학기부터 매학기 연구학점 1, 2, 3, 4를 신청하고 8학점 취득
3. 학·석사연계과정과 석사과정 수업연한 단축자는 1학기부터 매학기 연구학점 1, 2, 3을 신청하고 6학점 취득〈개정 2013.8.29.〉
4.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은 2학기부터 매학기 연구학점 1, 2, 3, 4, 5를 신청하고 10학점 취득〈개정 2012.8.17.〉

② 해당학생의 지도교수는 매 학기말 연구학점에 대한 성적평가의 자료를 1년간 보관한

다.<개정 2000.10.6., 2003.9.5., 2019.8.20.>

③ 삭제<2013.8.29.>

④ 삭제<2013.8.29.>

제15조의2(연구윤리 학점) 학칙 제14조에 규정한 연구윤리 학점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학점이며, 대학원 공통필수 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연구윤리 학점은 박사학위과정 연구윤리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3.8.29., 개정 2015.4.9.>

제15조의3(논문대체 학점) ① 학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논문대체 학점은 석사학위 논문에 상응하는 학습경험 및 결과 등을 포함하는 논문대체과제(학술지게재, 작품발표회, 연주회, 보고서 등)를 교육, 지도, 평가하는 것으로 하며, 수료자 및 4학기 재학생이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고, 이수단위는 3학점으로 한다.<신설 2019.1.16.>

② 논문대체 학점의 담당교수는 지도교수이며, 담당교수는 수강자가 제출한 학과별 논문대체과제 실적을 확인하여 학칙 제16조 및 학과내규에 따라 평가하고 성적을 부여한다.<신설 2019.1.16.>

③ 제2항의 성적평가 이전에 지도교수, 학과 주임교수 및 학과 내 전임교원 1명은 학위논문대체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교수가 이 학위논문대체요건 확인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과 소속 전임교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 관련학과 전임교원을 포함할 수 있다.<신설 2019.1.16.>

④ 학과별 논문대체과제 및 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학과내규는 학과교수회의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신설 2019.1.16.>

제16조(교과목 담당교원) ① 대학원의 강의, 실험 및 실기를 담당하는 교원는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1.8.30., 2019.8.20.>

1. 학칙 제46조의 교원<개정 2000.10.6.>
2. 우리 대학교 명예교수, 강사,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개정 2019.8.20.>
3. 기타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자<개정 2019.8.20.>

② **삭제**<2019.8.20.>

제17조(교과목 담당 시수의 제한) 학칙 제46조의 교원 한 사람당 대학원 교과목 담당 시수는 주당 3시간(실험실습 또는 실기지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3시간(또는 6시간)을 초과하여 담당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학과 주임교수가 사유서와 함께 승인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8.20.>

제18조(전공변경) ① 학칙 제18조에 의하여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각 학위과정별 2학기부터 가능하며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1.9.30.>

1. 전공 변경신청서<개정 2019.1.16.>
2. 성적증명서<개정 2000.10.6.>
3. 삭제<2019.1.16.>

② 학과내의 전공설치 변경에 따라 소속전공이 폐지되거나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 폐지 또는 명칭 변경된 구 전공소속 재적생은 학칙 제18조제1항의 전공변경 회수제한에 관계 없이 신 전공에 소속할 수 있다. 단, 학칙 제18조제2항의 교과목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은 이때도 적용된다.<개정 2000.10.6.>

제4장 학위청구 자격시험<개정 2019.1.16.>

제19조(자격시험 및 응시자격) ① 각 학위과정별 외국어시험 응시자격은 각 학위과정의 재학생 및 수료자로 한다. 다만,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의 학생은 박사과정 외국어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2.19., 2011.10.14.>

② 각 학위과정별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각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등록을 필한 당해 학기 수료예정자 및 수료자로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다만,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의 학생은 박사과정 종합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신설 2000.10.6., 개정 2003.9.5., 2007.10.5., 2010.2.19., 2010.10.14., 2011.10.14.>

③ 제 2항의 당해 학기 수료예정자라 함은 당해 학기말에 학칙 제14조에 정한 수료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학기말에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응시한 종합시험은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00.10.6., 2010.2.19.>

제19조의2(시험부정행위자 처벌)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징계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1.10.14., 개정 2019.1.16.>

제20조(외국어시험의 과목 및 관리) ① 각 학위과정별 외국어시험의 과목은 영어로 하되 외국인학생은 한국어로 한다.<개정 2002.2.8., 2010.2.19.>

② 삭제<2010.2.19.>

③ 삭제<2010.2.19.>

④ 외국어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소정의 성적을 취득하거나 시험에 합격하고 해당서류를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시험 합격 판정기준은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신설 2000.10.6., 개정 2003.5.29., 2010.2.19.>

1. 내국인 학생의 경우
   가. TOEFL, TOEIC, TEPS, IELTS 등에 소정의 성적을 취득한 자<개정 2012.8.17.>
   나. 대학원에서 개설하는 영어특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다. 영어를 공용어로 하는 국가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
   라. 대학원에서 출제하는 영어시험에 합격한 자
2. 외국인 학생의 경우
   가. KLAT, TOPIK에 소정의 성적을 취득한 자<개정 2019.1.16.>
   나. 우리 대학교에서 개설하는 한국어 특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개정 2019.1.16.>
   다. 한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
   라. 대학원에서 출제하는 한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⑤ 삭제<2010.2.19.>

⑥ 삭제<2010.2.19.>

⑦ 삭제<2010.2.19.>

제21조(종합시험의 과목 및 관리) ① 각 학위과정별 종합시험은 각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

별 교과목으로 하고 학과주임교수 책임 하에 실시한 후 시험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2.19.>

② 종합시험에 관한 시험과목, 과목별 배점, 시험 시간 및 합격기준 등은 각 학과 내규로 정한다.<개정 2000.10.6., 2010.2.19.>

③ 종합시험의 위원은 학칙 제46조의 교원 또는 교과목 담당교수 중에서 학과 주임교수가 추천하고 대학원장이 임명한다.<신설 2010.2.19, 개정 2010.10.14.>

④ 제3항의 위원은 출제와 채점을 동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채점의 필요에 따라 채점위원을 따로 추천 및 임명할 수 있다.<신설 2010.2.19.>

⑤ 종합시험의 응시자는 소정의 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0.2.19.>

⑥ 종합시험의 응시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응시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0.2.19.>

제22조(합격기준) 삭제<2010.2.19.>

제23조(자격시험위원) ① 삭제<2010.2.19.>

② 삭제<2010.2.19.>

제24조(응시방법 및 절차) 삭제<2010.2.19.>

제25조(수험료) 삭제<2010.2.19.>

제5장 학위청구<개정 2019.1.16.>

제26조(지도교수) ① 학칙 제47조 제2항의 지도교수는 학칙 제46조의 교원 1인을 위촉한다. 다만, 논문 지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칙 제46조의 교원을 포함한 지도교수 2인을 공동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1.8.30., 2002.7.12., 2007.1.12., 2010.2.19.>

①의2 제1항 단서의 지도교수 2인 중 1인은 학칙 제46조의 교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명예교수, 객원교원, 겸임교원, 타 대학의 교원, 교외연구소의 연구원 등으로 한다. 다만, 명예교수는 임용 후 5년까지 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0.2.19., 개정 2017.7.18.>

② 지도교수는 학과 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과 주임교수는 지도교수 제청 시 해당 학생의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00.10.6., 2010.12.30.>

②의2 지도교수의 자격 및 논문지도 학생 수 등 논문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신설 2010.12.30.>

③ 지도교수의 변경은 매 학기 초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1.8.30.>

④ 삭제<1999.1.18.>

제27조(연구계획서의 제출) 학칙 제31조에 규정한 연구계획서의 제출은 각 학과에서 정하여 시행한다.<개정 2000.10.6., 2010.11.30., 2012.8.17., 2013.8.29.>

제28조 삭제<2013.8.29.>

제28조의2(학위청구논문 제목의 변경) 학위청구논문 제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위청구논문 제목 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12.2.>

제29조(예비논문공개발표 및 심사) ① 학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논문공개발표 및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학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1.8.30.>

② 삭제<2001.8.30.>

③ 삭제<2001.8.30.>

④ 삭제<2001.8.30.>

제30조(학위청구논문의 제출자격) 각 학위과정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00.10.6., 2011.10.14.>

1.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등록을 필한 자 및 수료자 다만, 수료자는 당해학기에 연구생으로 등록한 자여야 한다.<개정 2000.10.6., 2003.9.5., 2007.10.5., 2010.10.14., 2011.10.14.>
2. 재학 중인 자의 경우 당해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신설 2011.10.14.>
3.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개정 2011.10.14.>
4. 삭제<2013.8.29.>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 학과 내규로 정한 기준이 있는 학과인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한 자<신설 2011.10.14.>
6. 삭제<2001.8.30.>
7. 삭제<1999.1.18.>
8. 삭제<2010.10.14.>

제31조(논문제출 시기 및 서류)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에 논문 심사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0.6., 2013.12.2.>

1. 학위청구논문 제출신청서
2. 삭제<1999.1.18.>
3. 학위청구논문 추천 및 심사위원제청서
4. 학위청구논문(석사학위 청구논문 3부, 박사학위 청구논문 5부)
5. 연구윤리준수서약서<신설 2010.12.30.>

제31조의 2(연구윤리 준수) 학위논문을 청구하는 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지침으로 정한다.<신설 2010.12.30.>

제32조(논문심사위원) ① 학칙 제36조에 규정한 논문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 중에서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01.8.30., 2010.10.14.>

1. 교내·외 대학 전임교원
2. 퇴직 후 5년 이내인 교내·외 퇴직 전임교원
3. 박사학위를 취득(단, 예·체능계열은 예외)한 후 2년이 경과한 자로서 교내·외 대학 비전임교원 또는 「심사위원자격인정승인원」에 의해 대학원장이 승인한 해당분야의 권위자

② 학위청구논문의 지도교수 및 외부심사위원은 논문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개정 2000.10.6., 2010.10.14.>

③ 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단, 심사위원이

지병, 외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학과주임교수의 제청을 받아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02.2.8.>

제33조(논문의 공개발표) ① 학위청구논문이 접수되면 학과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이 정한 소정의 기간에 심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01.8.30., 2011.10.14.>

② 삭제<1999.1.18.>

제34조(논문의 심사) ① 학위 청구논문 심사는 매 학기마다 2차례(2차수)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매 차수별로 2회 이상,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매 차수별로 3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제33조에서 규정한 공개발표도 논문심사 회수에 포함한다.<개정 2001.8.30., 2010.12.30., 2014.10.22., 2016.4.20.>

②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는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위원이 행한다.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시 대학원 학위논문 연구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1.8.30., 2010.12.30.>

③ 학위청구 논문의 심사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석사학위청구논문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박사학위 청구논문은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개정 2010.12.30.>

④ 논문심사위원회는 제3항의 기준에 따라 논문의 합격 여부를 판정하여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학위 청구 논문의 심사요지 및 심사결과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8.30., 2010.12.30.>

⑤ 논문심사위원장은 소정의 기간 내에 논문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 심사를 다음 차수로 한 번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10.12.30., 2014.10.22.>

⑥ 논문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보완하여 제1항에 따라 다음 차수에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논문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으나 심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학과주임교수의 사유서를 제출 받아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02.2.8., 2010.12.30., 2014.10.22.>

⑦ 삭제<2010.12.30.>

제35조(최종 학위논문의 제출 부수) ① 전조의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위청구자는 최종 완성된 학위논문 5부와 논문 전문이 수록된 컴퓨터파일을 소정의 기간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8.30., 2006.11.27., 2016.4.20.>

② 전항의 논문 중 1부는 심사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0.6.>

제35조의2(논문대체학위) ① 학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사학위과정의 논문대체학위 취득 요건은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야 한다.<신설 2019.1.16.>

1.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등록을 필한 자. 다만, 수료자는 당해 학기에 수료자 등록을 한 자여야 한다.
2. 제10조 제1항 제1호와 학칙 제14조 및 제17조에 정한 수료기준을 충족한 자
3. 제10조 제6항에 정한 학점을 이수한 자
4.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② 석사학위 취득방법(학위청구논문과 논문대체학위 취득)의 변경은 1회에 한하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학위취득방법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당해 학기 성적이 확정될 때까지는 학위청구방법 변경 신청을 할 수 없다.<신설 2019.1.16.>

제36조(최종 학위논문의 규격) 최종 완성된 학위논문은 다음 각 호의 규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0.10.6.>

1. 판 종 : 4.6 배판(19㎝ x 26㎝)
2. 지 질 : 백색모조지(70g 이상)
3. 표지색깔 : 백색(소프트)<개정 2001.8.30., 2008.9.12.>
4. 삭제<2001.8.30.>
5. 본문인쇄방식
   1) 마스터, 옵셋 또는 워드프로세서로 인쇄한다.
   2)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하고 단면인쇄도 가능하다.
6. 표지인쇄방식 : 학위논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흑색으로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1.8.30.>
7. 논문이 갖추어야 할 순서
   1) 표지 :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4.10.22.>
   2) 백지
   3) 속표지 :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4.10.22.>
   4) 인준서 :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4.10.22.>
   5) 감사의 글 : 별지 제4호 서식(필요한 경우)<개정 2014.10.22.>
   6) 목차
   7) 논문본문 : 해당 전공분야 관련 학회의 논문 작성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9.4.30.>
   8) 참고문헌
   9) 부록(Appendix)(필요한 경우)
   10) 요약문(Abstract) : 논문에 사용된 언어가 국문인 경우에는 1종의 외국어요약, 외국어인 경우에는 국문요약 2페이지 이내(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08.6.5., 2009.4.30., 2011.9.16., 2015.4.9.>

제36조의2(학위종별 후드색깔) 석·박사 학위복의 학위종별 후드색깔은 별표 3과 같다.<신설 2001.8.30., 개정 2003.1.6., 2003.9.5., 2007.4.6., 2008.10.1., 2009.9.4., 2011.9.16., 2012.8.17., 2012.10.10., 2013.1.8., 2013.6.27., 2013.9.23., 2013.10.23., 2013.12.2., 2014.1.22., 2014.7.2., 2014.10.22., 2014.12.18., 2015.3.19., 2015.4.9., 2015.7.7., 2015.10.14., 2015.11.4., 2016.7.6., 2017.6.13., 2019.1.16. 2019.8.20., 2019.9.23., 2020. 1.7.>

제6장 외국인학생

제37조 삭제<2003.9.5.>

제38조(외국인의 범위)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9.16.>

1.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한 자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38조의2(입학전형) ① 입학을 지원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학전형은 원칙적으로 학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르되, 대학원위원회 의결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00.10.6.>

② 외국인 입학지원자에게는 대학원의 전공과정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한국어 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한국어에 대한 특별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외국인입학 지원자에게는 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외국어시험 성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2.2.8.>

④ 삭제<2019.1.16.>

⑤ 입학지원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신설 2001.8.30.>

⑥ 입학전형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신설 2001.8.30.>

1. 입학지원서(소정서식)
2. 학과 심사결정서(소정서식)<개정 2002.2.8.,2020.1.7.>
3. 삭제<2019.1.16.>
4. 학위(예정)증명서<개정 2002.2.8.>
5. 성적증명서
6. 학업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7. 삭제<2019.1.16.>
8. 삭제<2019.1.16.>
9. 추천서 2부(출신대학 지도교수 혹은 지원학과 교수)<개정 2020.1.7.>
10. 학과 교수회의록
11. 삭제<2020.1.7.>
12. 재정능력입증서류<개정 2019.1.16.>
    1) 재정보증인의 미화 소정금액 이상 은행 예금잔고 증명서(1개월 이상 계속 예치) 또는 미화 소정금액 이상 국내 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2)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3) 삭제<2020.1.7.>
    4) 재정보증인의 유학경비 부담 서약서(입학지원서에 포함)

제39조(외국인 장학금) ① 외국인 학생은 입학사정 시 대학원위원회 의결에 따라 등록금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개정 2002.2.8.>

② 삭제<2017.6.13.>

제7장 장학금

제40조(장학금의 종류) 대학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1.8.30.>

1. 삭제<1999.1.18.>

2. 장학조교장학금<개정 2000.10.6.>
3. 삭제<1999.1.18.>
4. 강의조교장학금<신설 2000.10.6.>
5. 실험조교장학금<신설 2000.10.6.>
6. 연구보조장학금<신설 2000.10.6.>
7. 입학성적장학금<신설 2000.10.6., 개정 2010.2.19.>
8. 특별장학금<신설 2000.10.6., 개정 2010.2.19.>
9. 21세기천마특별장학금<신설 2001.8.30., 개정 2010.2.19.>
10. 외국인장학금<신설 2002.2.8., 개정 2010.2.19.>
11. 면학장학금<신설 2001.8.30., 개정 2010.2.19.>
11의2. 학·석사연계과정장학금<신설 2009.7.3., 개정 2010.2.19.>
11의3. 천마장학금<신설 2010.2.19.>
12. 기타<개정 2001.8.30.>

제41조(조교 및 연구보조장학금) ① 학부·과 등의 업무 또는 교수의 강의, 실험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학·강의·실험조교로 임용된 대학원생에게는 조교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8.30., 2010.2.19.>

② 삭제<2001.8.30.>

③ 교수의 연구활동을 보조하는 학위과정 및 연구과정 대학원생에게는 연구보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구조교 대학원생은 연구보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0.2.19.>

제41조의2(입학성적장학금)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입학성적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1.8.30.>

제41조의3(특별장학금) ① 석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에 특별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입학한 자에게는 각 과정별 수업연한 내에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전액을 특별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장학생은 강의조교 또는 실험조교로 근무하여야 한다.<신설 2002.2.8., 개정 2010.2.19.>

② 제1항의 특별장학생은 재학기간 연속하여 학업을 계속하여야 하고 재학 중 매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 3.75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당해학기 성적이 이 기준에 미달 시에는 다음 학기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신설 2002.2.8., 개정 2010.2.19.>

③ 다음 각 호에 해당자는 특별장학생 자격을 상실한다.<신설 2010.2.19.>
1.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2개 학기 이상 3.75 미만인 자.
2. 재학기간에 이수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학점이 C학점 이하 취득한 자.
3. 휴학자(군복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휴학자는 예외) 또는 자퇴자

④ 국제교류협약에 의해 교환학생 또는 국제공동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자에게는 국제교류협약서에 정한 범위 내에서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0.2.19.>

제41조의4(21세기천마특별장학금) ① 우리 대학교 학사과정에서 21세기천마특별장학A로 입학하고 졸업학기에 장학생 자격을 유지한 자가 석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각 과정별 수업연한 내에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1.8.30., 개정 2010.2.19.>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장학생은 학사과정 졸업 후 2년 내에 석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하여야 하며, 입학전형 시 장학금 지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1.8.30., 개정 2010.2.19.>

③ 21세기천마특별장학생의 재학 중 장학금 지급 자격은 제41조의3제2항 및 제3항과 같다.<신설 2010.2.19.>

제41조의5(외국인장학금) ① 삭제<2017.6.13.>

② 삭제<2017.6.13.>

③ 삭제<2017.6.13.>

④ 삭제<2017.6.13.>

제42조(조교 임용 추천) ① 학과 주임교수는 재학 중인 전일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강의·실험조교를 선발하고, 소정기간 내에 조교임용추천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료학생, 학점단위등록학생, 비전일제 학생은 조교로 임용할 수 없다.<개정 2010.2.19.>

② 삭제<2010.2.19.>

③ 삭제<2010.2.19.>

제43조(면학장학금) ①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에 입학한 내국인 학생에게는 각 과정별 수업연한 내에 면학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0.10.6., 2010.2.19.>

② 삭제<2010.2.19.>

③ 학생자치기구 등의 학생간부 또는 대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장학금 외에 추가로 면학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0.2.19., 개정 2010.10.14.>

제43조의2(학·석사연계과정장학금)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는 입학금을 면제한다.<신설 2010.2.19.>

제43조의3(천마장학금) ① 우리 대학교 학사과정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가 석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각 과정별 수업연한 내에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전액을 천마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0.2.19.>

② 천마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입학전형 시 천마장학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천마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강의조교 또는 실험조교로 근무하여야 한다.<신설 2010.2.19.>

③ 천마장학생의 재학중 장학금 지급 자격은 제41조의 3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신설 2010.2.19.>

제44조(조교장학금) 삭제<2000.10.6.>

제45조(박사학위 취득자 기탁장학금) 삭제<2000.10.6.>

제46조(장학생의 기본자격) 삭제<2000.10.6.>

제47조(이중수혜 금지) 제40조 각 호 중 제2·4·5·6호에 해당하는 장학금은 동일인이 동일학기에 중복하여 수혜 받을 수 없다.<개정 2001.8.30., 2010.2.19.>

제47조의2(장학금 반환) 조교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학적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직하는 경우 수혜 받은 장학금을 잔여임기 비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00.10.6., 개정 2010.2.19.>

제8장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신설 2001.8.30.>

제48조(공개강좌) ① 학칙 제24조제3항에 의거 대학원에 공개강좌를 둔다.<신설 2001.8.30.>
② 공개강좌의 지원자격은 관련분야에서 지도자적 역할을 수행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로 한다.<신설 2001.8.30.>
③ 공개강좌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고, 수강생에게는 소정의 등록금을 징수한다.<신설 2001.8.30.>
④ 학사운영을 위하여 강좌별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대학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신설 2001.8.30.>

제49조(연구과정) ① 학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과정생으로 입학을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모든 학과에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신설 2001.8.30.>
② 연구과정생의 수업연한은 6개월 이상으로 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1.8.30., 개정 2010.10.14.>
③ 연구과정생의 교육과정은 각 학위과정에 준하고, 등록금(입학금 포함)은 각 학위과정 등록금의 1/2로 한다.<신설 2001.8.30., 개정 2010.10.14.>
④ 연구과정생의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은 6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신설 2001.8.30.>
⑤ 연구과정생으로서 이수한 학점은 당해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에 한 하여 9학점까지 인정 할 수 있다.<신설 2001.8.30.>

제9장 운영위원회<신설 2004.4.9.>

제49조의2(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학칙 제49조의2에 의거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대학원장 및 대학원 부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대학원장이 추천하는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된다.<개정 2004.9.7., 2011.10.14.>
③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결원으로 인하여 신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10.14.>

제49조의3(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1의2. 학위논문대체요건 확인서에 관한 사항<신설 2019.1.16.>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9조의4(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제49조의3제1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개정 2001.8.30., 2004.4.9.>

제50조(준용) 세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우리 대학교의 제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1.8.30.>

제51조(학과간 협동과정 학과 폐지에 관한 기준) 대학원장은 학과간 협동과정 학과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입생 모집을 2개 학기 연속 중지한 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신설학과는 2년이 경과한 후 적용한다.<신설 2006.9.25., 개정 2013.6.27., 2013.10.23., 2015.7.7., 2019.8.20., 2020.1.7.>

1. 학과 운영상 문제가 있거나 최근 4개 학기 연속으로 입학자가 없는 경우<신설 2013.10.23., 개정 2019.8.20., 2020.1.7.>
2. 매 학기 초에 재학생이 5명 이하인 경우<신설 2013.10.23.>
3. 삭제<2016.4.20.>

제52조(연구생등록) ①대학원학칙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각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위청구 시까지 연구생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적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08.1.18.>

② 연구생 등록자는 매학기 연구생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8.1.18.>

부 칙 ((1994. 3. 1.)

① (시행일) 본 세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장의 입학에 관한 세칙규정은 1994학년도 전기 입학전형 때부터 시행하며, 제35조 및 제36조의 최종 학위논문의 제출 부수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은 199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를 위해 제출되는 최종 학위논문부터 적용할 수 있다.

② (규정폐지) 구 대학원 입학전형에 관한 시행세칙, 대학원 교과과정 및 학과목 등록에 관한 시행세칙, 대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관한 시행세칙,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시행세칙, 대학원 외국인 학생에 관한 시행세칙, 대학원 교비장학금 급여 시행세칙, 대학원 박사과정 대여장학금 내규 및 수료자 연구 실험비 징수 및 사용 요령은 본 세칙 시행일을 기해 이를 모두 폐지한다.

③ (교과목 이수구조에 관한 경과조치) 본 세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각 학과 내규상의 수료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구조가 본 세칙 시행일 전에 유효하였던 구 규정상의 이수구조와 다른 경우, 시행일 전에 입학하여 이미 교과목 학점의 일부를 취득한 자의 수료에 필요한 이수구조로는 구 구조와 신 구조가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④ (학위청구논문 제출요건으로서의 연구학점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본 세칙 시행일 전에 구 규정에 따라 각 학위과정을 이미 수료한 자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때에는 본 세칙 제30조 2호의 적용을 면제하며, 본 세칙 시행일 전에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에서 2개 학기 이상을 이미 이수한 자가 2학점, 박사학위과정에서 1개 학기를 이미 이수한 자가 4학점의 연구학점을 취득하면 본 세칙 제30조 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예비논문 및 예비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1994년 2월 이전에 수료한 자에게는 본 세칙 제29조 및 제30조 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비논문과 관련된 의무를 면제한다.

⑥ (보충과목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본 세칙 시행일 전에 구 규정에 따라 이미 보충과목 이수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본 세칙 제12조에 의한 보충과목 이수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한 보충과목을 계속 이수하여야 한다.

⑦ (연구실험실비에 관한 경과조치) 본 세칙 시행일 전에 구 규정에 따라 수료생이 이미 납부한 연구실험실비는 해당자의 학위청구논문 제출 때까지 구 규정에 준해 관리한다.

⑧ (논문 등록비에 관한 경과조치) 구 규정에 따른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의 논문 등록비는 본 세칙 시행일 전이라도 더 이상 징수하지 아니한다.

⑨ (학과 내규에 관한 경과 조치) 현행시행세칙 제4조 (입학전형의 고사과목 및 내용)의 각 학과 내규는 '95학년도 전기 입학시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1994년 11월 11일 신설)

부 칙 ((1994.10.21.)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1994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10. 5.)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1995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5.16.)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1996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8.30.)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199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0.28.)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199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18.)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규정폐지)** 대학원 각 학과 내규는 본 세칙 시행일을 기해 이를 모두 폐지한다

③ **(교과목 이수구조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3월 1일 이전 입학한 영어영문학과 재적생은 학점이수구조 변경에도 불구하고 석사과정은 전공 9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전공 15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부 칙 (1999. 2. 5.)

① **(논문제출시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990년 2월28일 이전 수료자는 시행세칙 제5장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보충과목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본 개정세칙(제12조) 시행일 전 입학자는 구 규정에 따라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학과 전공통합, 분리 및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1999학년도 전기 입학자는 시행세칙이 개정된 학과·전공에 소속되며, 현 재적생은 시행세칙 개정 전 학과·전공에 소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전공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현 재적생은 시행세칙 개정 전 학과·전공에 소속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10. 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전공통합, 분리 및 명칭 변경 및 전공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1999학년도 3월 입학자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된 시행세칙의 학과·전공에 소속되며, 1998년 9월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1999년 2월 5일 이전 시행세칙에 의한 학과·전공에 소속하는 것으로 본다.

아 래

중어중문학과 중어학전공, 중국문학전공은 중어중문학 전공으로 통합, 불어불문학과 불어학전공, 불문학전공은 불어불문학전공으로 통합, 독어독문학과 독어학전공, 독문학전공은 독어독문학전공으로 통합, 한문학과 한문학전공, 한문어학전공은 한문학전공으로 통합, 국사학과 삼국 및 고려사전공은 삼국 및 고려시대사전공으로 명칭변경, 조선시대사전공, 근대 및 현대사전공은 조선 및 근현대사전공으로 통합, 문화인류학과 민속학전공, 사회인류학전공은 사회인류학 및 민속학전공으로 통합,미학미술사학과 미학전공, 미술사학전공은 미학미술사학전공으로 통합, 교육학과 교육철학 및 교육사학전공, 교육심리학전공, 교육사회학전공, 교육과정전공은 교육학전공으로 통합, 공법학과 국제법전공, 형사법전공, 사회법전공, 사법학과 기초법전공은 공법학과 공법전공으로 분리 통합, 정치외교학과 정치이론전공, 비교정치학전공, 국제정치학전공은 정치외교학전공으로 통합, 지역개발학과 도시계획 및 지역정책전공, 농촌 및 사회개발전공은 지역개발전공으로 통합, 경영학과 생산경영정보관리전공은 생산운영관리전공, 경영정보관리전공으로 분리, 축산경영학과 축산경영학전공, 축산물시장론전공은 축산경영학전공으로 통합, 아동학과 아동발달 및 교육전공, 아동이상 및 복지전공은 아동학전공으로 통합, 수학과 위상수학전공, 대수학전공, 기하학전공은 수학전공으로 통합, 해석학전공, 확률 및 통계학전공은 응용수학전공으로 통합, 통계학과 이론통계학전공, 응용통계학전공은 통계학전공으로 통합, 응용확률론 및 통계정보학전공, 계산학전공은 응용확률론·통계정보학·계산학전공으로 통합, 화학과 유기화학전공, 무기화학전공, 물리화학전공, 분석화학전공은 신물질합성화학전공, 정밀화학전공, 신소재화학전공으로 분리 통합, 생물학과 식물학전공, 미생물학전공은 식물학 및 미생물학전공으로 통합, 생화학과 유기생화학 및 분석생화학전공, 단백질 및 효소학전공은 생화학 및 응용생화학전공으로 통합,

세포 및 분자생물학전공은 분자생물학전공으로 명칭변경, 응용미생물학과 미생물과학전공, 생물공학전공은 응용미생물학전공으로 통합, 미생물학과 미생물과학전공, 생물공학전공은 미생물학전공으로 통합 농학과 작물육종학전공, 작물재배 및 토양학전공은 작물학 및 농업환경전공으로 통합, 원예학과 과수 및 병리학전공, 채소학전공, 화훼학전공은 원예학전공으로 통합, 식품가공학과 생물화학 및 생물공학전공, 식품가공 및 식품미생물학전공은 식품가공학전공으로 통합, 조경학과 조경계획 및 설계전공은 조경계획학전공, 조경설계학전공으로 분리, 조경식재계획전공은 조경계획학전공으로 명칭변경, 가정학과 조리학전공, 주생활전공은 조리 및 주거학전공으로 통합, 소비자학전공은 폐지, 약학과 생물약학전공, 약화학전공은 약학전공으로 통합, 건축공학과 건축계획학전공은 건축설계전공으로 명칭변경, 건축구조공학전공은 건축공학전공으로 명칭변경, 도시공학과 도시계획전공, 환경위생공학전공, 도시 및 환경계획전공으로 통합, 컴퓨터공학과 컴퓨터시스템전공은 컴퓨터통신 및 시스템전공으로 명칭변경, 컴퓨터응용전공은 컴퓨터응용 및 멀티미디어전공으로 명칭변경, 섬유공학과 섬유물리전공, 섬유기계전공은 섬유생산공정전공으로 통합, 섬유화학전공, 섬유고분자재료전공은 섬유소재가공전공으로 통합, 작곡과 작곡전공, 이론전공은 작곡전공으로 통합, 국악과 국악학전공, 국악작곡전공, 기악 및 정재전공은 국악전공으로 통합, 평면디자인학과 시각정보디자인전공은 시각영상디자인학과 시각영상디자인전공으로 학과와 전공명칭변경, 평면디자인학과 섬유디자인전공은 입체디자인학과 환경조형디자인전공, 세라믹디자인전공은 산업디자인학과 생활조형디자인전공으로 학과 명칭변경 분리 통합, 응용전자학과에는 응용전자전공이 신설.

제3조(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한문학과 한문학전공은 한국한문학전공으로 명칭변경되며, 2001년 3월 1일부터 한문학전공 재적생은 한국한문학전공에 소속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 1. 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전공통합, 분리 및 명칭 변경 및 전공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심리학과 실험심리학전공, 상담 및 산업심리학전공은 심리학전공으로 통합,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건축설계전공은 폐지, 박사과정 건축설계전공은 건축학전공으로 명칭변경, 건축공학전공은 건축구조공학전공, 건축공학전공으로 전공분리하고 2001학년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통계학과 통계학전공은 수리 및 응용통계학전공으로 명칭 변경되며 2001학년도 3월 1일 현재 재적생은 변경된 전공에 소속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 8.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2. 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매체정보학과 매체정보전공은 언론정보학전공, 산업디

자인학과 생활조형디자인전공은 공예디자인전공으로 명칭변경되며 2002년 3월 1일 현재 재적생은 변경된 전공에 소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외국인장학금 지급에 따른 경과조치) 외국인장학금지급신청서 제출은 2002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 7.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1. 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세칙 개정 당시 매체정보학과 및 센서및시스템공학과 재학생은 변경된 학과에 소속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3. 1. 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전공통합, 신설 및 명칭 변경 및 전공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03학년도 9월 입학자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된 시행세칙의 학과 전공에 소속되며, 종전의 재적생은 이전 시행세칙에 의한 학과 전공에 소속하는 것으로 본다.

아 래

국사학과 삼국시대및고려시대사전공, 조선및근현대사전공은 국사학전공으로 통합, 행정학과 일반행정전공, 정책분석전공은 행정학전공으로 통합, 경영학과 국제경영학전공은 폐지, 무역학과 국제경제이론전공, 국제경영및무역실무전공은 국제통상전공, 국제경영및무역상무전공으로 명칭변경, 물리학과 고체물리학전공, 응용물리학전공은 물리학전공으로 통합, 화학과 신물질합성화학전공, 정밀화학전공, 신소재화학전공은 화학전공으로 통합, 생물학과 동물학전공, 식물학 및 미생물학전공은 생물학전공으로 통합, 생화학과 생화학및응용생화학전공, 분자생물학전공은 생화학전공으로 통합, 축산학과 축산학전공은 동물생명과학과 동물생명과학전공으로 명칭변경, 조경학과 조경설계학전공은 조경설계전공으로 명칭변경, 가정학과 조리및주거학전공은 조리학및주거실내디자인학전공으로 명칭변경, 의류학과 복식학전공, 피복과학전공은 의류패션학과 의류패션전공으로 명칭변경 및 통합, 식품영양학과 식품학전공, 영양학전공은 식품영양학전공으로 통합, 토목공학과 수자원환경공학전공은 수자원·환경공학전공으로, 토질및도로공학전공은 토질·도로공학전공으로 명칭변경, 건축공학과 건축구조공학전공, 건축공학전공은 건축공학전공으로 통합, 도시공학과 도시및환경계획전공은 도시·환경계획전공으로 명칭변경, 금속공학과 물리야금전공, 화학야금전공은 금속공학전공으로 통합, 무기재료공학과 구조재료전공, 전자재료전공은 무기재료공학전공으로 통합, 전기공학과 제어및시스템전공, 기기및전력변환전공은 제어 및 기기·전력변환 전공으로 통합,컴퓨터공학과 컴퓨터통신및시스템전공, 컴퓨터응용및멀티미디어전공은 컴퓨터공학전공으로 통합, 응용화학공학과 분리및공정공학전공, 재료및반응공학전공, 유기공업화학및생물화학공

학전공, 고분자전공은 응용화학공학 전공으로 통합.

② 2개 이상의 전공이 설치된 학과에 대해서는 2003학년도 제2학기 석·박사 재학생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재학생이 5명 미만인 전공은 2004학년도부터 폐지한다.

제3조(교과목 이수구조에 관한 경과조치) 재적생의 소속 전공이 다른 전공과 통합되었을 경우, 통합전공의 교과목을 이수하면 전공 과목으로 인정한다.

부 칙 (2003. 5.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9. 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 신설 및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① 교과교육학과에 국어교육전공, 영어교육전공 신설, 식품가공학과에 외식산업학전공 신설, 학과간 협동과정 보건학과에 보건학전공을 신설하여 2004학년도 1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

② 가정학과의 조리학및주거실내디자인학전공은 실내환경디자인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2004학년도 1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고, 종전의 재적생은 이전 시행세칙에 의한 전공에 소속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3. 9.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전공통·폐합에 관한 경과조치) 2개 이상의 전공이 설치된 학과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학기당 평균 재학생이 5명 미만인 전공은 관련 전공과 통합하여 운영한다.

부 칙 (2004. 4. 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9. 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 2 제2항은 200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4.12.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6. 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5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원 감축으로 인한 제2조의 2(배정기준) 개정 사항은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 8.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산업디자인학과 공예디자인 전공은 생활제품디자인전공으로 명칭 변경되며 2006년 3월 1일 현재 재적생은 변경된 전공에 소속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6. 9.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1조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1.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6학년도 전기 학위취득 예정자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0. 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및 제8조제4항의 개정 세칙은 2007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명칭 변경 및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 가정학과 가족학전공은 가족주거학과 가족복지상담전공, 의학과 진단방사선과학전공은 의학과 영상의학과학전공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2008년 3월 1일 현재 재적생은 변경된 전공에 소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 영어영문학과(석사) 영어번역전공, 중어중문학과(석사) 중국어번역전공, 경제학과 이론경제학전공과 응용경제학전공, 건축학과(석사) 건축학전공(2년과정 및 3년과정)과 건축이론및역사전공 신설은 2008학년도 전기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③ 이 시행세칙 개정 당시 경제학과 경제학전공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경제학전공으로 한다.

부 칙 (2008. 1.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8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의 개정 세칙은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6. 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8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9.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8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 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명칭 변경, 통합 및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세칙 개정 전 재적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에 사회복지 및 지역사회개발학전공을 신설하고, 지역개발전공은 지역개발 및 부동산학전공으로 명칭변경하며, 개정 전 재적생은 개정 전 학칙을 적용한다.
2. 교과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은 국어교육학전공으로 명칭변경하고, 2008학년도 졸업생은 개정전 학칙을 적용하고, 이후 졸업생은 개정된 학칙을 적용한다.
3. 금속공학과 금속공학전공과 무기재료공학과 무기재료공학전공을 신소재공학과 신소재공학전공으로 통합하고, 2008학년도 졸업생은 개정 전 학칙을 적용하며, 이후 졸업하는 재적생은 개정된 학칙을 적용한다.
4. 환경공학과는 수질관리전공과 대기 및 폐기물관리전공을 환경공학전공으로 통합하고, 개정 전 재적생은 개정 전 학칙을 적용한다.
5. 동양화과 동양화전공을 한국회화과 한국회화전공으로, 서양화과 서양화전공을 회화과 회화전공으로 명칭변경하고, 개정 전 재적생은 개정된 학칙을 적용한다.
6. 의학과 소아과학전공을 소아청소년과학전공으로 명칭변경하고, 개정전 재적생은 개정전 학칙을 적용한다.
7. 협동과정 박사과정 미술디자인학과 미술·디자인 전공을 미술전공과 디자인전공으로 분리하고, 개정 전 재적생은 개정된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2009. 4.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 9. 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명칭 변경, 통합,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개정 전 재적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영어영문학과 석사과정에 영문학전공, 영어번역전공을 영문학 및 번역전공으로 통합하고, 개정 전 재적생은 개정 전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2. 중어중문학과 중국어번역전공을 번역전공으로 명칭변경하고, 개정전 재적생은 개정된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3. 응용미생물학과 응용미생물학전공을 미생물생명공학과 미생물생명공학전공으로 명

칭 변경하고, 개정 전 재적생은 개정된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4. 동물생명과학과 동물생명과학전공을 폐지하고, 수료자는 개정 전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5. 학과간 협동과정 박사과정에 음악학과 음악학전공을 “음악학이론전공”과 “음악학실기전공”으로 분리하고, 개정 전 재적생은 개정된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2010. 2.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세칙 개정 전에 입학한 재적생은 개정 전 세칙을 적용한다.

제3조(명예교수의 단독 논문 지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세칙 개정 전에 단독 논문지도하고 있는 명예교수는 개정 전 세칙에 따른다.

제4조(경과조치) 이 세칙 개정 당시 시행되고 있는 제11조의2, 제41조의4, 제41조의5, 제42조, 제43조는 이 개정 세칙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1조 및 제32조는 201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건축학과 석사과정 건축학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 건축학과 석사과정 건축학전공 재적생은 개정 전 세칙을 적용한다.

제3조(전공 신설, 폐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 시행일 이전 재적생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경영학과 생산운영관리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운영관리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재무관리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재무금융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2. 생물학과 생물학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생명과학과 생명과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3. 식품가공학과 식품가공학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식품과학과 식품공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외식산업학전공 재적생은 식품과학과 외식산업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4. 응용화학공학과 응용화학공학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화학공학과 화학공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5. 산업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산업인터랙션디자인학과 산업인터랙션디자인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생활제품디자인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생활제품디자인학과 생활제품디자인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6. 학과간협동과정 나노시스템공학과 나노시스템공학전공, 멀티미디어통신공학과 멀티미디어통신공학전공, 디스플레이공학과 디스플레이공학전공, 인지과학과 인지과학전공 등 폐지학과의 전공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각 폐지학과의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2010.11.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석·박사통합학위과정 입학정원의 배정인원 및 석·박사 통합학위과정 학과의 전공은 이 개정 세칙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한다.

제2조(전공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 개정 전 생명공학과 생명공학전공 재적생은 개정 전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9.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2년 03월 0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 이전에 편입학한 학생의 연구학점 신청 및 취득에 관한 사항은 이 개정세칙에 따른다.

제3조(전공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세칙 시행일 이전 재적생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섬유공학과 재적생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변경된 유기신소재공학과 유기신소재공학전공 또는 융합섬유공학과 융합섬유공학전공에 재적하거나, 졸업 시까지 변경 전 섬유공학과 각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2. 건축학과 건축이론및역사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건축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2011.10.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2. 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이전 통계학과 수리및응용통계학, 응용확률론·통계정보학·계산학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통계학과 통계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2012. 8.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박사통합학위과정 수업연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은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2.10.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의학과 정신과학전공은 의학과 정신건강의학전공으로

명칭 변경되며, 2013년 3월 1일 현재 재적생은 변경된 전공에 소속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2013. 1. 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6.27.)

제1조(시행시기) 이 개정 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2의 개정 세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간 협동과정 학과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51조 세칙에 의해 폐지된 학과는 폐지 결정 당시의 재적생이 졸업하는 학년도까지는 존속된다.

부 칙 (2013. 8.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제27조, 제28조, 제30조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연구학점 취득 및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자격 중 연구계획서 제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당시의 재적생 및 수료생은 개정된 세칙을 적용 한다.

부 칙 (2013. 9.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0.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3호의 규정에서의 2년은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부 칙 (2013.12. 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 1.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경학과 계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당시 조경학과의 재적생 및 수료생은 개정된 세칙을 적용한다.

제3조(동아시아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당시 동아시아학과의 재적생은 개정 전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2014. 7. 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및 전공 명칭 변경, 전공 분리에 따른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당시의 재적생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심리학과 심리학전공 재적생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변경된 임상심리학전공 또는 변경전 심리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2. 시각영상디자인학과 시각영상디자인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시각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2014.10.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4조와 제36조의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및 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당시의 재적생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그린에너지융합공학과 그린에너지전공 및 그린카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에너융합공학과 신재생에너지전공 및 스마트카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2. 영어영문학과 영문학 및 번역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영어영문학과 영문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2014.12.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간 협동과정 로봇공학과, 수학교육응용학과, LED융합공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당시의 로봇공학과 로봇전공, 수학교육응용학과 수학교육응용학전공, LED융합공학과 LED-IT전공 및 LED-BT전공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각 폐지학과의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2015. 2. 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3.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4. 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7. 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의2, 제8조, 제36조의2의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과 및 전공 신설, 명칭변경, 통합, 분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당시의 재적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폐지된 중어중문학과 번역전공과 역사학과로 통합된 국사학과 및 사학과의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변경전 학과 및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2. 중어중문학과 중어중문학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중국언어문화학과 중어중문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3. 생명공학과 분자유전생명공학전공 및 동물및의학생명공학전공 재적생은 분리된 생명공학과 생명공학전공, 의생명공학과 의생명공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4. 한국회화과 및 회화과 회화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회화과 한국회화전공 및 회화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5. 회화과 사진과뉴미디어전공 및 조소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트랜스아트과 트랜스아트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6. 에너지융합공학과의 수송기기LED-IT융합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자동차조명융합공학과 자동차조명융합공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2015.10.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 세칙은 2015년 10월 1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11. 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4.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4조와 제35조의 개정 세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 7. 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2의 개정 세칙의 배정인원에 관한 단서조항은 201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 3.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및 전공 신설, 분리에 따른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당시 경영학과 회계학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회계세무학과 회계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2017. 6.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동아시아문화학과 석박사통합과정은 2018년 2월 28일자로 폐지한다.

제2조(학과간 협동과정 응용전자학과, 스마트산업안전학과, 엔지니어링사이언스학과, 유럽지역문화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당시의 응용전자학과 응용전자전공, 스마트산업안전학과 스마트산업안전전공, 엔지니어링사이언스학과 엔지니어링사이언스전공, 유럽지역문화학과 유럽지역문화학전공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각 폐지학과의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2017. 7.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 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당시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재적생은 통합된 행정학과 행정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2018. 8.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당시 조경학과 조경계획학전공, 조경설계전공 재적생은 통합된 조경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2019. 1.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및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세칙 개정 전에 입학한 융합섬유공학과 융합섬유공학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파이버시스템공학과 파이버시스템공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논문대체학위 제도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 중 논문대체학위 제도에 관한 규정은 이 세칙 개정 전에 수료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수료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세칙 개정 전의 수료자에 대해서는 제35조의2 제1항 제2호의 수료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학위취득 방법 변경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세칙 개정 전의 수료자 중 제11조 제2항의2의 규정에 의한 논문대체학위 신청자는 학위취득 방법을 변경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 3. 1.)

제1조(직권 수정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8.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간 협동과정 생명의과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당시의 생명의과학과 생명의과학전공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해당 학과 및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세칙 개정 전에 입학한 건설시스템공학과 구조공학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스마트구조공학전공에, 수자원·환경공학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스마트수자원·환경공학전공에, 토질·도로공학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스마트토질·도로공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2019. 9.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 폐지 및 전공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의 유기신소재공학과 유기신소재공학전공 재적생은 화학공학과 고분자바이오소재공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2020. 1. 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위과정의 계열별 및 협동과정 모집인원 배정기준표<개정** 2013.8.29., 2013.9.23., 2013.10.23., 2013.12.2., 2014.1.22., 2014.7.2., 2014.10.22., 2014.12.18., 2015.2.9., 2015.4.9., 2015.7.7., 2015.10.14., 2015.11.4., 2016.7.6., 2017.6.13., 2019.1.16., 2019.8.20., 2019.9.23.>

1. 석사과정

<table>
<tr><th colspan="2">계 열</th><th colspan="2">학 과</th><th>배정인원</th></tr>
<tr><td colspan="2">인문사회</td><td colspan="2">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중국언어문화학과, 일어일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한문학과, 철학과, 역사학과, 문화인류학과, 미학미술사학과, 교육학과, 공법학과, 사법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지역및 복지행정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회계세무학과, 무역학과, 식품자원경제학과, 심리학과, 사회학과, 유아교육학과, 언론정보학과, 국어교육학과</td><td>143명</td></tr>
<tr><td colspan="2">자연과학</td><td colspan="2">수학과, 통계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생화학과, 미생물생명공학과, 산림자원학과, 원예학과, 식품과학과, 가족주거학과, 의류패션학과, 식품영양학과, 약학과, 생명공학과, 의생명공학과</td><td>95명</td></tr>
<tr><td colspan="2">공 학</td><td colspan="2">건설시스템공학과, 건축학과, 도시공학과, 기계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화학공학과, 파이버시스템공학과, 환경공학과, 자동차기계공학과, 조경학과</td><td>136명</td></tr>
<tr><td colspan="2">예·체능</td><td colspan="2">작곡과, 성악과, 기악과, 국악과, 회화과, 시각디자인학과, 산업인터랙션디자인학과, 생활제품디자인학과, 트랜스아트과, 체육학과</td><td>74명</td></tr>
<tr><td colspan="2">의 학</td><td colspan="2">의학과</td><td>44명</td></tr>
<tr><td colspan="2">소 계</td><td colspan="2">68과</td><td>492명</td></tr>
<tr><td rowspan="16">협동과정</td><td>인문사회</td><td rowspan="16">학과간</td><td>한국학과</td><td rowspan="16">66명</td></tr>
<tr><td>공학</td><td>의공학과</td></tr>
<tr><td>인문사회</td><td>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학과</td></tr>
<tr><td>인문사회</td><td>글로벌비즈니스학과</td></tr>
<tr><td>인문사회</td><td>한국여성리더십학과</td></tr>
<tr><td>인문사회</td><td>독서작문학과</td></tr>
<tr><td>공학</td><td>에너지융합공학과</td></tr>
<tr><td>인문사회</td><td>디지털융합비즈니스학과</td></tr>
<tr><td>예체능</td><td>무용공연예술학과</td></tr>
<tr><td>인문사회</td><td>새마을국제개발학과</td></tr>
<tr><td>인문사회</td><td>동아시아문화학과</td></tr>
<tr><td>공학</td><td>자동차조명융합공학과</td></tr>
<tr><td>인문사회</td><td>번역학과</td></tr>
<tr><td>공학</td><td>첨단뿌리산업공학과</td></tr>
<tr><td>인문사회</td><td>기술혁신・기업가정신학과</td></tr>
<tr><td colspan="2">계</td><td>15과</td><td>66명</td></tr>
</table>

계 열	학 과		배정인원
	학·연·산	포항산업과학연구원	1명
		한국기계연구원	1명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명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1명
		한국식품연구원	1명
		식품의약품안전처	1명
		DYETEC연구원	1명
		농촌진흥청	1명
		한국로봇융합연구원	2명
	계	9개연구소(원)	10명
소 계	15과, 9개 연구소(원)		76명
합 계	83과, 9개 연구소(원)		568명

2. 박사과정

※ 석·박사통합과정 배정인원은 박사과정 각 계열별 및 협동과정 배정기준 인원의 50%범위내로 한다.

계 열		학 과		배정인원
인문사회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중국언어문화학과, 일어일문학과, 한문학과, 철학과, 역사학과, 문화인류학과, 미학미술사학과, 교육학과, 공법학과, 사법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지역및복지행정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회계세무학과, 무역학과, 식품자원경제학과, 심리학과, 사회학과, 유아교육학과, 언론정보학과, 국어교육학과		92명
자연과학		수학과, 통계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생화학과, 미생물생명공학과, 산림자원학과, 원예학과, 식품과학과, 가족주거학과, 의류패션학과, 식품영양학과, 약학과, 생명공학과, 의생명공학과, 수학교육과		40명
공 학		건설시스템공학과, 건축학과, 도시공학과, 기계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화학공학과, 파이버시스템공학과, 환경공학과, 조경학과		43명
예·체능		시각디자인학과, 체육학과		8명
의 학		의학과		23명
소 계		58과		206명
협동과정	인문사회	학과간	한국학과	50명
	공학		의공학과	
	자연과학		보건학과	
	인문사회		미술치료학과	
	인문사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예·체능		미술디자인학과	
	예·체능		음악학과	
	인문사회		글로벌비즈니스학과	
	인문사회		독서작문학과	
	공학		에너지융합공학과	
	인문사회		디지털융합비즈니스학과	
	인문사회		새마을국제개발학과	
	인문사회		동아시아문화학과	
	공학		자동차조명융합공학과	
	인문사회		번역학과	
	공학		첨단뿌리산업공학과	
	인문사회		기술혁신·기업가정신학과	
	계		17과	50명

계 열	학 과		배정인원
협동과정	학·연·산	포항산업과학연구원	1명
		한국기계연구원	1명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명
		한국전기연구원	1명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1명
		DYETEC연구원	1명
		농촌진흥청	1명
		국립산림과학원	1명
		한국로봇융합연구원	2명
	계	9개연구소(원)	10명
소 계	17과, 9개 연구소(원)		60명
합 계	75과, 9개 연구소(원)		266명

[별표 2] **학위과정별 학과의 전공편성표<개정** 2013.9.23., 2013.10.23., 2013.12.2., 2014.1.22., 2014.7.2., 2014.10.22., 2014.12.18., 2015.3.19., 2015.4.9., 2015.7.7., 2015.10.14., 2015.11.4., 2016.7.6., 2017.6.13., 2017.12.5., 2018.8.21., 2019.1.16., 2019.8.20., 2019.9.23.>

1. 일반학위과정

계열	학과			전공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과	-	국어학, 국문학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어학, 영문학
	중국언어문화학과	중국언어문화학과	중국언어문화학과	중어중문학
	일어일문학과	일어일문학과	-	일어일문학
	불어불문학과	-	-	불어불문학
	독어독문학과	-	-	독어독문학
	한문학과	한문학과	한문학과	한국한문학
	철학과	철학과	철학과	동양철학, 서양철학
	역사학과	역사학과	-	국사학
	역사학과	역사학과	역사학과	동양사, 서양사
	문화인류학과	문화인류학과	-	고고학, 사회인류학및민속학
	미학미술사학과	미학미술사학과	미학미술사학과	미학미술사학
	교육학과	교육학과	교육학과	교육학
	공법학과	공법학과	공법학과	헌·행정법, 공법
	사법학과	사법학과	사법학과	민사법, 상사법
	행정학과	행정학과	행정학과	행정학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학
	지역및복지행정학과	지역및복지행정학과	지역및복지행정학과	지역개발및부동산학, 사회복지및지역사회개발학
	경제학과	경제학과	-	이론경제학, 응용경제학
	경영학과	경영학과	-	인사조직, 운영관리, 경영정보관리, 재무금융, 마케팅
	회계세무학과	회계세무학과	-	회계학
	무역학과	무역학과	-	국제통상, 국제경영및무역상무
	식품자원경제학과	식품자원경제학과	-	식품자원경제학
	심리학과	심리학과	심리학과	심리학, 임상심리학
	사회학과	사회학과	-	사회학
	유아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유아교육학
	언론정보학과	언론정보학과	언론정보학과	언론정보학
	국어교육학과	국어교육학과	국어교육학과	국어교육학

계열	학과			전공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자연과학계열	수학과	수학과	수학과	수학, 응용수학
	통계학과	통계학과	통계학과	통계학
	물리학과	물리학과	물리학과	물리학
	화학과	화학과	화학과	화학
	생명과학과	생명과학과	생명과학과	생명과학
	생화학과	생화학과	생화학과	생화학
	미생물생명공학과	미생물생명공학과	-	미생물생명공학
	산림자원학과	산림자원학가	-	산림자원학, 산림이용학
	원예학과	원예학과	원예학과	원예학
	식품과학과	식품과학과	식품과학과	식품공학, 외식산업학
	가족주거학과	가족주거학과	가족주거학과	실내환경디자인, 가족복지상담
	의류패션학과	의류패션학과	의류패션학과	의류패션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
	약학과	약학과	약학과	약학
	생명공학과	생명공학과	생명공학과	생명공학
	의생명공학과	의생명공학과	의생명공학과	의생명공학
	-	수학교육과	-	수학교육학
공학계열	건설시스템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스마트구조공학, 스마트수자원·환경공학, 스마트토질·도로공학
	건축학과	건축학과		건축공학, 건축학
			건축학과	건축공학
	도시공학과	도시공학과	도시공학과	도시·환경계획, 교통공학
	기계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공학
	신소재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신소재공학
	전기공학과	전기공학과	전기공학과	에너지및환경전자, 제어및기기·전력변환
	전자공학과	전자공학과	전자공학과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
	화학공학과	화학공학과	화학공학과	화학공학, 고분자바이오소재공학
	파이버시스템공학과	파이버시스템공학과	파이버시스템공학과	파이버시스템공학
	환경공학과	환경공학과	환경공학과	환경공학
	자동차기계공학과	-	-	자동차기계공학
	조경학과	조경학과	조경학과	조경학

계열	학과			전공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예체능계열	작곡과	-	-	작곡, 지휘
	성악과	-	-	성악
	기악과	-	-	피아노, 관현악
	국악과	-	-	국악
	회화과	-	-	한국회화, 회화
	시각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
	산업인터랙션디자인학과	-	-	산업인터랙션디자인
	생활제품디자인학과		-	생활제품디자인
	트랜스아트과	-	-	트랜스아트
	체육학과	체육학과	-	체육학
의학계열	의학과	의학과	의학과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분자생물학, 병리학, 미생물학, 약리학, 예방의학, 내과학, 신경과학, 외과학, 정형외과학, 신경외과학, 흉부외과학, 성형외과학, 산부인과학, 소아청소년과학, 정신건강의학, 안과학, 이비인후과학, 피부과학, 비뇨기과학, 영상의학과학, 방사선종양학, 마취통증의학, 진단검사의학, 재활의학, 응급의학, 가정의학, 치과학, 핵의학, 의과학

2. 협동과정

학과			전공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한국학과	한국학과	-	한국학
의공학과	의공학과	의공학과	의공학
-	보건학과	-	보건학
-	미술치료학과	-	미술치료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	미술디자인학과	-	미술, 디자인
	음악학과	-	음악학실기, 음악학이론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글로벌비즈니스
한국여성리더십학과	-	-	한국여성리더십
독서작문학과	독서작문학과	독서작문학과	독서작문
에너지융합공학과	에너지융합공학과	에너지융합공학과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카, 산업경영
디지털융합비즈니스학과	디지털융합비즈니스학과	디지털융합비즈니스학과	디지털융합비즈니스학
무용공연예술학과	-	-	무용공연예술
새마을국제개발학과	새마을국제개발학과	새마을국제개발학과	새마을국제개발
동아시아문화학과	동아시아문화학과	-	동아시아문화
자동차조명융합공학과	자동차조명융합공학과	자동차조명융합공학과	자동차조명융합공학
번역학과	번역학과	번역학과	번역
첨단뿌리산업공학과	첨단뿌리산업공학과	첨단뿌리산업공학과	첨단뿌리산업공학
기술혁신· 기업가정신학과	기술혁신· 기업가정신학과	기술혁신· 기업가정신학과	기술혁신·기업가정신

[별표 3] **석·박사 학위종별 후드색깔<개정** 2013.9.23., 2013.10.23., 2013.12.2., 2014.1.22., 2014.7.2., 2014.10.22., 2014.12.18., 2015.3.19., 2015.4.9., 2015.7.7., 2015.10.14., 2015.11.4., 2016.4.20., 2016.7.6., 2017.6.13., 2019.1.16., 2019.8.20., 2019.9.23., 2020.1.7.>

학위종별	후 드 색 깔	해 당 학 과
문 학	백색(White)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중국언어문화학과, 일어일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한문학과, 철학과(석사), 역사학과, 문화인류학과, 미학미술사학과, 한국학과, 한국여성리더십학과, 독서작문학과, 번역학과
심 리 학		심리학과(심리학전공)
임 상 심 리 학		심리학과(임상심리학전공)
사 회 학		사회학과
언 론 정 보 학		언론정보학과
동 아 시 아 학		동아시아문화학과
철 학	짙은청색(Deep Blue)	철학과(박사)
교 육 학	엷은청색(Pale Blue)	교육학과, 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학과, 수학교육과
법 학	보라색(Violet)	공법학과, 사법학과
행 정 학	밤자색(Dark Purple)	행정학과, 지역및복지행정학과,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국 제 개 발 학		
정 치 학	밝은곤색(Light Indigo)	정치외교학과
경 제 학	동색(Copper Color)	경제학과, 무역학과, 식품자원경제학과
경 영 학	청색(Blue)	경영학과, 무역학과, 글로벌비즈니스학과, 회계세무학과, 기술혁신·기업가정신학과
기 술 혁 신 · 기 업 가 정 신		기술혁신·기업가정신학과
디 지 털 융 합 비 즈 니 스 학		디지털융합비즈니스학과
이 학	황금색(Gold Color)	수학과, 통계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생화학과, 미생물생명공학과, 산림자원학과, 식품영양학과, 체육학과(박사), 생명공학과, 의생명공학과, 의학과
약 학	엷은녹색(Pale Green)	약학과
생 활 과 학	노랑색(Yellow)	가족주거학과
의 류 학		의류패션학과
농 학	녹색(Green)	산림자원학과, 원예학과
식 품 학		식품과학과
조 경 학		조경학과

학위종별	후 드 색 깔	해 당 학 과
공 학	오렌지색(Orange)	건설시스템공학과, 건축학과, 도시공학과, 기계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화학공학과, 환경공학과, 파이버시스템공학과, 에너지융합공학과(신재생에너지전공, 스마트카전공), 자동차조명융합공학과, 첨단뿌리산업공학과
의 공 학		의공학과
산업경영공학		에너지융합공학과(산업경영전공)
의 학	빨강색(Red)	의학과
음 악 학	핑크색(Pink)	작곡과, 성악과, 기악과, 국악과, 음악학과
음 악		음악학과
미 술 학	갈색(Brown)	회화과, 트랜스아트과, 미술디자인학과
디 자 인 학		시각디자인학과, 산업인터랙션디자인학과, 생활제품디자인학과, 미술디자인학과
체 육 학	회녹색(Gray Green)	체육학과(석사)
무용공연예술학		무용공연예술학과
보 건 학	진한녹색(Dark Green)	보건학과
미술치료학		미술치료학과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4.1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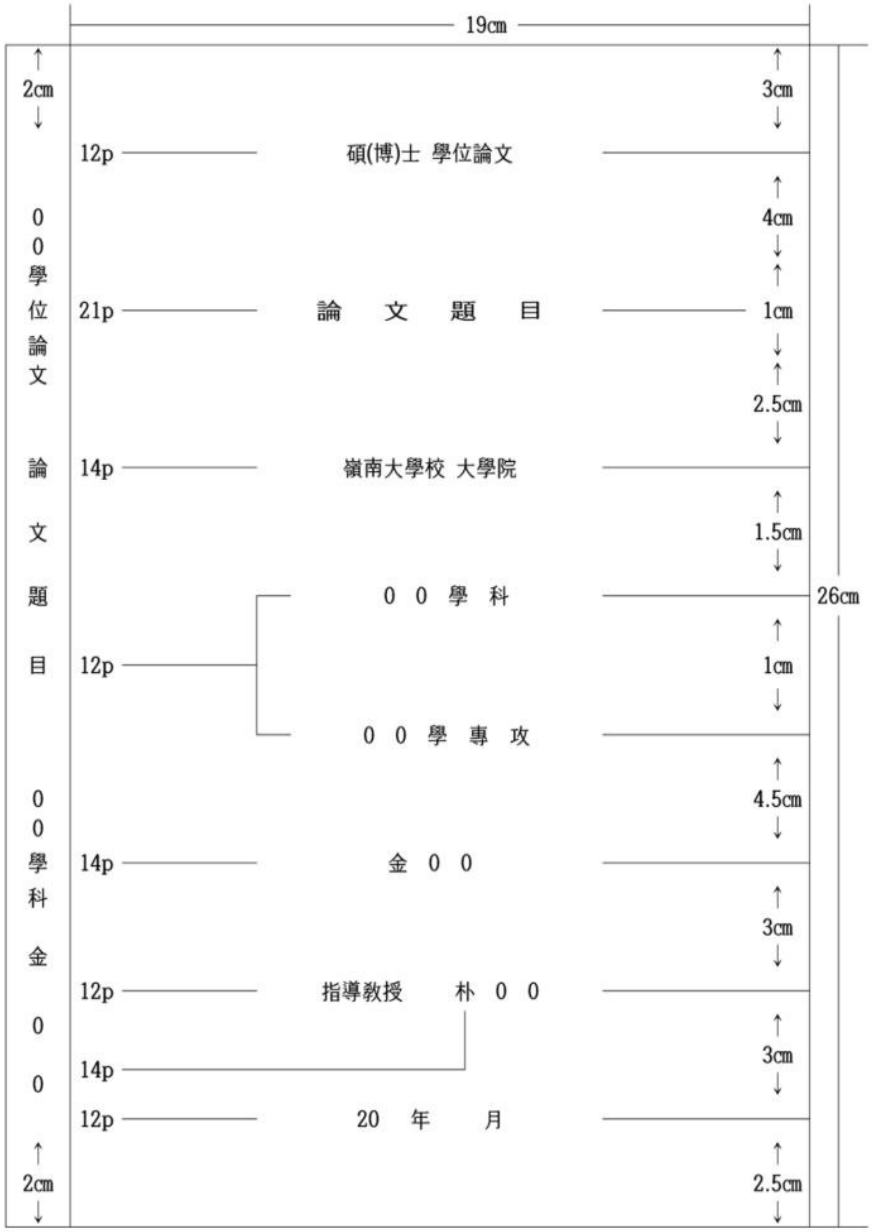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4.1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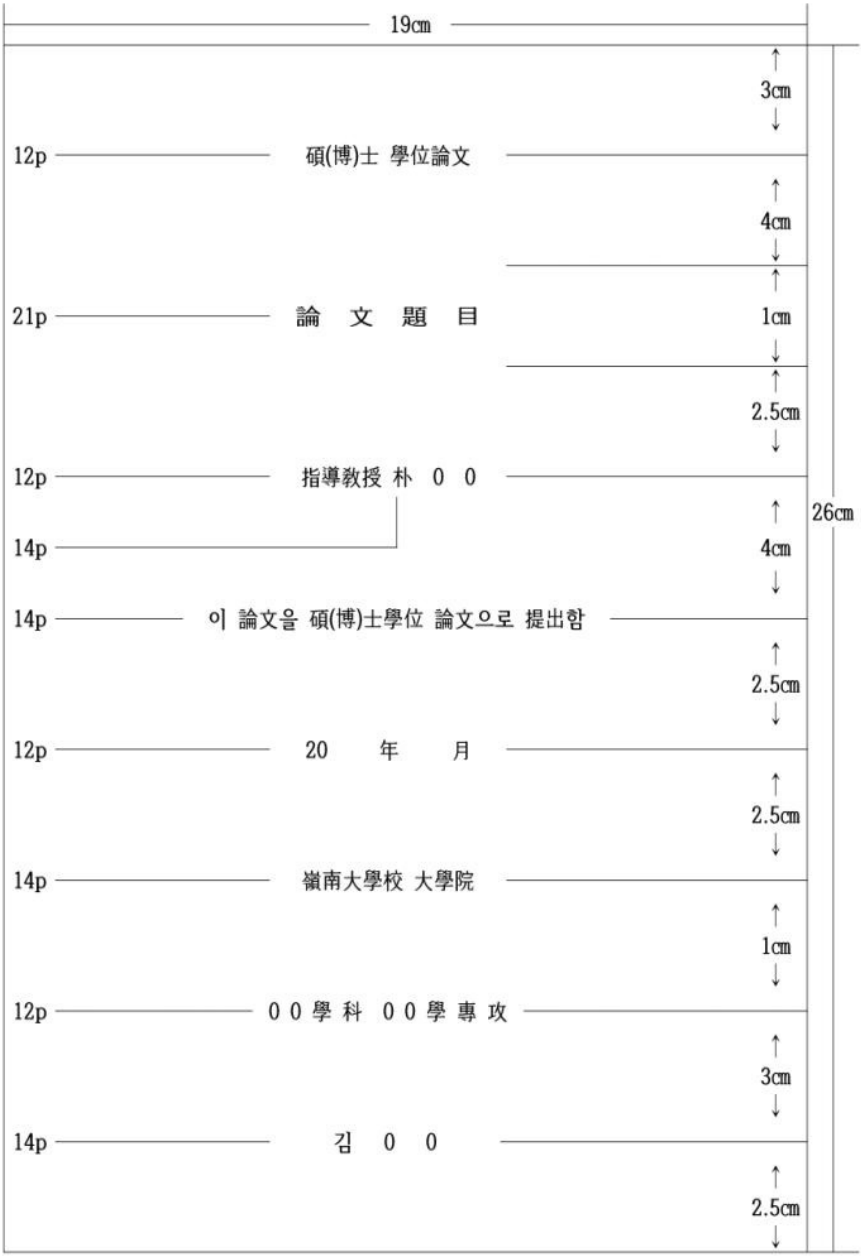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4.1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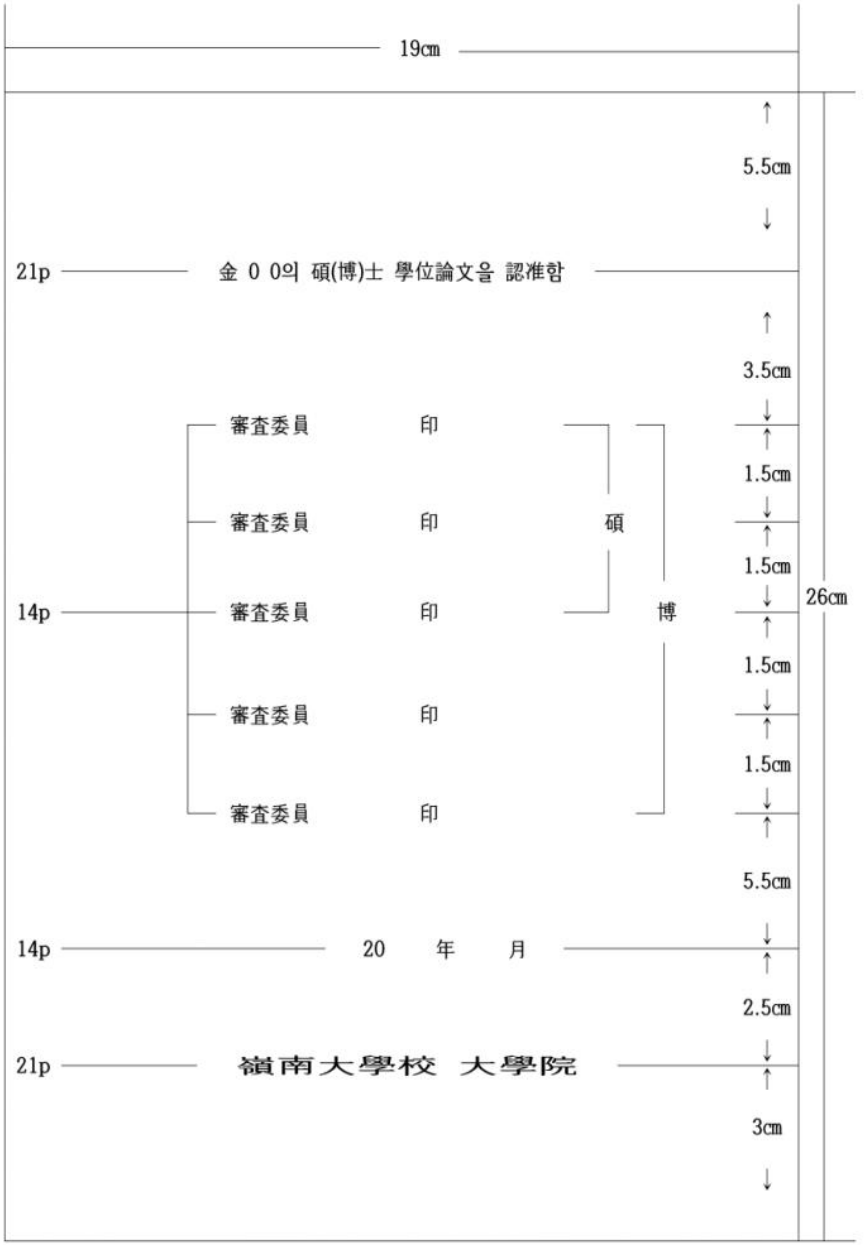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4.1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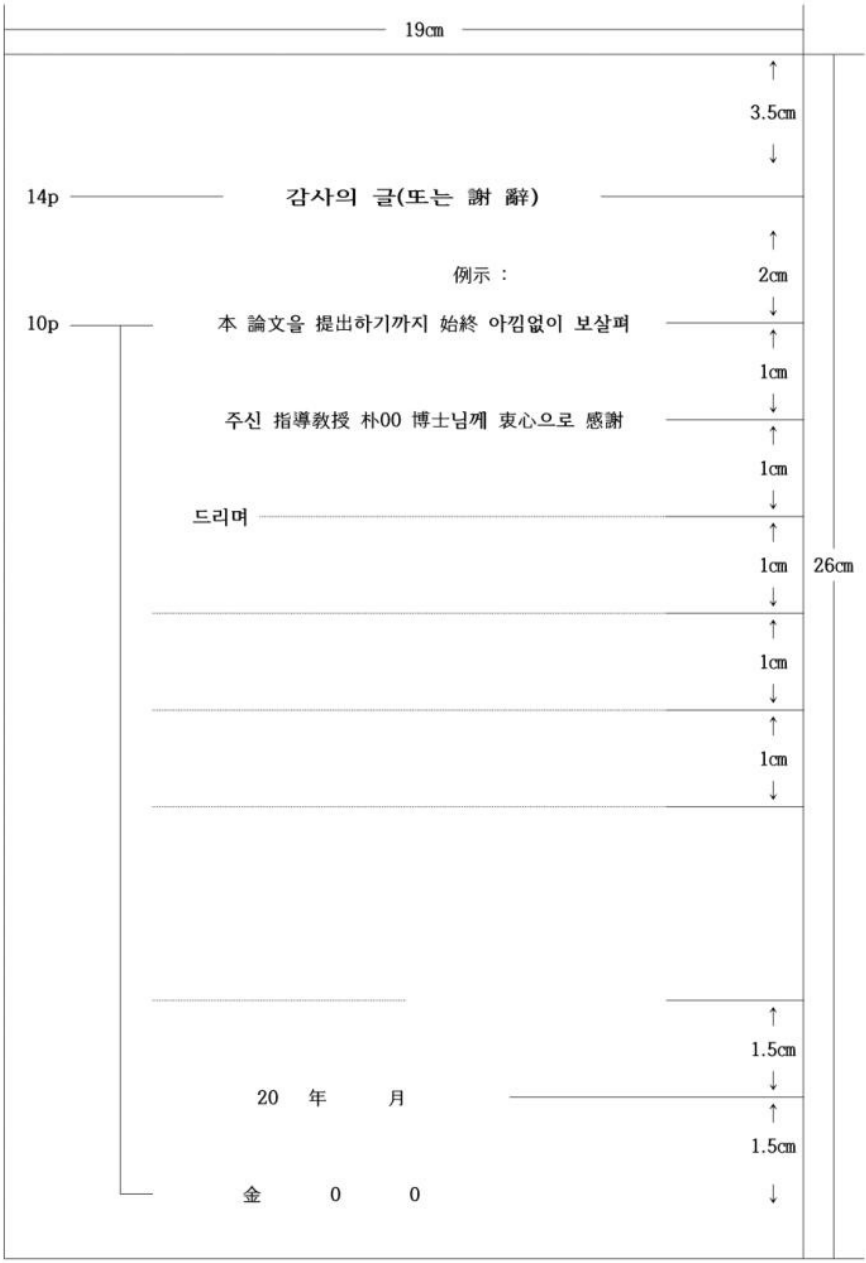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5.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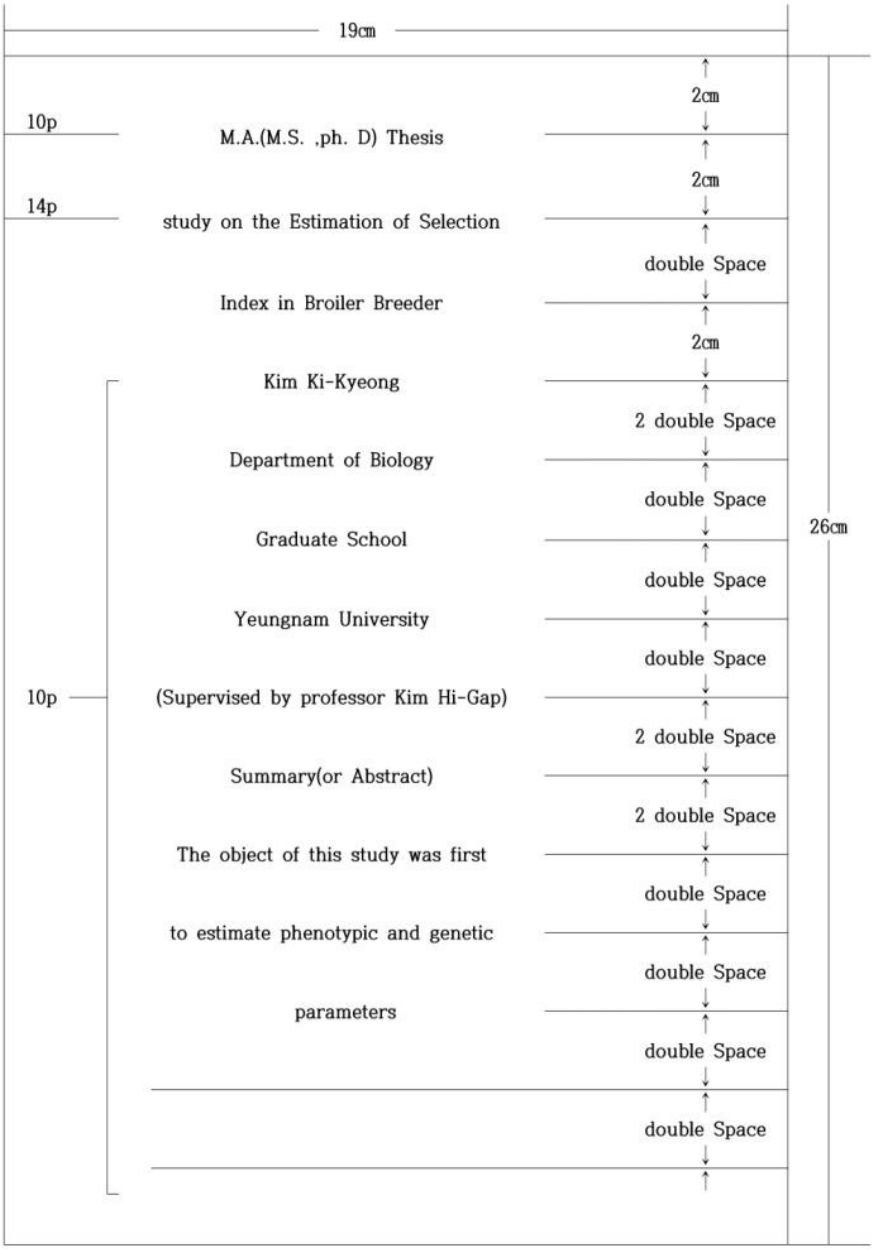

[별지 제6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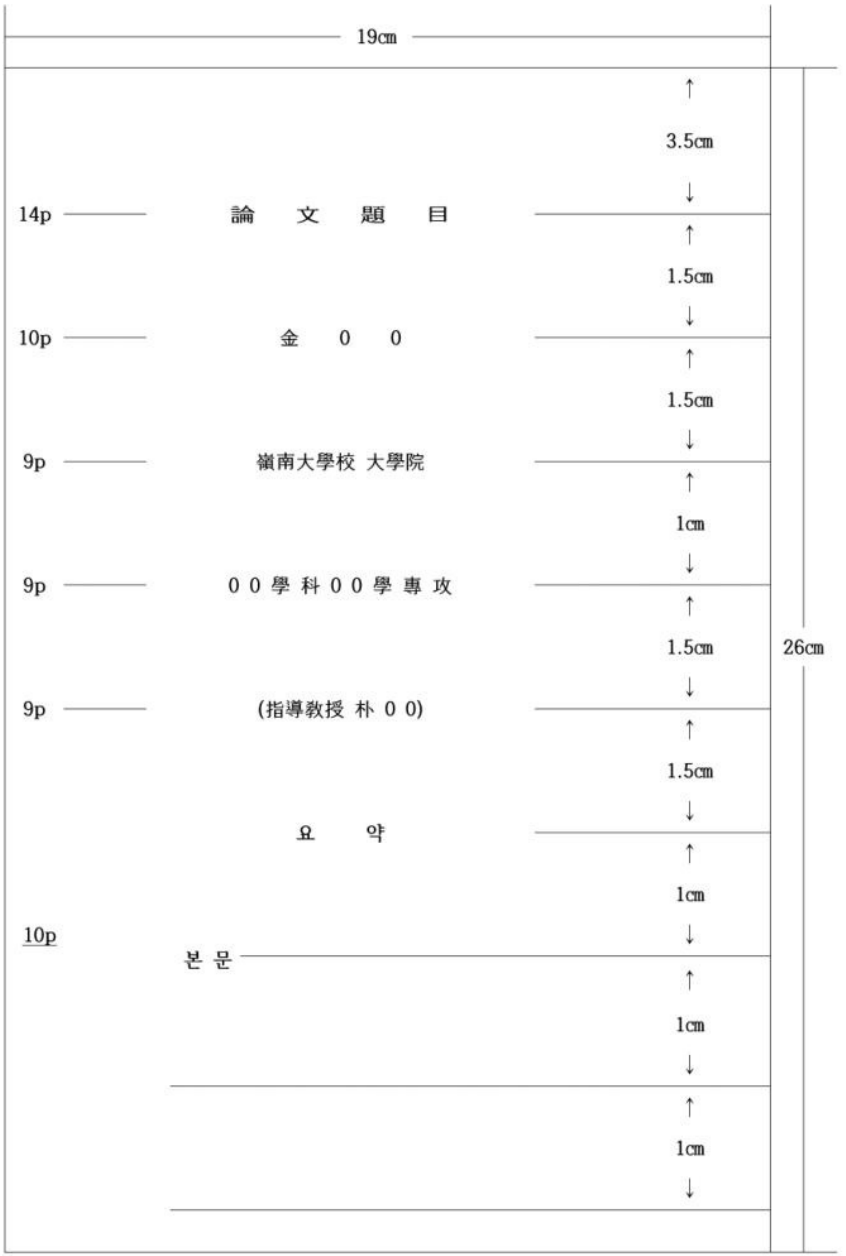
19㎝
3.5㎝
14p
論 文 題 目
1.5㎝
10p
金 0 0
1.5㎝
9p
嶺南大學校 大學院
1㎝
9p
0 0 學 科 0 0 學 專 攻
1.5㎝
26㎝
9p
(指導敎授 朴 0 0)
1.5㎝
요 약
1㎝
10p
본 문
1㎝
1㎝

Ⅵ. 대학원 학사업무 규정

1. 5년제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2013. 9. 10 교무위원회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5년제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5년제 학·석사연계과정

제 2 조(5년제 학·석사연계과정 예비생 선발) ① 5년제 학·석사연계과정 신청은 5학기 이수한 자로서,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별표 1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당해 학기까지의 총 성적 평점 평균 3.00 이상이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를 별도의 선발기준에 따라 학부(과) 심사위원회에서 예비생으로 선발한다. 단,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의과대학·약학대학·법과대학·사범대학 재적생, 재입학생 및 편입생은 제외한다.<개정 2005. 6.14, 2013.9.10>

② 예비생으로 선발된 자는 6 ~ 7학기에 최대 수강 학점에서 3학점을 더하여 수강 신청할 수 있다.

제 3 조(수업연한 및 수강신청) ① 5년제 학·석사연계과정 수업 연한은 학부 3년 6개월, 대학원 1년 6개월로 한다.

② 학·석사 연계과정 예비생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 과목을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 학사과정 졸업 학점으로 포함되지 않은 과목에 한하여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학·석사 연계과정 예비생은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학부 7학기에는 대학원 교과목을 3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 4 조(학부 졸업) ①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은 졸업논문 및 졸업 종합시험,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를 면제하며, 각 학부(과) 졸업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총 성적 평점 평균 3.00 이상일 때 학사 학위를 수여 받음과 동시에 학·석사 연계 과정생으로 최종 선발한다.<개정 2009.7.7., 2013.9.10>

② 선발된 자는 졸업 사정과 동시에 대학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등록하지 않은 학생과, 연계과정 중도 포기자 및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는 학·석사 연계과정 선발을 취소한다.

제 5 조(대학원 등록 및 입학) ① 학·석사연계과정생으로 최종 선발된 자는 대학원 입학금을 면제한다.

② 학·석사 연계 과정생은 대학원 입학과 동시에 지도교수를 배정하며, 연구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6 조(대학원 졸업) ① 학·석사 연계 과정생의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3회 이상의 정규 등록을 필한 자로서 당해 학기 수료 예정 자로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② 대학원 석사과정 진학 후 3학기 내에 수료를 못한 자는 4학기 정규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9.7.7>

부 칙 (2002. 7. 16)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6. 14)

제 1 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7)

제 1 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9. 10)

제 1 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5년제 학·석사 연계과정 예비생 선발 기준<개정 2013.9.10>

대학 졸업학점	5학기 이수 예비생 선발 기준 학점	총 평점평균(5학기)	비 고
120	84	3.00	
130	90	3.00	
140	96	3.00	

2. 석·박사통합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내규

개정 2013. 12. 2 기획위원회

제 1 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학칙 제 3 조제1항에 의거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석·박사통합학위과정 (이하 "통합학위과정"이라 한다)은 학문연구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과정을 연계 운영하는 과정으로써 박사학위를 최종 목표로 하는 학생이 석사학위 취득 및 박사학위과정 입학전형을 거치지 아니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개정 2010.11.30>

제 3 조(설치대상) 통합 학위과정은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0.11.30>

제 4 조(지원자격) 통합학위과정 입학 지원자는 대학원학칙 제6조제1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30., 2012.8.17>

제 5 조(모집인원) 통합학위과정은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으로 모집하되, 모집인원은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50% 범위내로 한다.<개정 2010.11.30>

제 6 조(입학전형) 통합학위과정 입학지원자의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개정 2010.11.30>

제 7 조(수업연한) ① 통합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대학원학칙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4년으로 한다. 다만, 1년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0.11.30>

② 수업연한이라 함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단등록기간을 말한다.<개정 2010.11.30>

제 8 조(재학연한) ① 통합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대학원학칙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8년으로 한다.<개정 2010.11.30>

② 재학연한이라 함은 수료를 위하여 허용된 최장기간을 말한다.<개정 2010.11.30>

제 9 조(학점취득) ① 통합학위과정 학생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교과목학점 54학점 이상, 연구학점 10학점 및 연구윤리 1학점으로 한다.<개정 2010.11.30., 2012.8.17., 2013.12. 2.>

② 교과목학점 54학점에는 기초공통과목 6학점, 전공과목 18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11.30>

③ 삭제<2012.8.17.>

제10조(학점인정) 통합학위과정의 학점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호 제1호 및 제2호의 취득학점은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11.30>

1. 재학 중 국내·외 일반대학원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교과목학점 및 연구학점
2. 국내·외 대학원의 중퇴자 또는 수료자로서 통합학위과정에 입학한 자의 해당 대학원에서 취득한 교과목 학점
3. 통합학위과정에 재입학한 자가 재입학이전에 취득한 학점

제11조(연구학점) 통합학위과정의 연구학점은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2·

3·4·5·6학기에 각각 2학점씩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11.30., 2012.8.17>

제12조(연구계획서 제출 및 변경) 삭제<2013.12. 2.>

제13조(학위청구논문의 제출자격시험) ① 외국어시험은 재학 중인 학생 및 수료자가 응시하되, 재학생은 등록회수와 취득학점에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10.11.30>

② 종합시험은 6회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한 당해 학기 수료예정자 및 수료자로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12.8.17.>

③ 제2항의 당해학기 수료예정자라 함은 당해 학기말에 수료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학기말에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응시한 종합시험은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10.11.30>

제14조(학위청구논문의 제출자격) 통합학위과정 학위논문 제출자격은 6회 이상 정규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0.11.30., 2012.8.17>

1.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2. 통합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교과목 학점과 연구학점 10학점 및 연구윤리 1학점 이상 취득한 자.<개정 2012.8.17., 개정 2013.12. 2.>
3. 삭제<2013.12. 2.>

제15조(통합학위과정의 중도 퇴학자에 대한 수료 및 학위수여) ① 통합학위과정을 중도에 포기하고 퇴학 하는 자가 대학원 학칙에 의하여 석사학위과정 수료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석사학위과정 수료로 인정하고, 석사학위 수여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석사과정으로 수료하고자 하는 자는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및 석사과정수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시 박사과정 이수를 원할 경우 신입학하여야 한다.<개정 2010.11.30., 2012.8.17>

② 삭제<개정 2013.12. 2.>

제16조(박사과정 인정) ① 통합학위과정 4학기 이상 이수하고, 교과목학점 24학점이상 및 연구학점 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박사과정재학으로 인정 한다.<개정 2010.11.30>

② 제1항의 통합학위과정 학생에게는 학적관련 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경우 박사과정 재학 중인 자로 증명한다.<개정 2010.11.30>

제17조(학사관리) ① 통합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는 석사와 박사학위교육과정이 통합된 별도의 단일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과과정 이수, 학위청구논문제출 및 심사 등 학사에 관한 제반사항은 대학원학칙 및 대학원학칙시행세칙에 규정된 관련조항을 적용한다.

제17조의 2(등록금) 통합학위과정의 입학금은 박사과정의 입학금으로 하고, 수업료는 박사과정 수업료로 한다.<신설 2010.11.30.> <개정 2012.8.17.>

제18조(기타사항)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개정 2010.11.30.>

부 칙 (2008.1.18)

제 1 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1.30)

제 1 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개정 내규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개정 내규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한다.

부 칙 (2012. 8.17)

제 1 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석·박사통합학위과정 수업연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내규는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 12. 2)

제 1 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연구윤리학점 취득 신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 및 제14조의 연구윤리학점 취득에 관한 개정 내규는 2014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3. 명예박사학위 추천에 관한 내규

개정 2017. 2. 16. 기획위원회

제 1 조(목적) 이 내규는 영남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대학원 학칙 제40조에 규정한 명예박사학위 수여자 추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5.21.>

제 2 조(추천대상) ① 명예박사학위 수여의 추천대상자(이하 “추천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개정 2014.5.21.>

1. 학술 발전에 특별한 공적(헌)이 있는 자
2. 인류문화 발전에 지대한 공헌(적)을 한 자
3. 학문, 사회, 예술 등 각 분야의 발전에 특별한 공적(헌)이 있는 자
4. 우리 대학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개정 2014.5.21.>

② 제1항의 추천대상자로서 정부포상업무지침의 포상추천 제외 대상자(별표 1)에 해당되는 자는 추천할 수 없다.<개정 2014.5.21.>

제 3 조(추천절차) ① 우리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교무위원, 일반대학원장은 명예박사학위 수여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이하“추천자”라 한다)가 될 수 있다.<개정 2014.5.21.>

② 제1항의 추천자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교무위원인 경우에는 추천 대상자의 이력서와 명예박사학위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및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수여학위 관련 학과를 경유하여 제출하고, 일반대학원장인 경우에는 명예박사학위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바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5.21., 2014.10.22.>

③ 제2항의 수여학위 관련 학과 경유시에는 학과회의록을 첨부하여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5.21.>

제 4 조(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명예박사학위 수여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교학부총장, 행정부총장, 대학원장, 수여학위 관련 대학(부)장, 교무처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이 된다.<개정 2014.5.21., 2017.2.21.>

제 5 조(추천위원회의 기능) ① 추천위원회는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서류를 바탕으로 추천대상자에 대한 학위 수여 적격 여부를 심의하고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해 추천한다.<개정 2014.5.21.>

② 추천위원장은 추천대상자에 대한 명예박사학위 심의요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대학원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개정 2014.10.22.>

제 6 조(업무)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대학원 행정실에서 관장한다.

부 칙 (2011.1.24)

제 1 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5.21.)

제 1 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4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0.22.)

제 1 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16.)

제 1 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7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부포상 추천제외 대상자〉

1.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4. 기타 각종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등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4.10.22.>

명예박사학위 추천서

(학위명 :)

성 명	한글		한문		영문	
생년월일						
주 소						

첨부자료 :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년 월 일

추 천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명예박사학위 추천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4.10.22.>

명예박사학위 공적조서

(학위명 :)

성 명	한글		한문		영문	
주민등록번호				국 적 (외국인 경우)		
주 소						
최 종 학 력						
현직업·근무지						

※ 가능한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되 3장 이내 작성

년 월 일

작 성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4.10.22.>

명예박사학위 심의요청서

(학위명 :)

성 명	한글		한문		영문	
생 년 월 일						
주 소						

첨부자료 : 1. 추천위원회 회의록 1부
2. 학위수여명 관련학과 교수회의록 1부
3. 추천서 1부
4. 공적조서 1부
5. 이력서 1부

년 월 일

명예박사학위추천위원장 (인)

대학원위원회 위원장 귀하

4. 대학원 연구생 등록에 관한 지침

개정 2016.01.26 대학원운영위원회

제 1 조(목적) 영남대학교 대학원 각 학위과정 수료자에게 학술·학위논문 연구, 교비·외부 연구과제(이하 "연구과제"라 한다.) 및 정부지원 사업 참여와 학위논문 청구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학적을 부여하고자 연구생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등록자격) 연구생의 등록은 석사, 박사 학위과정 수료자로서 제 1 조의 목적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 3 조(등록대상) 연구생의 등록대상은 등록의 목적에 따라 구분하고 등록대상자별 등록이행 및 등록학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table>
<tr><th colspan="2">등록대상</th><th>등록이행</th><th>등록학기</th></tr>
<tr><td colspan="2">학술·학위 논문 연구자</td><td>자율등록</td><td>수료자가 필요로 하는 학기</td></tr>
<tr><td rowspan="2">연구과제 및 정부지원사업 참여자</td><td>• 국가연구개발사업
• 정부지원인력양성사업</td><td>의무등록</td><td rowspan="2">사업 및 과제참여 학기</td></tr>
<tr><td>• 국가연구용역사업
• 지자체등공공기관 및 민간연구사업
• 교비연구과제</td><td>자율등록</td></tr>
<tr><td colspan="2">학위논문청구자</td><td>의무등록</td><td>학위논문청구 학기</td></tr>
</table>

제 4 조(학적보유) 연구생의 학적은 연구생 등록학기에만 부여한다.

제 5 조(등록비) 연구생의 학기당 등록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학위논문 청구자는 등록비 외 논문심사료를 별도 납입하여야 한다.

구 분	등 록 비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150,000원
자연계열	200,000원

제 6 조(등록절차) ① 연구생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생 등록 신청을 학생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하고, 연구생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출력하여 제7조에 정한 기간내에 해당 학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비는 연구생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표기된 계좌로 등록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7 조(등록기간) 연구생의 등록기간은 매학기 개시일부터 수업 1/4선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의 등록 대상자에 대하여는 등록 요건이 발생하는 시기에 등록할 수 있다.

구 분	등 록 기 간
연구과제 또는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과제(사업) 신청서 제출기간 또는 과제(사업) 선정 후 과제(사업) 만료 이전 기간
학위논문 청구자	대학원에서 정한 학위 청구논문 제출기간

제 8 조(중복등록대상자에 대한 등록비 수납) ① 동일 학기에 2종류 이상(중복)의 등록 대상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비는 중복수납하지 않는다.

② 제 1 항에 따라 당초(신규)등록시에 중복 등록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등록비를 수납하며 또는 당초(신규)등록시에는 하나의 등록대상자로 등록한 후 또다른 등록대상자로 추가 등록하는 경우에 추가 등록비는 수납하지 않는다.

제 9 조(등록취소) ① 연구생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생 등록취소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생 등록 취소자에 대하여는 등록비 전액을 환불한다.
다만, 등록 후 취소신청서 제출 기간까지 등록비 상당의 수혜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비를 환불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수혜사항) 연구생 등록자에 대하여는 다음각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1. 연구과제 및 정부 지원사업 참여(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2. 대학원생 학술연구활동 경비 지원(대학원 행정실)
3. 대학원 열람실 이용(대학원 열람실)
4. 대학원 연구생 증명서 발급(종합봉사센터)
5. 도서관 이용 및 도서대출(중앙도서관)
6. 정보전산원 전자시스템 이용자격부여(정보전산원)
7. 실험실습실 이용(학과사무실)
8. 교내 주차공간 이용(주차관리소)
9. 이공계 연구생 상해보험 가입(시설관리처)

제11조(연구생 제적) 연구생 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거나 처분을 받은 때에는 제적처리한다. 이 경우 등록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1. 연구생으로서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
2. 지도교수가 연구생 추천을 철회하였을 때

제12조(수입금 운영) ① 연구생에 대한 학사관리 업무비, 연구생의 학교시설 이용비, 연구 및 논문 지도를 위한 지도교수 지도비 등 경비운용을 위해 등록비 수입금을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② 제1항의 지도교수 지도비는 대학원에서 매 학기말에 개별적으로 일괄 지급한다.

배분대상	배 분 목 적	배분율	비 고
학 교	학교 시설 이용	30%	교내기관 간접관리비 기준
대 학 원	학사 업무 관리	20%	
지도교수	연구 및 논문 지도	50%	

제13조(보칙) 연구과제 및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또는 학위논문청구자가 연구생 등록을 하는 자는 해당 등록학기 내에서 학술·학위논문 연구자로서 연구생 등록도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 4. 1)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3. 10)

제 1 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외국어시험, 종합시험에 응시만을 위한 수료자에 대하여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개정 지침 시행일 전에 연구과제 또는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료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구기간 또는 당해 사업기간 만료일까지 연구생 등록을 예외로 한다.

부 칙 (2014. 8. 20)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 26)

제 1 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6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년 학기 대학원 연구생 등록 신청서

<table>
<tr><td>수 료 과 정</td><td colspan="2">학위과정</td><td>수료연도</td><td colspan="2">년 월</td></tr>
<tr><td>수 료 학 과</td><td colspan="2"></td><td>수료전공</td><td colspan="2"></td></tr>
<tr><td>성 명</td><td colspan="2"></td><td>학 번</td><td colspan="2"></td></tr>
<tr><td>생 년 월 일</td><td colspan="2"></td><td>전화(H·P)</td><td colspan="2"></td></tr>
<tr><td>지도교수1</td><td>소 속</td><td></td><td>성 명</td><td colspan="2"></td></tr>
<tr><td>지도교수 2</td><td>소 속</td><td></td><td>성 명</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등 록 대 상</td><td colspan="3">구 분</td><td colspan="2">신청 여부</td></tr>
<tr><td colspan="3">1. 학술·학위 논문 연구자
2. 연구과제 또는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3. 학위 논문 청구자</td><td colspan="2">( )
( )
( )</td></tr>
<tr><td rowspan="5">교수연구과제
또는
정부지원사업
참여자인경우</td><td colspan="2">과제또는사업명</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지 원 기 관 명</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연구(사업)기간</td><td colspan="3"></td></tr>
<tr><td>연구(사업)책임자</td><td>소속</td><td></td><td>성명</td><td></td></tr>
<tr><td colspan="2">참 여 기 간</td><td colspan="3">년 월 일 ~ 년 월 일</td></tr>
<tr><td rowspan="3">연구생등록</td><td colspan="2">납부금액</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등록기간</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납부계좌</td><td colspan="3"></td></tr>
</table>

위와 같이 연구생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지 도 교 수 : (인)

학과 주임교수 귀하

① 등록대상 1, 2, 3 전부 또는 선택하여 등록을 하되 등록대상 2 또는 3을 선택하는 자는 등록대상 1도 동시 등록한다.

② 지도교수가 2명인 경우 지도교수 2명 모두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년 학기 대학원 연구생 등록 취소 신청서

<table>
<tr><td>수료과정</td><td colspan="2">석사( ), 박사( )</td><td>수료연도</td><td colspan="2">년도 학기</td></tr>
<tr><td>수료학과</td><td colspan="2"></td><td>수료전공</td><td colspan="2"></td></tr>
<tr><td>성 명</td><td colspan="2"></td><td>학 번</td><td colspan="2"></td></tr>
<tr><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d>전화(H·P)</td><td colspan="2"></td></tr>
<tr><td>지도교수</td><td>소 속</td><td colspan="2"></td><td>성 명</td><td></td></tr>
<tr><td colspan="6">등록사항 및 취소사유</td></tr>
<tr><td rowspan="4">등록대상
※해당란에 V표</td><td colspan="3">구 분</td><td>등록대상</td><td>취소대상</td></tr>
<tr><td colspan="3">1. 학술·학위 논문연구자</td><td>( )</td><td>( )</td></tr>
<tr><td colspan="3">2. 연구과제 또는 정부지원사업 참여자</td><td>( )</td><td>( )</td></tr>
<tr><td colspan="3">3. 학위논문 청구자</td><td>( )</td><td>( )</td></tr>
<tr><td>취소사유</td><td colspan="5"></td></tr>
</table>

위와 같이 연구생 등록을 취소 하고자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지 도 교 수 : (인)

학과주임교수 : (인)

대학원장 귀하

5. 일반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지침

개정 2019. 12. 23 대학원운영위원회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학원 학칙 제6장 학위수여에 관하여 일반대학원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위논문의 구분) 일반대학원의 학위논문은 석사학위논문과 박사학위논문으로 구분한다.

제3조(지도교수 제청) ①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은 과정이수 2기 수업일수 1/4선까지, 박사학위과정은 과정이수 1기 수업일수 1/4선까지 논문지도교수 제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교내 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재직 중이어야 하며 1인 제청을 원칙으로 하되, 논문지도상 부득이한 경우 공동지도교수를 제청할 수 있다.<개정 2017.6.21.>

③ 공동 지도교수는 우리대학교 전임교원, 명예교수, 객원교원, 겸임교원, 타대학교 교원, 교외연구소 연구원 등 중에서 제청할 수 있다.<개정 2017.6.21.>

④ 명예교수의 지도교수 제청은 명예교수 임용 후 5년까지 가능하다.

제4조(지도교수 변경) ① 제청된 지도교수가 해외 연구년제, 퇴직 및 휴직, 교환 및 기타 사유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매학기 초(수업일수 1/4선 까지) 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6.15., 2016.7.7.>

② 수료자가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지도교수 변경원을 대학원에 제출하여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지도교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지도교수 또는 대학원생이 해당 학과에 요청할 수 있고, 해당학과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대학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7.8.24.>

제5조(논문 제출자격 및 시기)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당해학기 수료예정자 및 수료자에 한하며, 각 학과 내규로 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라야 한다. 단, 수료자는 당해학기에 연구생으로 등록한 자여야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 신청 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매 차수별 신청 마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만 유효하다.<개정 2016.6.15.>

학기 차수	신청 기간	공개발표 기간	결과보고서 제출	완성본 제출	학위증명서 발급	대상자
1-1	3.1 - 3.3	3.11 - 3.31	3.31	4.13 - 4.15	4.30	수료자
1-2	5.1 - 5.3	5.15 - 6.20	6.30	7.15 - 7.18	8.22	수료예정자, 수료자
2-1	9.1 - 9.3	9.11 - 9.30	9.30	10.13 - 10.15	10.31	수료자
2-2	11.1-11.3	11.15-12.20	12.31	1.15 - 1.18	2.22	수료예정자, 수료자

※ 신청 및 제출기간에 토·일 및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제6조(논문 제출 신청서류) 학위청구논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료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신청서, 학위청구논문 추천 및 심사위원제청서, 학위논문 연구윤리준수서약서(대학원 행정실 제출)

② 심사용 학위청구논문을 석사학위과정 3부, 박사학위과정 5부(각 학과 제출)

③ 심사료는 석사 100,000원, 박사 360,000원이며, 수료생은 반드시 연구생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7조(논문 제출 취소 및 연기) ① 논문 제출을 신청한 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학위청구논문심사 미발표자 심사료 반환 요청서' 또는 '학위청구논문심사기간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제출 취소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심사료 전액을 환불한다.

③ 논문제출 연기는 다음 차수로 1회에 한하며, 다음 차수에도 논문발표 및 심사요지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 신청 차수의 학위청구논문은 불합격 처리하고 심사료는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14.7.23.>

④ 삭제<2014.7.23.>

제8조(논문 심사) ① 학위논문의 심사는 해당 전공의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이 하되,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3인 이상,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석사학위 논문 심사위원 중 1인, 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 중 2인까지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외부 심사위원을 추가적으로 위촉할 경우(석사학위는 2인이내, 박사학위는 3인이내)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12.23.>

② 논문심사는 매차수별 공개발표를 포함하여 석사 2회 이상, 박사 3회 이상 심사하여야 한다.

③ 학위청구논문 심사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석사학위청구논문은 심사위원 3분의2 이상, 박사학위 청구논문은 심사위원 5분의4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

④ 차수별 결과보고서 제출 마감까지 '결과보고 및 심사요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개정 2014.7.9.>

⑤ 수료생은 결과보고서 제출이 연기되어 학기가 바뀔 경우 연기된 다음 학기에도 연구생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9조(논문 심사위원) ① 논문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 중에서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1. 교내·외 대학 전임교원
2. 퇴직 후 5년 이내인 교내·외 퇴직 전임교원
3. 박사학위 취득(단, 예·체능계열은 예외)한 후 2년이 경과한 자로서 교내·외 대학 비전임교원 또는 '심사위원자격인정승인원'에 의해 대학원장이 승인한 해당분야의 권위자

② 학위청구논문의 지도교수 및 외부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 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단, 심사위원이 질병, 외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학과주임교수의 제

청을 받아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④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시 대학원 학위논문 연구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논문 제목) 삭제<2016.06.15.>

제11조(논문 제목 변경) 삭제<2016.6.15.>

제12조(연구생등록) ① 대학원 수료자로서 당해학기 학술활동 및 학위논문 연구자, 연구과제 및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학위논문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생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연구생등록비는 인문·사회·예체능계열은 150,000원, 자연·공학·의학계열은 2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학위논문 청구자가 학위논문 제출신청 연기를 한 후 학기가 바뀌면 바뀐 학기에도 연구생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삭제<2016.6.15.>

제13조(논문작성 언어) ① 학위청구논문 작성 언어는 제한이 없으나, 국문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1종의 외국어로 된 초록을 첨부하고, 외국어로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국문으로 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3.>

제14조(학위논문 완성본 제출) ①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위청구자는 최종 완성된 학위논문 완성본 5부(소프트 표지, 심사위원 날인 원본 1부 포함)를 제출하고, 공법, 사법학과는 7부를 제출한다.

② 학위논문 완성본의 전문이 수록된 컴퓨터파일과 학위논문저작권동의서를 소정의 기간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6.15.>

③ 학위청구논문 완성본을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못할 경우 다음 차수로 1회 연기할 수 있으며, 수료생은 학위청구논문 완성본 제출이 연기되어 학기가 바뀔 경우 연기된 다음 학기에도 연구생등록을 하여야 하고, 다음 차수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현 신청 차수의 학위청구논문은 불합격 처리한다.

제15조(학위수여) ① 각 학위과정별로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자에게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을 중도에 포기하고 퇴학한 자가 석사학위의 수여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16조(학위수여의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수여 받은 경우에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관련 학사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13.12.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7.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7.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6.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와 제14조의 개정 지침은 201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7.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6.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8.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0.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7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일반대학원 장학금 지급 지침

개정 2020. 1. 28.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영남대학교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장학금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일반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교내 및 교외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 3 조(지급재원) 장학금 재원은 교내 및 교외에서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매 학기 입학금, 수업료 징수액의 일부 금액
2. 대학에서 조성한 특정 재원에서 지급하는 금액
3. 교외(국가, 장학단체, 개인 등)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
4. 그 밖의 장학금

제 4 조(장학금의 종류) ① 장학금은 교내장학금(면학장학, 강의조교장학, 시설및실험조교 장학, 천마장학, 학·석사연계과정장학, 외국인장학 등) 및 교외장학금, 특별장학금 등으로 한다. 교내장학 중 면학장학, 강의조교장학, 외국인장학은 경제적인 문제로 학업 지속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지원하는 것을 그 주요 목적으로 한다.

② 특별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따로 정한다.

제 5 조(자격)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직업이 없는 전일제 학생으로서 교수의 연구보조 및 교육보조를 하는 사람
2.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계가 곤란한 사람
3. 해당 학기 중 근로를 희망하여 선발된 사람
4. 수혜조건이 지정된 장학금은 그 요건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 6 조(선발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직전학기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2. 휴학 또는 취업 중인 사람
3. 수업연한을 초과한 사람
4. 학생의 신분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 7 조(이중수혜금지)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장학금 중복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8 조(확인서 등의 발급) 장학금 수혜자가 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장학금 종류에 따라 장학생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 9 조(면학장학) ① 면학장학은 각 과정별 수업연한 내의 내국인 학생 전원에게 선학비 감면되는 장학금을 말한다.

② 면학장학률은 수업료의 35%이다.

제10조(강의조교장학) ① 강의조교장학은 교수의 강의, 실험을 보조하기 위하여 학과에서 추천하여 임용된 대학원생에게 지급한다.

② 강의조교의 장학종류 및 지급 내역은 [표1]와 같으며, 강의조교장학의 재원은 해당 학기 등록학생 수에 비례하여 [표2]의 방식으로 각 학과에 배정한다.

〔표1 : 장학종별 선발기준 및 지급 내역〕

장학구분	조교 의무시간	면학장학 35%			교재비	비 고
		기본 감면	장학금	계		
강의조교장학1	주10시간	35%	65%	100%		전일제 학생으로 조교 근무가 가능한 자 중에서 가계곤란자 우선 추천(50%이상)
강의조교장학2	주7.5시간	35%	40%	75%		
강의조교장학3	주5시간	35%	15%	50%		
천마장학 A	주10시간	35%	65%	100%	월20만원	2012-1학기 이전 입학자에 한하여 교재비 지급
천마장학 B	주7.5시간	35%	40%	75%		2012-2학기 이후 입학자 부터
			65%	100%		2012-1학기 이전 입학자 까지
교육시설조교	주10시간	35%	65%	100%		
실험조교	주10시간	35%	65%	100%		

〔표2 : 강의조교 배정액 산정방법〕

⊙ 학과 장학금 배정액 : 1인당 수업료 × 0.09 × 배정 대상 인원

⊙ 대학원 등록금 재정 배분 기준(입학금 제외)

구분	본부운영비	대 학 원 장 학 금			합계
		면학장학률	학과배분	계	
배정률	56%	35%	9%	44%	100%

⊙ 배정 대상 인원

구 분	배 정 대 상 인 원
재학생	다음 학기 재학 예정자(현재학기 3/4선 재학생 인원)
신입생	다음 학기 입학 예정자(입학 등록생 인원)

※ 배정대상 인원에는 외국인, 천마장학생, 수료예정자 및 졸업예정자, 초과학기자, 휴·복학생 제외

③ 강의조교 추천대상은 교육부의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전일제 학생으로 조교 근무가 가능한 자 중에서 가계 곤란자 50%이상 우선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강의조교 추천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학과추천대상에서 외국인, 천마장학생, 수료생, 초과학기 대상자(학점단위 등록생 포함), 휴학생, 비전일제 학생 등은 제외한다.

1. 장학사정조서
2. 조교임용추천서
3. 이력서(신규자)
4.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여부 등 확인)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분) 1부.
   - 추천 학생이 지역세대(주)원인 경우 : 학생 본인
   - 추천 학생이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 학생을 부양하는 사람

⑤ 강의조교 장학생은 학부(과)의 강좌 및 실험실습 교수의 지도에 따라 매주 10시간 내외 수업지원·실험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보조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및실험조교장학) ① 시설조교는 별도 배정 현황에 따라 대학 및 기관에서 선발하고 조교임용추천서를 기한 내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실험조교는 기초과학분야 실험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의 실험을 위하여 이과대학 기초실험실별로 배정된 현황에 따라 이과대학 행정실에서 선발하고, 조교 임용추천서를 기한 내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제12조(천마장학 등) ① 천마장학의 지급기준은 [표3]과 같으며, 천마장학생은 매학기 평점평균 3.75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3.75 미만 시 다음 학기 천마장학금 지급 중단하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다.

1.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2개 학기 이상 3.75 미만인 자.
2. 재학기간에 이수과목중 한 과목 이상의 C 학점 이하 취득한 자(연구윤리 NP포함).
3. 휴학자(군복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휴학자는 예외) 또는 자퇴자.

〔표3 : 천마장학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기 준	
	2013학년도 입학생 까지	2014학년도 입학생 부터
천마장학 A	학부 졸업 성적 평점평균 4.0 이상 이면서 졸업석차가 소속학과(학부), 전공의 10% 이내인 자로서 전일제 학생	학부 졸업 석차가 소속학과(학부), 전공의 5% 이내인 자로서 전일제 학생
천마장학 B	학부 졸업 성적 평점평균 3.75 이상 이면서 졸업석차가 소속학과(학부), 전공의 15% 이내인 자로서 전일제 학생	폐 지

② 학부과정에서 박정희리더십장학금, 21세기천마특별장학금(A 및 의예과)을 수혜 받은 졸업생이 석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수업연한 내에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 지급 자격은 제12조 1항과 같다. 단, 학사과정 졸업 후 2년 내에 대학원 입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혜자격을 상실한다.

제13조(학석사연계과정장학)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입학금을 면제한다.

제14조(외국인장학) ① 외국인학생으로 입학한 자에게 각 과정별 수업연한 내에 외국인 장학금을 지급하며 자격대상 및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외국인 학생은 매 학기 장학금 신청서를 해당 학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의료보험 미가입자는 장학 수혜가 불가능하다.

③ 외국인장학 50~100% 수혜자가 당해학기 C학점 이하(연구윤리 NP포함) 취득한 과목이 있는 경우 또는 평점평균이 3.0 미만인 경우, 다음 학기는 최대 장학 30% 까지만 수혜 가능하다.

④ 외국인장학 50~100% 수혜자는 학부(과)의 강좌 및 실험실습 교수의 지도에 따라 매주 10시간 내외 수업지원·실험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보조하여야 한다.

⑤ 한국어 능력 우수자 특별 장학금 : 토픽 6급 소지자로서 우리 대학에서 석사를 졸업하고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경우, 지도교수의 추천 및 대학원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100%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박사 논문은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기 지급한 장학금을 전액환수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조치를 취한다.

제15조(교외장학) 교외 장학금의 지급기준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다만, 장학금 지급기관 또는 개인이 장학금 지급대상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16조(특별장학)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금 장학재원으로 지급하며 대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학원 총학생회 회장
2. 열람실장 및 총무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유의사항) ① 조교는 시간강사로 임용될 수 없으며, 시설관리처 환경설비팀에서 주관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조교로 임용된 대학원생이 휴학 등의 사유로 학적변동이 있을 경우 수혜 받은 장학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③ 강의조교, 천마장학, 교육및시설조교는 학과 및 기관에서 각 장학별 근무시간만큼 활용하고,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한 학기 보관한다.

부 칙 (2015. 2. 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9. 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4. 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6. 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 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8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8. 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9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 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20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 외국인장학 종류 및 기준]

<table>
<tr><th rowspan="2">장학
종류</th><th colspan="4">자격 대상 및 기준</th></tr>
<tr><th>2016-1학기 신입생까지 적용</th><th>2016-2학기 신입생부터 2017-1학기 신입생까지 적용</th><th>2017-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th><th>2020-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th></tr>
<tr><td>장학
100
%</td><td>외국인 의로보훈 가입자로서 아래 각 항에 해당 되는 자
1. 어학성적 기준
<table><tr><th colspan="4">영어</th><th colspan="3">한국어</th></tr><tr><th colspan="3">TOEFL</th><th rowspan="2">TOEIC</th><th rowspan="2">TEPS</th><th rowspan="2">IELTS</th><th rowspan="2">KLAT</th><th rowspan="2">TOPIK</th></tr><tr><th>IBT</th><th>CBT</th><th>PBT</th></tr><tr><td>61</td><td>173</td><td>500</td><td>650</td><td>550</td><td>5.5</td><td>4급</td><td>4급</td></tr></table>2. 영어가 국어인 국가의 학생
3. 영어공용국가 출신으로 대학 4년간 영어로 교육받은 자
4. 외국대학 전임교원 및 해당 국가기관 연구소 연구원</td><td>학과 추천을 받은 자로서, 아래 <어학성적 기준> 중 1개 이상 해당자이거나 아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해당자
<어학성적 기준>
<table><tr><th colspan="4">영어</th><th colspan="3">한국어</th></tr><tr><th colspan="3">TOEFL</th><th rowspan="2">TOEIC</th><th rowspan="2">TEPS</th><th rowspan="2">IELTS</th><th rowspan="2">KLAT</th><th rowspan="2">TOPIK</th></tr><tr><th>IBT</th><th>CBT</th><th>PBT</th></tr><tr><td>80</td><td>210</td><td>550</td><td>700</td><td>600</td><td>6</td><td>5급</td><td>5급</td></tr></table><자격요건>
1. 영어가 국어인 국가의 학생
2. 영어공용국가 출신으로 대학 4년간 영어로 교육받은 자
3. 외국대학 전임교원 및 해당 국가기관 연구소 연구원</td><td>학과 추천을 받은 자로서 아래 <어학성적 기준> 중 1개 이상 해당자
<어학성적 기준>
<table><tr><th colspan="4">영어</th><th colspan="3">한국어</th></tr><tr><th colspan="3">TOEFL</th><th rowspan="2">TOEIC</th><th rowspan="2">TEPS</th><th rowspan="2">IELTS</th><th rowspan="2">KLAT</th><th rowspan="2">TOPIK</th></tr><tr><th>IBT</th><th>CBT</th><th>PBT</th></tr><tr><td>95</td><td>240</td><td>590</td><td>800</td><td>700</td><td>7</td><td>6급</td><td>6급</td></tr></table></td><td>학과 추천을 받은 자로서 아래 <어학성적 기준> 중 1개 이상 해당자
<어학성적 기준>
<table><tr><th colspan="4">영어</th></tr><tr><th colspan="3">TOEFL</th><th rowspan="2">TOEIC</th><th rowspan="2">TEPS</th><th rowspan="2">IELTS</th></tr><tr><th>IBT</th><th>CBT</th><th>PBT</th></tr><tr><td>95</td><td>240</td><td>590</td><td>800</td><td>700</td><td>7</td></tr></table></td></tr>
<tr><td>장학
70%</td><td>-</td><td>-</td><td>학과 추천을 받은 자로서 아래 <어학성적 기준> 중 1개 이상 해당자
<어학성적 기준>
<table><tr><th colspan="4">영어</th><th colspan="3">한국어</th></tr><tr><th colspan="3">TOEFL</th><th rowspan="2">TOEIC</th><th rowspan="2">TEPS</th><th rowspan="2">IELTS</th><th rowspan="2">KLAT</th><th rowspan="2">TOPIK</th></tr><tr><th>IBT</th><th>CBT</th><th>PBT</th></tr><tr><td>80</td><td>210</td><td>550</td><td>700</td><td>600</td><td>6</td><td>5급</td><td>5급</td></tr></table></td><td>학과 추천을 받은 자로서 아래 <어학성적 기준> 중 1개 이상 해당자
<어학성적 기준>
<table><tr><th colspan="4">영어</th></tr><tr><th colspan="3">TOEFL</th><th rowspan="2">TOEIC</th><th rowspan="2">TEPS</th><th rowspan="2">IELTS</th></tr><tr><th>IBT</th><th>CBT</th><th>PBT</th></tr><tr><td>80</td><td>210</td><td>550</td><td>700</td><td>600</td><td>6</td></tr></table></td></tr>
<tr><td>장학
50%</td><td>-</td><td>학과 추천을 받은 자로서 아래 <어학성적 기준> 중 1개 이상 해당자
<어학성적 기준>
<table><tr><th colspan="3">영어</th><th rowspan="2">TOEIC</th><th rowspan="2">TEPS</th><th rowspan="2">IELTS</th><th colspan="2">한국어</th></tr><tr><th colspan="3">TOEFL</th><th rowspan="2">KLAT</th><th rowspan="2">TOPIK</th></tr><tr><th>IBT</th><th>CBT</th><th>PBT</th></tr><tr><td>61</td><td>173</td><td>500</td><td>650</td><td>550</td><td>5.5</td><td>4급</td><td>4급</td></tr></table></td><td>학과 추천을 받은 자로서, 아래 <어학성적 기준> 중 1개 이상 해당자이거나 아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해당자
<어학성적 기준>
<table><tr><th colspan="4">영어</th><th colspan="3">한국어</th></tr><tr><th colspan="3">TOEFL</th><th rowspan="2">TOEIC</th><th rowspan="2">TEPS</th><th rowspan="2">IELTS</th><th rowspan="2">KLAT</th><th rowspan="2">TOPIK</th></tr><tr><th>IBT</th><th>CBT</th><th>PBT</th></tr><tr><td>61</td><td>173</td><td>500</td><td>650</td><td>550</td><td>5.5</td><td>4급</td><td>4급</td></tr></table><자격요건>
1. 영어가 국어인 국가의 학생
2. 영어공용국가 출신으로 대학 4년간 영어로 교육받은 자</td><td>학과 추천을 받은 자로서, 아래 <어학성적 기준> 중 1개 이상 해당자이거나 아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해당자
<어학성적 기준>
<table><tr><th colspan="4">영어</th><th colspan="3">한국어</th></tr><tr><th colspan="3">TOEFL</th><th rowspan="2">TOEIC</th><th rowspan="2">TEPS</th><th rowspan="2">IELTS</th><th rowspan="2">KLAT</th><th rowspan="2">TOPIK</th></tr><tr><th>IBT</th><th>CBT</th><th>PBT</th></tr><tr><td>61</td><td>173</td><td>500</td><td>650</td><td>550</td><td>5.5</td><td>5급,
6급</td><td>5급,
6급</td></tr></table><자격요건>
1. 영어가 국어인 국가의 학생
2. 영어공용국가 출신으로 대학 4년간 영어로 교육받은 자</td></tr>
<tr><td>장학
30%</td><td>1. 장학 100% 대상자가 아닌 자 및 학과 미추천자
2. 직전학기 이수한 성적에 C학점 이하 취득이 한 과목이라도 있는 자 또는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0 미만인 자</td><td><신입생>
장학 100% 또는 50% 대상자가 아닌 자 중 학과 추천자
<재학생>
장학 100% 또는 50% 대상자 중 직전학기 이수한 성적에 C학점 이하 취득이 한 과목이라도 있는 자 또는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0 미만인 자</td><td><신입생>
장학 100%, 70%, 50% 대상자가 아닌 자 중 학과 추천자
<재학생>
장학 100%, 70%, 50% 대상자 중 직전학기 이수한 성적에 C학점 이하 취득이 한 과목이라도 있는 자 또는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0 미만인 자</td><td>학과 추천을 받은 자로서, 아래 <어학성적 기준> 해당자이거나 아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해당자
<어학성적 기준>
<table><tr><th colspan="2">한국어</th></tr><tr><th>KLAT</th><th>TOPIK</th></tr><tr><td>4급</td><td>4급</td></tr></table><신입생>
장학 100%, 70%, 50% 대상자가 아닌 자 중 학과 추천자
<재학생>
장학 100%, 70%, 50% 대상자 중 직전학기 이수한 성적에 C학점 이하 취득이 한 과목이라도 있는 자 또는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0 미만인 자
※ 장학 30% 대상자 중 직전학기 이수한 성적에 C학점 이하 취득이 한 과목이라도 있는 자 또는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0 미만인 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td></tr>
</table>

※ 매 학기 학과심사에 따라 장학지급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7. 대학원생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지침

제정 2016. 6. 16 대학원위원회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영남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대학원 학생이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학문적 진실성을 유지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6.16.>

제 2 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우리 대학교 대학원에 재적생 또는 수료생의 논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논문의 저자 중, 우리대학교 교직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 연구 윤리 주관부서로 이관한다.<개정 2016.6.16.>

제 3 조(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우리 대학교 대학원 학생은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학문의 자유에 기초하여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논문이 장기적으로 인류사회에 영향을 미침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개정 2016.6.16.>

제 4 조(연구윤리준수) 대학원생은 학문의 기초와 창의적 연구를 통해 학문적 진실에 입각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조, 변조, 표절, 대필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6.6.16.>

제 5 조(용어의 정의) 제4조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의 재료·장비·과정 및 조사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추가·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대필”이라 함은 논문의 제목, 목차설정, 논문내용, 자료의 분석 및 정리 등 논문 대부분을 타인에 의존하여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6 조(소관위원회 및 기능) 대학원위원회는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6.6.16.>

1. 대학원생의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3.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7 조(연구윤리준수서약서 제출)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하는 자는 연구 윤리를 준수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별지 제1호)를 작성하고,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학위청구논문 제출 기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논문 진실성 검증) ① 논문의 부정행위는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 및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6.16.>

② 대학원장은 제보접수일로부터 30일내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부정행위가 사실인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및 우리 대학교 이외의 외부위원 30%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장은 일반대학원 부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6.6.16.〉

③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내에 조사가 이루어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대학원장은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6.16.〉

④ 대학원장은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에게 예비조사결과 또는 판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학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16.6.16.〉

⑤ 대학원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6.6.16.〉

⑥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6.6.16.〉

제 9 조(검증조치) ① 대학원장은 제8조 제3항의 조사결과보고서를 대학원운영위원회 및 대학원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논문의 부정행위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에 근거하여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결정한다.〈개정 2016.6.16.〉

③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징계 결정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논문 부정행위자등의 징계처분) ① 논문의 부정행위자가 재적생인 경우 대학원 학칙에 따라 징계하고, 수료생인 경우 대학원 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을 박탈한다.〈개정 2016.6.16.〉

② 학위논문 부정행위자의 지도교수에 대하여는 대학원위원회 결정에 따라 3년 이하 지도교수 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이미 논문 지도를 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지도자격은 예외로 인정한다.

③ 학위논문의 부정행위자가 학위를 받은 자인 경우 대학원 학칙에 따라 총장은 학위수여를 취소한다.

제11조(적용범위)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에 의한다.

부 칙 (2010.12.7)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6.16)

제 1 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6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학위과정		학과		전공	
학적상태		학번		성명	

본인은 영남대학교 대학원생으로서 학위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연구윤리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학위논문 작성에 위조, 변조, 표절, 대필 등의 학위논문 부정행위가 밝혀질 때에는 「대학원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학위취소 처분 등 대학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인)

본인은 위 학생의 지도교수로서 학위논문을 지도함에 있어서 연구윤리에 입각하여 철저히 지도할 것이며, 「대학원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지침」에 따라 책무를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지도교수 : (인)

영남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8. 대학원 박사과정 미술치료사 자격증 수여에 관한 지침

제정 2010. 7. 27 대학원운영위원회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대학원 박사과정 미술치료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수여자격, 자격기준 및 수여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수여자격) 대학원 미술치료학과(이하 "학과"라 한다)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당해 학기 수료예정자로서 미술치료사 자격기준에 합격한 자로 한다.

제 3 조(수여명의) 수여자격은 대학원장이 인정하고 자격증은 총장 명의로 수여한다.

제 4 조(자격기준) 미술치료사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영 역	이수대상	이수기준
기본연수	별표1의 7개영역 교과목	24학점(360시간)
임상실습	현장실습	300시간
집단미술치료	워크샵, 학회, 세미나	50시간
수퍼비전	상담, 지도	30시간
이론시험	종합시험	합격자
사 례	사례1편	합격자
논 문	논문1편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 게재

제 5조 (자격 심사위원) ①자격기준 심사를 위해 학과내에 자격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자격 심사위원은 학과주임교수를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하고 학과주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된다.

③ 심사위원의 자격은 학과 교과목 담당교수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제 6 조(자격기준 심사) ① 자격증을 수여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기준 이수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자격기준 심사제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학과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격 심사는 자격기준 심사 제청서에 의해 영역별 심사를 하고 모든 영역에 각 기준을 충족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합격결정은 각 심사위원의 합의로 정한다.

③ 학과주임교수는 자격기준 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합격자 명부를 작성하고 매학기 학위수여일 15일전에 합격자 명부(합격자심사 제청서 사본 첨부)를 공문으로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자격증 수여) ① 대학원 행정실은 학과주임교수가 제출한 합격자 명부에 의해 자격증 수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자격증(별지 제3호 서식)은 매학기 학위수여일에 수여한다.

부 칙 (2010. 7. 27)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2010년 2월 22일 자격증 수여자에 대하여 이 지침에 의하여 수여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 미술치료사 이수교과목

영 역		이수과목
1	인간행동과 발달	인간관계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발달심리, 아동학, 가족학, 성격이론, 인간학 관련과목
2	정신건강과 정신병리	심리학개론, 감각심리학, 지각심리학, 인지심리학, 이상심리학, 생리심리학, 생물심리학, 신경심리학, 이상행동심리, 정신병리, 정신건강, 정신보건사회복지, 성격심리, 성격이론, 아동정신병리, 심리학 및 정신병리 관련과목
3	상담 및 심리치료이론	상담심리, 상담이론, 가족상담 및 치료, 위기상담, 목회상담, 복지상담, 기독교상담, 재활치료, 재활심리치료, 임상심리,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 및 치료 관련과목
4	미술치료이론과 기법	미술치료기법, 미술치료매체, 집단미술치료, 미술치료개론, 미술치료 관련과목, 예술학 관련과목
5	통계 및 연구방법	단일대상연구법, 실험설계, 통계 및 연구방법, 사회(복지)조사방법론
6	심리검사 및 해석	지능검사, 심리검사, 심리진단 및 평가
7	임상	임상사회사업, 임상사례지도, 사례발표, 슈퍼비젼, 상담 및 치료실습, 현장실습

(별지 제1호 서식)

미술치료사 자격기준 심사 제청서

소 속	학과		전공
수 료 구 분	당해학기 수료예정자( ), 학년도 학기 수료자(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자격기준 실적		
영 역	이수 실적	심사결과
기 본 연 수	( )학점 /( )시간	충족, 미충족
임 상 실 습	( )시간	충족, 미충족
집단미술치료	( )시간	충족, 미충족
슈 퍼 비 젼	( )시간	충족, 미충족
이 론 시 험	종합시험	충족, 미충족
사 례	사례 1편	충족, 미충족
논 문	논문 1편	충족, 미충족

위와 같이 미술치료사 자격기준을 이수하였으므로 심사를 제청합니다.

년 월 일

제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학원 미술치료학과 주임교수 귀하

위 제청인은 미술치료사 자격기준심사에 합격하였음을 인정함.

년 월 일

심사위원장 : 소속 직급 성명 (인)
심사위원 : 소속 직급 성명 (인)
심사위원 : 소속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미술치료사 자격증 수여대장

수여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여일자	학위수료년도
대학원-미술치료 제 0000 호				

(별지 제3호 서식)

대학원-미술치료 제 호

미술치료사 자격증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영남대학교 대학원 미술치료학과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미술치료사 자격 기준에 의한 심사에 합격하여 미술치료사의 자격을 갖추었기에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영남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 ○ ○

위의 인정에 의하여 미술치료사 자격증을 수여함

년 월 일

영남대학교 총 장 ○○○박사 ○ ○ ○

9. 영남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설치 및 운영 지침

개정 2019. 8. 27. 대학원 운영위원회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영남대학교 대학원학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학문연구의 발전과 사회적 수요에 비추어 고유한 교육·연구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학과, 연구기관 및 산업체가 협동으로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하는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및 학·연·산 협동과정(이하 "협동과정"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학위과정) 협동과정에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을 둔다.

제 3 조(협동과정 운영위원회) ① 협동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학원에 협동과정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대학원장이 추천한 대학원 협동과정 학과의 주임교수가 소속된 학장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의 위원을 포함하여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동과정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2. 참여교수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협동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 조(학과교수회) ① 각 협동과정에 참여하는 교수로 구성된 협동과정 학과교수회(이하 교수회)를 둔다.

② 교수회는 주임교수가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교수회 구성원의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교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되 대학원학칙에 따라야 하고 심의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학생 입학에 관한 사항
2. 학위수여 및 학위종별에 관한 사항
3. 주임교수 선임에 관한 사항
4. 참여교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6.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동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강의실, 실험실 배정 등)

제 5 조(설치 기준) ① 협동과정은 교육부 대학원 정원조정계획 및 설치 세부기준에 따라, 3개 이상의 학과 또는 2개 이상의 학과와 연구소 및 산업체가 협의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단, 협동과정으로 설치되는 학과는 대학원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학과로 한다.

② 학과간 협동과정 학과 신설 시 관련분야 교원을 석사과정은 5명 이상, 박사과정은 7명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참가학과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16.〉

③ 제12조의 행정지원 학사조직을 확보하여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학과간 협동과정 폐지기준) 삭제 〈2016.3.16〉

제 7 조(입학 및 정원) 협동과정의 입학, 전형절차 및 정원은 영남대학교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제 8 조(학위수여 및 학위종별) ① 협동과정의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심사,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영남대학교 대학원 학칙을 따른다.

② 학위종별은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제출한 논문의 학문분야를 고려하여 각 협동과정에 설치된 논문심사위원회의 내신으로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 9 조(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① 학과간 협동과정을 설치한 학과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과목을 별도로 개설하지 않고, 참가하고 있는 학과의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교과목을 협의·선정하여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전공 및 참가학과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3.16., 2017.05.12., 2019.09.01.〉

② 융합교과목의 개설이 필요한 경우 협동과정 전체 교과목의 30% 내에서 필요한 교과목을 신설·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주임교수) 협동과정의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각 협동과정 학과에는 주임교수를 두며,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11조(참여교수) ① 협동과정 학과의 참여교수는 학생을 지도하고 교과목을 담당하여야 하며, 참여교수 이외의 전임교수는 교과목을 담당할 수 없다.〈개정 2015.3.24.〉

② 참여교수가 최근 3년 이내에 학생을 지도하지 않거나 1개 교과목 이상 강의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여교수에서 제외한다.

제12조(행정지원) 협동과정의 행정은 주임교수가 소속된 학과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준용)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관련 학사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13. 10. 0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 시행으로 폐과된 협동과정 학과의 재적생 및 수료생은 졸업 시까지 해당 협동과정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설치된 협동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을 따른다.

부 칙 (2014. 5. 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3. 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3. 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5. 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 동아시아문화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폐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간 협동과정 응용전자학과, 스마트산업안전학과, 엔지니어링사이언스학과, 유럽지역문화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의 응용전자학과 응용전자전공, 스마트산업안전학과 스마트산업안전전공, 엔지니어링사이언스학과 엔지니어링사이언스전공, 유럽지역문화학과 유럽지역문화학전공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각 폐지학과의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2019. 5. 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간 협동과정 생명의과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의 생명의과학 생명의과학전공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해당 학과 및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2019. 8. 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별표 1] 학과·전공 및 참가학과**

학과			전 공	참 가 학 과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한 국	한 국	-	한국학	국어국문학과, 한문학과, 역사학과, 문화인류학과, 미학미술사학과, 국악과, 사회학과, 철학과
의 공	의 공	의 공	의공학	의학과,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 전 학과
-	보 건	-	보건학	의학과, 자연과학계열 및 인문사회계열 전 학과
-	미술치료	-	미술치료학	가족주거학과, 사회학과, 유아교육학과, 미학미술사학과, 의학과, 심리학과, 회화과, 생활제품디자인학과, 트랜스아트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과, 심리학과, 영어교육학과, 문화인류학과
-	미술디자인	-	미술, 디자인	회화과, 시각디자인학과, 산업인터랙션디자인학과, 생활제품디자인학과, 트랜스아트과
-	음악	-	음악학실기 음악학이론	작곡과, 성악과, 국악과, 기악과
글로벌 비즈니스	글로벌 비즈니스		글로벌 비즈니스	경영학과, 무역학과
한국여성 리더십	-	-	한국여성 리더십	가족주거학과, 식품영양학과, 사회학과, 문화인류학과
독서작문	독서작문	독서작문	독서작문	국어국문, 독어독문, 철학과, 심리학과, 유아교육과
생명의과	생명의과	생명의과	생명의과학	의학과, 생명공학과, 생화학과, 약학과, 의생명공학과
에너지융합공	에너지융합공	에너지 융합공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카, 산업경영,	경영학과, 기계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화학공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생명공학과, 전기공학과, 의생명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유기신소재공학과
디지털융합 비즈니스	디지털융합 비즈니스	디지털 융합 비즈니스	디지털융합 비즈니스학	경영학과, 무역학과, 행정학과, 언론정보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산업인터랙션디자인학과, 교육학과

학 과			전 공	참 가 학 과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무용공연 예술	-	-	무용공연 예술	영어영문학과, 미학미술사학과, 국악과, 성악과, 체육학과, 미술치료학과
새마을 국제개발	새마을 국제개발	새마을 국제개발	새마을 국제개발	사회학과, 경제학과, 지역및복지행정학과
동아시아 문화	동아시아 문화	-	동아시아 문화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역사학과, 언론정보학과, 철학과
자동차 조명융합공	자동차 조명융합공	자동차 조명 융합공	자동차조명 융학공	전자공학과, 물리학과, 기계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전기공학과, 화학공학과
번역	번역	번역	번역	중국언어문화학과, 일어일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심리학과, 언론정보학과
첨단뿌리 산업공	첨단뿌리 산업공	첨단뿌리산 업공	첨단뿌리 산업공	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과
기술혁신 · 기업가정신	기술혁신 · 기업가정신	기술혁신 · 기업가정신	기술혁신 · 기업가정신	경영학과, 무역학과,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회계세무학과

CAMPUS MAP

Campus Map



01 University Library
02 College of Liberal Art
03 College of Sciences(1st)
04 College of Sciences(2nd, 3rd)
05 Science Library
06 School of Biotechnology
07 College of Natural Resources
08 College of Human Ecology and Kinesiology
09 Main Administration Building
10 International Building
11 Folklore Park
12 University Ranch
13 Foreign Language Institute
14 General Lecture Hall
15 Baseball Field
16 ROTC
17 College of Music
18 Tennis Field
19 College of Education
20 College of Art and Design
21 University Museum
22 One-stop Service Center
23 Welfare Center, and Office of International Programs
24 Soccer Field
25 Student Union Building
26 College of Law
27 College of Political Scie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28 College of Commerce and Economics
29 Evening Programs
30 College of Engineering
31 Electrical Engineering Building
32 School of Textile
33 Chemical Engineering Building
34 Laboratory Factory
35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Building
36 Mechanical Engineering Building
37 College of Pharmacy
38 Architectural Building
39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puting Systems
40 Construction Hall
41 Center for Industry Academic Cooperation Technology
42 Instrumental Analysis Center
43 BK21
44 Gyeongbuk Technopark
45 Learning Factory
46 Wind-Yunnel Laboratory Hall
47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48 Safety Experience Training
49 KTP Program
50 Samcheonji Pond
51 Track Field
52 Chunma Gymnasium
53 Dormitory(University)
54 60th Anniversary Hall
55 Graduate School
56 Dormitory(Graduate School)

01 중앙도서관
02 인문관
03 제1과학관
04 제2, 3과학관
05 과학도서관(제2도서관)
06 자원대본관, 자원대제1실험동
07 자원대제2, 3실험동
08 생활과학대학
09 대학본부본관
10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관
11 민속원
12 대학 목장
13 외국어교육원
14 종합강의동
15 야구장
16 학군단, 교직원테니스장
17 음악대학
18 중앙테니스장
19 사범대학
20 조형대학
21 박물관
22 학생자원센터
23 종합복지관, 국제처
24 축구장
25 학생회관
26 법정관
27 정치행정대학
28 상경대학
29 야간강좌동
30 공과대학본관
31 전기관
32 섬유관
33 화공관
34 기계공작실습실
35 소재관
36 기계관
37 약학대학
38 건축관
39 정보전산원
40 건설관
41 생산기술연구원
42 중앙기기센터분관
43 산학협력기술원
44 경북테크노파크
45 공장형실습장
46 풍동실험실
47 산업기술연구소
48 안전체험교육장
49 제2시험생산공장
50 삼천지
51 인조잔디축구장
52 천마체육관
53 생활관(기숙사)
54 60주년기념관
55 대학원

이 대학원 학사안내는 학생들이 대학원생활을 하는데 지침이 될 각종 정보를 2020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수록한 것 입니다. 이 학사안내에 수록된 사항들은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은 담당부서의 확인을 받기 바랍니다.

대학원 학사안내 2020

2020년 3월 2일 인쇄
2020년 3월 5일 발행 (비매품)

편 집 영남대학교 대학원
발행처 영 남 대 학 교